

2016년도 문화재위원회

## 제4차 민속문화재분과 회의록

- 일 시 : 2016. 8. 9.(화) 14:00~16:5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백영흠(위원장), 석대권, 정명섭, 홍형순,  
김봉렬, 남해경, 김왕직, 강보원(이상 8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 목 차

## 【심의사항】

|    |                                  |  |
|----|----------------------------------|--|
| 1  | 대전 동춘당 고택 지정                     |  |
| 2  | 대전 소대헌과 호연재 지정                   |  |
| 3  | 안동 하회마을 내 골재 채취                  |  |
| 4  | 성읍 민속마을 내 단독주택 신축                |  |
| 5  | 성읍 민속마을 내 안내판 설치                 |  |
| 6  | 성읍 민속마을 주변 마사 및 창고 신축            |  |
| 7  | 성읍 민속마을 주변 단독주택 신축(이병○)          |  |
| 8  | 성읍 민속마을 주변 단독주택 신축(윤○○)          |  |
| 9  | 성읍 민속마을 주변 단독주택 신축(정○○)          |  |
| 10 | 성읍 민속마을 주변 단독주택 신축(김○○)          |  |
| 11 | 성읍 민속마을 주변 단독주택 신축(이규○)          |  |
| 12 | 성읍 민속마을 주변 단독주택 신축(허○○)          |  |
| 13 | 영주 무섬마을 주변 상수관로 매설               |  |
| 14 | 경주 양동마을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  |
| 15 | 영주 무섬마을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  |
| 16 | 논산 백일헌종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              |  |
| 17 | 제원 박도수가옥 주변 단독주택 신축              |  |
| 18 | 남원 몽심재 주변 도로굴착 및 개선              |  |
| 19 | 청송 송소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심○박)          |  |
| 20 | 청송 송소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심○적)          |  |
| 21 | 해저 만회고택 주변 빗물펌프장 설치              |  |
| 22 | 안동 학암고택 주변 오미 한옥집단마을 관광자원 개발사업   |  |
| 23 | 청도 운강고택 및 만화정 주변 생태탐방로 조성        |  |
| 24 | 함양 일두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               |  |
| 25 | 청원 이항희가옥 주변 근린생활시설(창고) 및 단독주택 신축 |  |
| 26 | 부안 동문안 당산 보호구역 내 시설물 증축          |  |

## 【검토사항】

|    |                         |  |
|----|-------------------------|--|
| 27 | 안동 하회마을 지정구역 조정 검토      |  |
| 28 | 안동 보백당 종택 지정 검토         |  |
| 29 | 경주 양동마을 저잣거리 조성 기본계획 변경 |  |

## 【보고사항】

|    |                          |  |
|----|--------------------------|--|
| 30 | 문화재위원회 민속분과 소위원회 운영계획 보고 |  |
|----|--------------------------|--|

**심 의 사 항**

## 1. 대전 동춘당 고택 지정

### 가. 제안사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소재 「대전 동춘당 고택」 국가지정 문화재 (중요민속문화재) 지정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소재 대전시 유형문화재 제3호 「회덕 동춘 고택」 을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16년도 제3차 민속분과 문화재위원회('16.6.14.) 검토 후 「대전 동춘당 고택」으로 지정예고('16.7.1.~8.1.)하였고, 고택의 소유자인 은진송씨 동춘당 문정공파 종중에서 「대전 동춘당 송준길 종택」으로 지정명칭을 변경 건의하였음('16.7.21)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대전광역시장
- (2) 대상문화재 : 대전 동춘당 고택(大田 同春堂 古宅, Dongchundang Historic House, Daejeon)
  - 소재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 80(송촌동 192)
  - 소유자 : 은진송씨 동춘당 문정공파종중, 대전광역시장
  - 수량 : 일괄(건물 4동, 토지 7,676㎡<2필지>)
    - 건축물 지정 : 4동

| 명칭       |     | 시대   | 구조/형식/형태                | 크기/수량  | 소유자              |
|----------|-----|------|-------------------------|--------|------------------|
| 회덕 동춘 고택 | 안채  | 조선시대 | 목구조 5량가, 정면6칸×측면5칸, ㄷ자형 | 237.5㎡ | 은진송씨 동춘당 문정공파 종중 |
|          | 사랑채 | 조선시대 | 목구조 5량가, 정면6칸×측면2칸, 一자형 | 122.6㎡ |                  |
|          | 가묘  | 조선시대 | 목구조 3량가, 정면3칸×측면2칸, 一자형 | 56.6㎡  |                  |
|          | 별묘  | 조선시대 | 목구조 3량가, 정면3칸×측면2칸, 一자형 | 61.2㎡  |                  |
| 계        |     |      |                         | 477.9㎡ |                  |

- 토지 지정 면적 : 7,676m<sup>2</sup>

| 소재지         | 지 번   | 지목 | 지적(m <sup>2</sup> ) | 지정(m <sup>2</sup> ) | 소유자                 |
|-------------|-------|----|---------------------|---------------------|---------------------|
|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 | 192   | 대  | 7,243m <sup>2</sup> | 7,243m <sup>2</sup> | 은진송씨 동춘당<br>문정공파 종중 |
|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 | 192-2 | 대  | 433m <sup>2</sup>   | 433m <sup>2</sup>   | 대전광역시장              |
| 계           |       |    | 7,676m <sup>2</sup> | 7,676m <sup>2</sup> |                     |

라. 지정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1 참조

〈○○○ 문화재위원〉 : 지정가치 있음

- 회덕 동춘선생 고택은 조선시대 별당 건축의 한 표본이 되고 있는 동춘당을 비롯해서 안채와 사랑채, 가묘와 별묘가 주변의 자연 경관과 잘 어울려져 배치되어 있는 이 지방의 대표적 상류주택이다.
- 전체적으로 건물을 비롯하여 공간구성이나 건물의 구성이 양호하고 가묘와 별묘의 구성이 이 지역 상류주택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어 문화재로서 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활용 측면에서도 대전시의 근린공원에 위치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과 역사교육공간을 제공하고 있어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동춘당고택 축제를 개최하는 등 일반인들에게 가깝게 다가가고 있어 활용도도 좋으리라 생각한다.

〈김왕직 문화재위원〉 : 지정가치 있음

- 동춘고택 현재의 모습은 비록 1835년 중건할 때의 모습으로 남아 있지만 초창은 15세기 후반 임진왜란 이전으로 조선 초기 충청지역 살림집의 흔적을 유추해 볼 수 있는 희소성을 갖고 있다. 또 상량문 등의 기록과 유적을 통해 그 이축 및 변천과정을 명확히 알 수 있어서 건축의 시대적 변화과정을 알 수 있는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 동춘고택의 별당인 동춘당이 동춘고택 창건이후에 지어졌으며 본당과 별당으로서 하나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었다. 현재 별당인 동춘당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동춘고택은 동춘당의 본당으로 같은 영역 안에서 하나의 역할을 하던 건물이므로 국가지정으로 승격하여 같은 맥락에서 보존 관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 동춘고택 안채는 충청지역에서는 드문 ‘ㄷ’자형 평면을 이루며 6칸 대청과

양통의 날개채, 종축으로 긴 안마당 구성 등은 이 지역 부농 대가집에 속하는 것으로 충청지역 살림집의 다양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 사랑채는 일자형으로 규모가 크고 큰 사랑방과 작은 사랑방이 별도의 마루방을 갖고 있는 드문 구성이며 내외담을 통해 안채와의 절묘한 단면상의 조형성을 볼 수 있는 건축적 가치가 있다. 따라서 동춘고택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 문화재위원> : 지정가치 있음

- 대전 동춘당 고택은 동춘당 송준길의 아버지 송이창이 1617년 별사로 건립한 청좌와를 시작으로 1649년 이건과 1744년 이건 중수 등을 거쳤으나, 그때마다 그 위치가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동춘당 고택은 1835년 이 건한 건물이다.
- 은진송씨가 회덕에 정착한 이후 송준길의 윗대가 현재 송촌에 자리한 것은 대체로 송준길의 5대조 송요년이 별사를 지었다는 것으로 보아 이 때 즈음으로 추정된다. 고택의 건립의 역사는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1617년 청좌와 건립을 그 시점으로 보며, 송준길 이후 호서지역의 명문가로 성장한다. 현재 동춘당 고택을 통하여 호서지역의 명문가 동춘당 가문과 조선 후기 향촌사회를 이해한다는 점에서 몇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첫째는 은진송씨가 회덕에 정착한 4세 송명의로 부터 종가의 계보를 이어가는데 어떻게 재산이 분급되어 동춘당 송준길 이후 동춘당 고택으로 정착되어 가는 과정을 잘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송촌에 정착한 송준길의 가문은 유명 명문가와 혼인과 송준길 자신이 율곡의 학통을 잇고, 김장생 문하에서 성리학을 공부하여 호서지역 대표적인 학자로 성장한다. 세 번째는 송준길의 가문은 예학의 전통을 어떻게 이어가는지 볼 수 있는 불천위와 기타 제례가 그대로 전승되고 있다. 네 번째는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는 방대한 고문서들은 조선중기에서부터 근대이르기 까지 집안의 생활사와 회덕지역 향촌사회의 변화를 볼 수 있는 자료들이다.
- 이와 같이 동춘당 고택은 조선후기 호서지역의 명현인 동춘당 송준길의 종가이자 이를 중심으로 한 가문과 지역의 역사·문화적인 의미를 찾는 중요한 공간으로 중요민속문화재 지정 요건에 필요한 역사성, 학술성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 마. 참고사항(대전시 의견)

- 동춘당 고택 일원에는 조선후기 기호유학의 대표적인 학자인 송준길(宋浚吉, 1606~1672)의 별당인 「대전 회덕 동춘당(보물 제209호)」 과 조선전기(15세기)에 창건된 안채인 「대전 회덕 동춘당고택(사랑채, 안채, 가묘, 별묘)」 등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들 고택은 조선전기에서 조선후기에 이르는 충청 지역의 대표적인 사대부가 상류주택의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고, 그 변천 과정에 대한 기록이 존재하고 건축 양식 및 건축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갖고 있으므로 국가 지정문화재로서 지정할만한 충분한 가치를 갖고 있다고 판단됨

#### 바. 검토의견

- 지정 예고 시 고택소유자(은진송씨 동춘당 문정공 종중)가 “대전 동춘당 송준길 종택”으로 명칭 변경을 건의하였으나, 「중요민속문화재 지정명칭 부여 지침」에 따라 “대전 동춘당 종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사.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명칭은 ‘대전 동춘당 종택’으로 함

##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 보고서

### 회덕 동춘 고택 지정조사보고서

1. 조사자 : ○○○, 한국건축사, 전북대학교 교수

2. 문화재 종류 : 중요민속문화재

3. 문화재 명칭 : 회덕 동춘 고택(懷德 同春 古宅)

#### 4. 입지현황과 역사문화환경

- 회덕 동춘선생 고택은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의 도심에 위치하고 있는데 주변은 도심이 형성되어 아파트를 주로 하는 주거단지가 형성되어 있고 고택을 중심으로 전면에는 동춘당이 있고 우측면에는 송용역가옥이 있으며 주변에는 근린공원이 형성되어 있다.

#### 5. 연혁 유래 및 특징

- 동춘당(同春堂) 송준길(宋浚吉)선생은 조선 효종 때 병조판서 및 경연관(經筵官) 등을 지낸 분으로 관직에서 물러난 후 거처하던 집이 동춘고택이다. 이 집은 회덕 동춘당(보물 제209호)의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사랑채와 안채·사당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조선시대 중기에 건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배치는 동춘당 왼쪽으로 나 있는 대문을 들어서면 일자형의 사랑채와 ㄷ자 모양의 안채가 전체적으로 열린 ㄱ자형을 이루고 있고 그 동쪽에 가묘와 별묘가 있다. 그 왼쪽에는 정면 3칸, 측면 1칸으로 된 제기고가 동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 안채는 넓은 대청을 중심으로 왼쪽에 2칸의 마루방, 1칸 반의 안방, 1칸씩의 자녀 방과 침모 방, 그리고 부엌이 연결되어 있다. 대청 오른쪽으로는 1칸씩의 건넌방과 윗방, 부엌과 찬방, 그리고 행랑방이 연결되어 전체적으로 ㄷ자형의 평면을 이루고 있다.
- 사랑채는 정면 6칸, 측면 2칸의 일자형 건물로 서쪽 끝의 1칸은 중문으로 사용하고 그 옆에 작은 사랑방이 있다. 그리고 1칸의 대청과 2칸의 큰 사랑방, 부엌의 순서로 배치되어 있다. 부엌 위는 다락으로 만들어졌고 부엌 앞에는 1칸의 살림채를 달아 청지기가 거처하던 방을 두었다. 대청과 큰 사랑방 앞에는 툇마루가 설치되었고 작은 사랑방 앞에는 마루를 높여서 그 밑에다 아궁이를 두었다.
- 사당인 가묘와 별묘는 모두 정면 3칸, 측면 2칸 건물인데 정면에 전퇴칸을 둔 개방형 평면이며, 내부는 통칸으로 하여 마루를 깔았다. 지붕은 홑처마의 맞배지붕집이다.
- 구조는 안채와 사랑채의 구조는 자연석 기단 위에 사다리꼴 모양의 방형 주초와 덩벙 주초를 혼합하여 놓고 네모기둥을 세운 후 납도리집계통으로 간결하게 꾸몄다. 지붕들은 5량이며, 지붕은 홑처마 팔작지붕을 이루고 있다. 가묘와 별묘는 장대석기단 위에

사다리꼴 모양의 방형 주초를 놓고 방형기둥을 세웠으며 지붕틀은 굴도리 3량가구이고, 지붕은 홑처마 맞배지붕이다.

#### 6. 지정 가치 및 종합의견

- 회덕 동춘선생 고택은 조선시대 별당 건축의 한 표본이 되고 있는 동춘당을 비롯해서 안채와 사랑채, 가묘와 별묘가 주변의 자연 경관과 잘 어우러져 배치되어 있는 이 지방의 대표적 상류주택이다. 전체적으로 건물을 비롯하여 공간구성이나 건물의 구성이 양호하고 가묘와 별묘의 구성이 이 지역 상류주택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어 문화재로서 가치는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 한편 활용측면에서도 대전시의 근린공원에 위치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휴식공간과 역사교육공간을 제공하고 있어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춘당고택 축제를 개최하는 등 일반인들에게 가깝게 다가가고 있어 활용도도 좋으리라고 생각한다.
- 단지 현재 이 집에 살고 있는 후손들의 주거문제를 계속 거주하게 할 것인지 이전하게 하고 다른 콘텐츠를 부여할지에 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회덕 동춘 고택 지정조사보고서

1. 조사자 : ○○○, 한국건축사, 명지대학교 교수

2. 문화재 종류 : 중요민속문화재

3. 문화재 명칭 : 회덕 동춘 고택(懷德 同春 古宅)

### 4. 창건과 변천

- 동춘고택은 2014년 중수하면서 발견된 상량문에 의해서 그 내력이 상세히 알려지게 되었다. 이 상량문은 동춘고택과 동춘당이 현재의 모습으로 중건된 1835년(헌종원년)에 쓴 것이다. 상량문 작성자는 송준길의 7대손인 송문희(1773-1839)가 온양군수로 있을 때 작성한 것이다.
- 이에 따르면 동춘고택은 은진송씨 요년(遙年, 1429-1498)이 별사(別舍)로 지어 둘째 아들인 송여즙(宋汝楫)에게 준 것이다. 이 때 큰 아들인 송여림(宋汝霖)에게는 쌍청당을 주었다. 송여즙은 생몰년대 미상이나 형인 송여림의 생존연대를 고려한다면 15세기 후반에 건축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위치는 현재의 위치와 유사하다.
- 임진왜란으로 동춘고택은 어느 정도 파괴되었는지 정확하지는 않으나 거처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손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 중수하였고 1617년에는 현재의 동춘당으로 추정되는 청좌와(淸坐窩)가 동춘고택 전면에 건축되었다. 그 후 청좌와와 동춘고택은 병자호란 무렵 심하게 훼손을 입었다. 그래서 송준길이 1643년 사당을 포함한 정침과 동춘당을 중건하였다. 이 때 별당인 동춘당을 현재의 위치인 동쪽으로 옮겼다. 중건공역이 완성된 것은 1649년의 일이다. 이후 1709년에는 송요경(1669-1748)에 의해 고택과 동춘당의 중수가 있었다. 중수의 범위와 정도는 알 수 없다. 다만 2014년에 발견된 상량문에 따르면 송요경 말년인 1744년에 동춘고택이 사당 뒤쪽인 원래 위치에서 약간 동쪽으로 이진된 것으로 기록되어있다. 또 현재와 같이 다시 동춘고택이 동춘당 서쪽으로 원래위치로 다시 이진된 것은 1835년이다. 이때 별묘가 지어지면서 사당영역이 확대되었다. 따라서 동춘고택과 동춘당이 현재의 모습을 갖춘 것은 1835년(헌종원년)이다. 이 때 이진할 때는 옛터에 남아 있던 대문, 상량기록, 유적 등을 참고하여 이진하였기 때문에 원래 위치에 이진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5. 건축구조 및 양식

- 현재 동춘고택은 남쪽에 놓여있는 남에서 북으로 연결된 골목길을 따라 오르다보면 골목길 끝에 대문이 있고 대문을 들어서 서쪽으로 안채와 사랑채로 구성된 동춘고택 일곽이 이르게 된다. 고택 동쪽에는 사당일곽이 자리 잡고 있으며 진입로 동쪽에는 동춘당이 배치되었다. 현재 동춘고택 위치는 15세기 초창 때의 위치이며 1744년에 동쪽으

로 잠시 옮겨졌다가 1835년에 원위치로 다시 옮겨 지은 것이다. 그러나 별당인 동춘당은 1617년에 서쪽에 창건되었다가 1647년에 현재의 위치인 동쪽으로 이진 되었다.

- 동춘고택은 ‘ㄷ’자형 안채와 ‘一’자형 사랑채가 결합된 ‘튼ㄷ’형 배치이다. 중문은 사랑채 서쪽 끝 한 칸을 사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서남에서 동북쪽으로 마당을 대각선으로 통과하여 안채에 이르는 구조이다.
- 안채는 중앙 6칸 대청을 중심으로 서쪽으로는 양통의 날개 채에 안방과 부엌을 배치하였고 서쪽은 삼량가로 건넌방과 마루방, 작은방을 배치하였다. 충청지역에서는 보통 ‘ㄱ’자형이 일반적이지만 부농에서는 ‘ㄷ’자형이 드물게 나타난다. 충청지역 부농에 속하는 평면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좌우 날개채가 비대칭인 경우는 또 드문 사례이다. 서쪽 안채부분을 양통으로 하여 5량구조로 한 것은 가운데 6칸 대청을 드린 것에서도 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6칸 대청은 사대부 집중에서도 큰 집에 속하는 것으로 이에 걸맞게 안방도 4칸으로 하였다. 안방 전면에는 부엌과 찬방 등 다양한 실을 넣은 것에서도 살림의 규모를 짐작할 만하다. 동쪽 날개채도 비록 단 칸이지만 5칸으로 구성되어 보통 3칸으로 구성되는 다른 집들에 비해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건넌방 2칸 남쪽에 부엌을 두고 마루방과 작은방을 이어 남쪽으로 날아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중정 마당은 종축인 남북으로 긴 마당이 되었다. 남쪽 사랑채 서쪽에 있는 중문간을 들어서면 종축 마당을 대각선으로 건너질러 안채 대청에 이르게 된다. 경상도 지역에서 마당 정중앙에서 종축 마당을 건너질러 대청에 이르는 극히 권위적인 집은 아닐지라도 이러한 성격에 유사한 배치구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충청도 집에서는 좌우 대청으로 진입하는 집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동춘고택도 규모와 배치에서는 경상도 지역의 권위주택과 유사하지만 다만 집입동선을 대각선으로 처리하여 동적으로 하였다는 점이 충청지역의 진입방식을 선택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 사랑채는 일자형으로 6칸으로 구성되었다. 서쪽 한 칸은 중문이고 작은 사랑방 1칸, 마루1칸, 큰 사랑 2칸, 마루 1칸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면에는 모두 뒷마루가 있다. 일자형 전퇴집으로 가구는 일고주오량가이다. 평면을 일자형으로 길게 늘어놓은 것도 사랑채 평면에서는 드문 일이며 큰사랑과 작은 사랑방에 별도로 마루가 딸려 있는 것도 흔한 구성은 아니다. 사랑채와 안채 사이에는 내외담이 있고 내외담에는 굴뚝을 설치했으며 안채와는 좌우 담으로 연결되어 있다. 내외담은 높지 않지만 안채와 사랑채의 단면 높이를 고려하여 시선을 차단할 정도의 가림 벽 역할로 그 높이를 계산한 치밀한 조형성을 보이고 있다.

## 6. 지정 가치 및 종합의견

- 동춘고택 현재의 모습은 비록 1835년 중건할 때의 모습으로 남아 있지만 초창은 15세기 후반 임진왜란 이전으로 조선 초기 충청지역 살림집의 흔적을 유추해 볼 수 있는 희소성을 갖고 있다. 또 상량문 등의 기록과 유적을 통해 그 이축 및 변천과정을 명확히 알 수 있어서 건축의 시대적 변화과정을 알 수 있는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 동춘고택의 별당인 동춘당이 동춘고택 창건이후에 지어졌으며 본당과 별당으로서 하나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었다. 현재 별당인 동춘당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동춘고택은 동춘당의 본당으로 같은 영역 안에서 하나의 역할을 하던 건물이므로 국가지정으로 승격하여 같은 맥락에서 보존관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 동춘고택 안채는 충청지역에서는 드문 ‘ㄷ’자형 평면을 이루며 6칸 대청과 양통의 날개채, 종축으로 긴 안마당의 구성 등은 이 지역 부농의 대가집에 속하는 것으로 충청지역 살림집의 다양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 사랑채는 일자형으로 규모가 크고 큰 사랑방과 작은 사랑방이 별도의 마루방을 갖고 있는 드문 구성이며 내외담을 통해 안채와의 절묘한 단면상의 조형성을 볼 수 있는 건축적 가치가 있다. 따라서 동춘고택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회덕 동춘 고택 지정조사보고서

1. 조사자 : ○○○, 민속학, 대전보건대학교 교수

2. 문화재 종류 : 중요민속문화재

3. 문화재 명칭 : 회덕 동춘 고택(懷德 同春 古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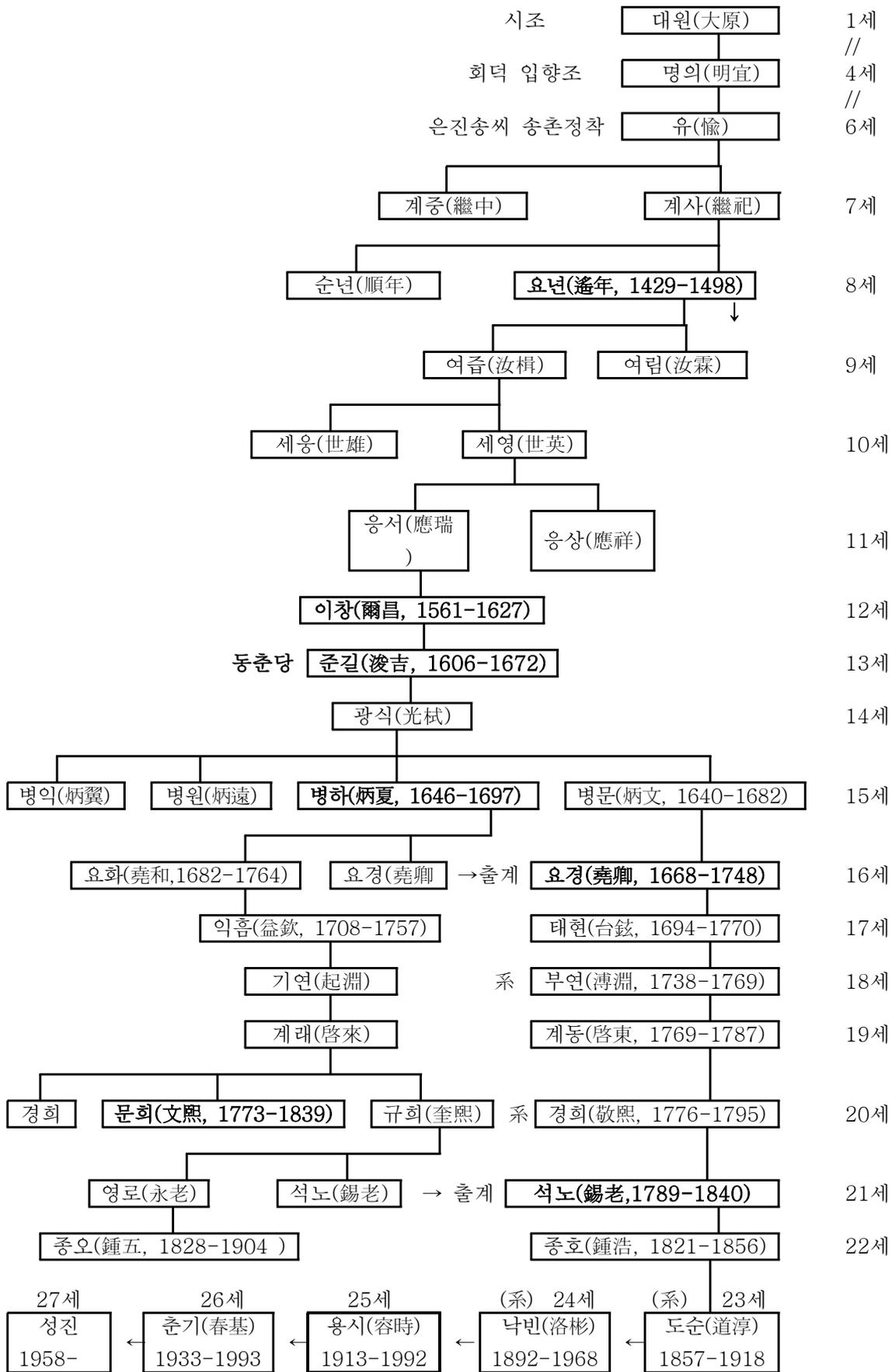
### 4. 동춘당 송준길의 가계와 종택 건립

#### 1) 송촌 은진송씨 입향과 종가의 계보

- 은진송씨는 4세 송명익(宋明宜)가 회덕에 세거하는 회덕 황씨 황수(黃粹)의 사위가 되면서 회덕의 입향조가 된다. 은진송씨가 회덕에 정착하는데 핵심적인 인물은 쌍청당(雙淸堂) 송유(宋愉, 1389-1446)이다. 그는 입향조 송명익의 손자로 젊은 나이에 벼슬에 올랐으나, 선덕왕후 강씨의 위패가 종묘에 모셔지지 않자 벼슬을 버리고, 회덕의 백달촌(白達村)에 은거하면서 학문과 후진양성에 힘을 쏟는다. 송유는 송준길의 7대조로 그가 백달촌에 정착한 이후 은진송씨들이 회덕에 많이 거주하게 되고, 백달촌이라는 이름도 송촌(宋村)으로 바뀐다.
- 동춘당 건물과 동춘당 고택의 건립과 관련 인물들은 송준길의 윗대에서 5대조 송요년(遙年, 1429-1498)과 아버지 송이창(爾昌, 1561-1627)이고, 아랫대는 증손자 송요경(宋堯卿, 1668~1748) 등이다.
- 송요년은 송유의 손자로 1453년생에 생원시, 1479년 문과합격에 하였다. 관직은 의금부도사, 사헌부 감사, 청주 판관, 상주목사 홍주목사를 지냈다. 송유에게는 여림(汝霖)과 여즙(汝楫) 두 아들이 있는데, 장자에게 조부의 쌍청당을 물려주고, 차자인 여즙에게는 송요년이 지은 별사를 물려주었다.
- 송이창(宋爾昌, 1561-1627)은 송준길의 아버지로 1590년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고, 1600년 연원도찰방(連原道察訪)을 시작으로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 진안현감(鎭安縣監), 신령현감(新寧縣監)을 역임하였다. 1613년 계축옥사(癸丑獄事)로 파직되어 회덕(懷德)에 돌아왔다. 인조반정(仁祖反正)으로 문의현령(文義縣令), 군자감판관(軍資監判官) 등을 역임했다. 송이창은 1598년에 청좌와(淸坐窩)를 지었다고 연보에 적고 있다. 청좌와는 현재 동춘당 고택이 있는 곳으로 추정된다.
- 송준길(宋浚吉, 1606-1672)은 그는 대전이 낳은 대표적인 성리학자의 한 사람으로 그의 선대는 대대로 회덕(懷德) 송촌(宋村: 지금의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에 세거하였다. 그는 율곡 이이(栗谷李珣)의 학설을 지지하였고, 특히 예학(禮學)의 종장(宗匠)이던 사계 김장생의 문인으로 학통을 이어받아 예학에 밝았고, 글씨에도 능하여 많은 비문(碑文)을 남겼다. 호는 동춘당으로 1624년 진사(進士)가 된 뒤에 학행(學行)으로 천거받아 여러 관직에 임명되었으나, 대부분 관직에 나가지 않았다. 그 뒤 김장생의 아들인 신독

재 김집(愼獨齋金集)이 이조판서로 기용되면서 우암 송시열(尤庵宋時烈)과 함께 발탁되어 부사직(副司直)·진선(進善)·장령(掌令) 등의 벼슬에 올랐다. 그 후 정치적 혼란으로 벼슬길에서 물러났다가 효종(孝宗)대에 다시 대사헌(大司憲)·이조참판(吏曹參判) 등을 거쳐 1659년에는 병조판서(兵曹判書)·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우참찬(右叅贊)으로 송시열과 함께 국정에 참여하면서 효종의 북벌계획(北伐計劃)에 참여하였다. 그 후 효종이 죽고 현종(顯宗)이 즉위하자 자의대비(慈懿大妃) 복상문제로 이른바 예송(禮訟)이 일어난 후 여러 차례 벼슬이 내려졌으나 계속 사퇴하였다. 그가 죽은 후 다시 정치적 혼란으로 한 때 관작이 삭탈되기도 하였으나 얼마 안 있어 다시 복구되었다. 1681년 회덕(懷德) 승현서원(崇賢書院)에 제향되고 문정(文正)이라는 시호(諡號)를 받았고, 1756년(英祖 32)에는 문묘(文廟)에 제향되었다.

- 송요경(宋堯卿, 1668-1748)은 송준길의 증손자로 생부(生父)는 병하(炳夏)인데 후에 백부(伯父) 병문(炳文)의 뒤를 이어 송준길의 종가를 잇게 된다. 1699년(肅宗 25) 동춘당 송준길의 자손을 벼슬에 채용하라는 명이 있어 송요경은 1700년(肅宗 26) 경안도찰방(慶安道察訪)에 임명되었고 이후 진천현감(鎭川縣監), 제천현감(堤川縣監) 등을 역임하고 1708년 고향 송촌으로 돌아왔다. 1709(肅宗 35)년에는 제용감판관겸 선혜청낭청을 거쳐 청도군수(淸道郡守), 충주목사(忠州牧使), 나주목사(羅州牧使) 등을 거쳐 벼슬이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에 이르렀다. 송요경은 많은 관직생활을 했음에도 고향 송촌동 본가의 건축에 남다른 열의를 가졌던 인물로 1704년 8월에는 가묘(家廟)를 세우고, 1709년 동춘당 중수하고 1744년(英祖 20) 7월에는 정침(正寢)을 옛 터의 동쪽으로 옮겨 세우는 등 오늘날의 동춘당(同春堂)과 동춘당 고택의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 5. 종택의 건립

- 은진송씨 동춘당 고택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 80(송촌동)에 자리하고 있다. 이 고택은 동춘당(同春堂) 송준길(宋浚吉, 1606-1672)의 종손들이 대를 이어 살아 온 집으로 현재 건물은 1835년 이진한 건물이다. 고택의 입구 우측에는 송준길이 관직을 물러난 후 거쳐하던 곳으로 전하는 건물로 동춘당(同春堂, 보물 제 209호)이 있다.
- 동춘당 고택은 2014년 보수 정비하는 과정에서 안채 종도리 하부면에서 상량 관련 기록이 발견되어 건립과 관련 역사적인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상량문 기록을 기준으로 종택의 건립연대와 이진 등의 변화과정을 짐작할 수 있다. 송촌에는 동춘고택을 비롯한 동춘당과 쌍청당(雙淸堂) 등이 있다. 쌍청당은 송유(宋愾, 1389~1446)의 별당으로 조선 전기 이래 여러 차례 중수가 있었고, 동춘고택과는 직선거리로 약 600m 정도 떨어져 있다.
- 그 뒤 송유의 손자 송요년(宋遙年, 1429-1498)이 별사(別舍)를 세웠고 차자(次子)인 송여즙(宋汝楫, ?-?)에게 분급해주었다고 한다. 장자인 송여림(宋汝霖, 1461-1529)에게는 쌍청당을 주었다. 그 다음에도 송여즙의 장자 송세영(宋世英, 1491-1532)이 그의 장자 송응상(宋應祥)에게 서울집[京第]을 분급하고, 차자(次子) 송응서(宋應瑞, 1530-1608)에게 시골집[鄉舍, 송요년의 별사] 주었다. 임천군수(林川郡守)를 지낸 송응서(宋應瑞, 1530-1608)로 송준길에게는 직계 조부가 되고 이때부터 동춘당이 종가집으로 전해지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 현재의 동춘당 고택의 형성과 관련하여 고택 전면 공간에는 송준길의 아버지인 청좌와 송이창(宋爾昌, 1561-1627)이 세운 '청좌와(淸坐窩)'가 있었다고 한다. 청좌와는 송이창의 연보에는 1598년에 세운 것으로 되어 있고, 상량문은 1617년으로 되어 있다. 아마 임진왜란으로 마을이 폐허가 되었고 남은 재력으로 간신히 거처를 마련하였다고 기록으로 보아 1617년 청좌와 건립과 안채 거주공간도 중수했을 가능성이 있다.
- 병자호란(丙子胡亂, 1636. 12-1637. 01)으로 또 다시 집이 훼손되어 1648년(인조 26) 9월 13일 청좌와를 중건하기 시작하여 1649년(인조 27) 2월 상량(上梁) 했음을 송준길의 연보에서 파악할 수 있다.
- 1709년(숙종 35)에도 대대적으로 중수한 내용이 있는데, 송준길의 증손(曾孫) 송요경(宋堯卿, 1668-1748)이 별당인 동춘당을 중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안채도 중수하였다. 1744년(英祖 20) 7월에는 안채[正寢] 즉 동춘당 고택을 옛 터의 동쪽 동춘당 후면으로 옮겨 중수하였다.
- 현재 동춘당과 동춘당 고택, 가묘, 별묘가 현재의 배치 모습을 갖게 된 것은 동춘당 송준길 종가를 이은 종손 송석로(宋錫老, 1789-1840)가 이진하여 중수한 것이다. 1835년(헌종 1) 8월 9일 상량시의 상량문 내용은 종자(宗子)인 송석로(宋錫老, 1789~1840)를 대신해서 당시 이진과 중수를 맡았던 송문희(宋文熙, 1773~1839)가 지은 것이다. 송문희는 송석로의 숙부이고, 송석로는 동춘당 고택의 종손 송경희의 양자로 들어가 그 후손들이 종가를 잇고 있다.

## 6. 동춘당 송준길가의 전승 의례와 역사 · 문화적인 자료

### 1) 혼례

- 회덕의 은진송씨는 호서지역의 명문가 널리 알려져 있다. 4세 송명익이 회덕의 부호 회덕 황씨 황수의 사위가 되어 회덕에 입향하였고, 6세 송유가 정착한 후 명문가와 혼인하여 사회적 기반 다졌다. 그의 장남 7세 계사는 김종서의 아우 김종홍의 딸과 차남 계중은 권근의 아우 권홍의 딸과 혼인하였다. 8세 요년은 나주 판관을 지낸 김양을의 딸과 혼인하였다. 요년의 장남 여림은 우의정을 지낸 광산김씨 가문의 김국광의 딸과, 차남 여즙은 태조의 현손 아림군의 딸과 혼인하였다. 10세 여즙의 장남 세영은 세종대왕의 증손자 계와 딸과 혼인하였다. 10세 송이창은 아산김씨 김은휘의 딸과 혼인하였다.
- 동춘당 송준길은 기호학과이면서도 영남학과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 1563-1633)의 사위가 되었다. 당시 학과간의 학맥을 견고하게 형성되어 당쟁이 여러번 일어나 교류가 쉽지않았던 시기였다. 하지만, 영남학파로 특히 예학 뛰어난 식견을 가진 정경세는 기호학과 예학자 김장생과의 인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다. 정경세는 김장생과의 관계로 송준길을 사위로 맞았고, 그 뒤 송준길은 정경세의 영남학과의 예학과 김장생의 기호학과의 예학을 종합하고 조화를 이루게 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송준길이 이후에도 우봉 이씨, 대전 무수동의 안동권씨 집안, 덕수 이씨, 여흥민씨 등의 집안 등과 혼반(婚班)을 이어갔다.

### 2) 식생활 문화

- 동춘당 가문에서는 조선후기 식생활문화를 볼 수 있는 음식조리서를 주식시의(酒食是儀)와 우음제방(禹飲諸方)이 전해지고 있다.
- 주식시의는 한글 필사본으로 조리서로 송영로(宋永老, 1803-1881)의 부안 연안이씨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술 만드법, 약탕, 찜, 죽, 면, 미음, 전 김치, 장류 등 다양한 음식 조리법과 생선 굽는 법. 계를 오래 두는 법, 고기 삶는 법 등 음식재료 다른 법이나 기본적인 조리법 등 94종 정도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 우음제방은 은진송씨가에서 전해 오는 각종 술 빚는 방법을 기록 양조서(釀造書)이다. 여기에는 소곡주, 호산춘, 두견주, 송순주, 보리소주, 국화주, 구일주, 백일주 등 24가지의 술 담그는 방법이 기술되어 있다.
- 현재 집안에서 전하는 송순주(소대헌 송용화가, 무형문화재 제3호-가)와 국화주(동춘당 종가, 무형문화재 제3호-나)가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전승되고 있다.

### 3) 의례문화

- 동춘당 송준길은 기호학파로서 김장생의 문하에서 학문을 하면서 예학(禮學)에도 밝았다. 그는 전문적인 예서를 남기지 않았지만, 김장생 · 김과의 예문답(禮問答)이나, 장인 정경세와의 예문답 등에서 그의 예학사상을 볼 수 있다. 기해예송에서 주장한 ‘천하동례(天下同禮)’의 예설도 실록 등에 다양하게 수록되어 있다. 송준길이 추구한 예학사상은 실용성이 높은 주자의 『가례(家禮)』를 많이 따랐지만, 우리의 속례(俗禮)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이었다.

- 그 예로, 회덕에 세거해 온 은진 송씨가 서울에 많이 거주하는 정랑공파(正郎, 송순년)와 회덕에 많이 거주하는 판교공파(判敎, 송요년)이 있었는데, 정랑공파는 4대봉사를 하고, 판교공파는 국법에 따라 3대봉사를 하였다. 이에 송준길은 문중의 여러 일가들과 논의 거쳐 4대봉사로 결정하였다. 이것은 한 문중의 화합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지만, 가례의 통일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고자 했다. 실생활에서도 친구문상법, 부의(賻儀) 품목, 상중에 맛 있는 음식 먹지 않는 일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하였다고 한다.
- 동춘당 고택이 제사공간으로는 가묘(家廟)와 별묘(別廟)가 있다. 가묘에는 4대조상의 위패가 모셔져 있고, 별묘에는 불천위인 동춘당 송준길의 위패가 모셔 있다. 동춘당 송준길 집안에서는 이 가묘와 별묘의 제례에 관한 내용을 수록한 덕은가승(德殷家承) 전한다.
- 덕은가승에는 사당과 관리 제전(祭田) 등이 적혀 있고, 시제는 봄 2월과 5월, 가을 8월과 11월 상정(上丁)에 실행한다. 사고 있을 때에는 의논하여 중정(中丁)안, 하정(下丁)으로 물려서 정한다. 이외에 제물에 관한 기록도 보인다.
- 예학에 밝은 송준길은 집안 제례에 관한 여러 규칙을 정하여 지내도록 하였지만 현재 전승되는 제례문화는 기제사와 묘사와 동춘당의 불천위 제사이다.

#### 4) 고문서와 생활용품

- 동춘당가의 고문서는 한국중앙연구원에서 정리한 바 있고, 현재 상당한 분량이 대전선사 박물관에 기탁되어 있다. 동춘당가의 고문서는 대체로 16세기에서 20세기까지 자료로서 조선중기부터 근대까지 걸쳐 생활문화사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들이 많이 있다.
- 자료현황을 보면, 고문서(古文書) 55종 1861점, 성책고문서(成冊古文書) 199종, 256책, 서화필첩(書畵筆帖) 161종 175책, 고서(古書) 304종, 1500책 등 모두 719종 3792점이다.
- 고문서는 고신(告身), 홍패(紅牌), 백패(白牌), 소지(所志), 호적(戶籍), 간찰(簡札), 혼서(婚書), 치부(置簿) 등이 있는데, 특히 언간(諺簡) 373점이나 포함되어 있다. 이들 언간(諺簡)은 조선후기 여성사와 가족문화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 성책고문서는 치부류, 승현서원·회덕향교·비래서당 자료, 일기류 등이 있다. 특히, 송촌 동대동계첩, 비래서당 관련 자료, 승현서원과 회덕향교 자료는 조선후기향촌사회의 자료로 향촌사회의 변화와 그 실상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 서회필첩으로는 낱장으로 된 것이 67종, 필첩 등으로 장첩한 것이 109첩인데, 낱장의 첩 가운데, 동춘당 글씨가 약 20여점이다.
- 고서 중 전적은 대체로 17세기 판본이 많다. 17세기 전적 가운데 ‘동춘옹(同春翁)’ 장서인이 있어 동춘당 송준길 직접 소장한 고서가 그대로 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적들은 활자본 많고, 소장전적이 대부분 완질본으로 보관되어 있고, 낙질본도 결본도 적다.
- 생활용품으로는 투호, 쌍륙, 바둑판 놀이도구와 흑립, 땡기, 은제비녀, 장도, 삼자노리개, 좌등, 지등롱, 제등, 조족등, 찬합, 연초합, 표주박, 부채 등 의생활과 주생활을 엿 볼 수 있는 민속자료들이 보관되어 있다.

## 7. 지정가치 및 종합의견

- 대전 동춘당 고택은 동춘당 송준길의 아버지 송이창 1617년 별사로 건립한 청좌와를 시작으로 1649년 이건과 1744년 이건 중수 등을 거쳤으나, 그 때 마다 그 위치가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동춘당 고택은 1835년 이건한 건물이다.
- 은진송씨가 회덕에 정착한 이후 송준길의 윗대가 현재 송촌에 자리한 것은 대체로 송준길의 5대조 송요년이 별사를 지었다는 것으로 보아 이 때 즈음으로 추정된다. 고택의 건립의 역사는 여러 견해가 있 수 있지만, 대체로 1617년 청좌와 건립을 그 시점으로 보며, 송준길 이후 호서지역의 명문가로 성장한다, 현재 동춘당 고택을 통하여 호서지역의 명문가 동춘당 가문과 조선 후기 향촌사회를 이해한다는 점에서 몇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첫째는 은진송씨가 회덕에 정착한 4세 송명의로 부터 종가의 계보를 이어 가는데 어떻게 재산이 분급되어 동춘당 송준길 이후 동춘당 고택으로 정착되어 가는 과정을 잘 볼 수 있다. 8세 송요년이 장남에게는 쌍청당을, 차남 여즙에게 별사하여 분급하였고, 여즙의 아들 세영은 장남에게 응상에게 서울집을, 차남 응서에게는 시골집(송촌동집)을 분급하였다. 응서는 송준길의 조부이다. 송준길은 5대조 쌍청당 송요년 차남 여즙의 계보이다. 그 다음 여즙의 손자 응서도 차남으로서 송준길의 종가로 이어진다. 이 차남들이 분급 받은 재산이 모두 송촌이었고, 그 자리에 종가 건립된다.
- 두 번째는 송촌에 정착한 송준길의 가문은 유명 명문가와 혼인과 송준길 자신이 율곡의 학통을 잇고, 김장생 문하에서 성리학을 공부하여 호서지역 대표적인 학자로 성장한다. 특히, 그는 영남학과 정경세의 사위가 되므로 당시 당쟁으로 까지 번지는 영남학과와 기호학과의 대립 속에서 통합과 소통의 학문으로 후일 문묘에 배향되는 인물이 되고, 명문가문으로 성장한다.
- 세 번째는 송준길의 가문은 예학의 전통을 어떻게 이어가는지 볼 수 있는 불천위와 기타 제례가 그대로 전승되고 있다.
- 송준길은 예학(禮學)과 예학사상은 김장생으로 이어지 기호학과의 학맥이지만, 영남학과로 예학에 밝은 장인 정경세의 예학을 함께 검토하면서 통일적이고 합리적인 조선의 예법을 찾으려 하였다. 특히, 은진송씨 가문에서 판교파(判敎, 송용년)와 정랑파(正郎, 송순년) 가 있는데, 서울에 많이 사는 정랑파는 4대봉사를 , 회덕에 주로 사는 판교파는 국법에 따라 3대봉사를 하였다. 송준길은 문중의 여러 어른들과 논의를 거쳐 4대봉사로 통일하였다. 이것은 문중의 화합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지만, ‘가례의 통일’이라는 그의 예학적인 목표를 실현하는 일기도 했다.
- 네 번째는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는 방대한 고문서들은 조선중기에서부터 근대이르기 까지 집안의 생활사와 회덕지역 향촌사회의 변화 볼 수 있는 자료들이다. 집안의 생활사를 볼 수 있는 자료는 375점의 언간(諺簡)이 대표적이다. 집안의 생활사뿐만 아니라 조선후기 여성생활사도 엿 볼 수 있는 자료로 평가된다.
- 조선후기 향촌사회의 변화를 볼 수 있는 자료는 송촌동대동계첩, 비래서당 관련 자료, 송현서원과 회덕향교 자료 등이 대표적이다.

- 이외에 의식주 생활을 엿 볼 수 있는 생활용품과 고서(古書)도 전승하고 있다. 특히, 주식시의와 우음제방 등의 음식조리서는 동춘가의 음식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 회덕지역 전통 음식문화를 알 수 있는 자료이다.
- 이와 같이 동춘당 고택은 조선후기 호서지역의 명현인 동춘당 송준길의 종가이자 이를 중심으로 한 가문과 지역의 역사·문화적인 의미를 찾는 중요한 공간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요건에 필요한 역사성, 학술성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 2. 대전 소대헌과 호연재 지정

### 가. 제안사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소재 「대전 소대헌과 호연재」 국가지정 문화재 (중요민속문화재) 지정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소재 대전시 민속문화재 제2호 「송용역 가옥」을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16년도 제3차 민속분과 문화재위원회('16.6.14.) 검토 후 「대전 소대헌과 호연재」로 지정예고('16.7.1.~8.1.)하였고, 제출의견 없음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대전광역시장
- (2) 대상문화재 : 대전 소대헌과 호연재(大田 小大軒 과 浩然齋, Sodaecheon and hoyeonJae's Historic House, Daejeon)
  - 소재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 70(송촌동 198-3, 4)
  - 소유자 : 문화재청(관리자 문화유산국민신탁)
  - 수량 : 일괄(건물 4동, 토지 2,813㎡<2필지>)
    - 건축물 지정 : 4동

| 명 칭   |                | 시 대  | 구조/형식/형태                | 크기/수량  | 소유자  |
|-------|----------------|------|-------------------------|--------|------|
| 송용역가옥 | 큰사랑채<br>(소대헌)  | 조선시대 | 목구조 5량가, 정면5칸×측면2칸, 一자형 | 123.2㎡ | 문화재청 |
|       | 작은사랑채<br>(오숙재) | 조선시대 | 목구조 3량가, 정면8칸×측면1칸, 一자형 | 135.3㎡ |      |
|       | 안채             | 조선시대 | 목구조 5량가, 정면6칸×측면5칸, 一자형 | 166.0㎡ |      |
|       | 가묘             | 조선시대 | 목구조 3량가, 정면2칸×측면1칸, 一자형 | 35.9㎡  |      |
| 계     |                |      |                         | 460.4㎡ |      |

- 토지 지정 면적 : 2,813m<sup>2</sup>

| 소재지         | 지 번      | 지목 | 지적(m <sup>2</sup> ) | 지정(m <sup>2</sup> ) | 소유자  |
|-------------|----------|----|---------------------|---------------------|------|
|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 | 198-3, 4 | 대  | 2,813m <sup>2</sup> | 2,813m <sup>2</sup> | 문화재청 |
| 계           |          |    | 2,813m <sup>2</sup> | 2,813m <sup>2</sup> |      |

라. 지정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불입1 참조

<○○○ 문화재위원> : 지정가치 있음

- 송용억가옥은 동춘당 송준길의 둘째 손자 송병하가 분가하면서 거주하기 시작하여 현재 11대손까지 살고 있는 오래된 집이다. 이 집은 동춘당과 동춘당고택과 같이 주변의 자연 경관과 잘 어우러져 배치되어 있는 이 지방의 대표적 상류주택이다.
- 전체적으로 건물을 비롯하여 공간구성이나 건물의 구성이 양호하고 이 지역 상류주택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활용측면에서도 대전시의 근린 공원에 위치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휴식공간과 역사교육공간을 제공하고 있어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가깝게 다가가고 있어 활용도도 좋으리라고 생각한다.
- 건물구성이나 공간구성이 국가지정으로 조금 미약하나 동춘당과 함께 대전 시민들에게 교육의 장 제공, 대전의 국가지정 수량 등을 감안 국가지정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며 변형부분의 회복이 필요함

<○○○ 문화재위원> : 지정가치 있음

- 이 집은 1674년에 건축되어 1714년에 한 번 이축되었으나 변형 없이 거의 그대로 이축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크게 증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조선중기 대전 지역의 살림집을 이해 할 수 있는 건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동춘고택과 같은 가문의 은진송씨 세거지로, 규모와 배치는 다르지만 전체적인 평면구성이나 건축기법에서 동춘고택과 유사한 형식을 보이고 있다. 작은사랑채와 큰사랑채가 동시에 갖추어진 집은 흔하지 않으며 특히 큰 사랑채가 양통으로 간살이 된 집은 이 지역에서는 드물다. 그러면서도 대청을 한 쪽에 두는 방식이나 안채의 경우 마루방과 뒷마루 등이 전면 뿐만 아니라 사방에 다양한 크기로 배치하는 방식은 이 지역의 특색이다.

- 살림집의 진입방식에서도 대문채와 중문채를 거쳐 마당의 대각선 방향으로 진입하는 역동적 처리 방식 또한 이 지역의 특색이다. 비록 최근에 조악한 수리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비교적 조선중기의 원형이 잘 남아 있고 대전지역에서는 살림집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나마 이 지역적 특색을 알 수 있는 희소성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 문화재위원> : 지정가치 있음

- 송촌에 동춘당 송준길의 고택이 자리 잡고 그 뒤 후손들이 분가하면서 소대헌 송요화의 고택도 건립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소대헌 고택은 큰 집격인 동춘당 고택과 분리하여 이해하면 의미를 갖기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동춘당 고택과 통합하여 동춘당 송준길 가문으로 이해하면 한 집안의 가계계승의 문재나, 호서지역의 명문가후손 집안으로 면모를 찾을 수 있다. 동춘당 고택과 소대헌 고택을 연관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는 동춘당 송준길 종가는 자손이 귀하여 양자를 들이게 된다. 이 양자는 송준길의 둘째 손자 송병하의 가문에서 들어오게 된다. 동춘당 종가로 양자로 간 송요경은 송준길의 증손자로 소대헌 송요화의 친형이고, 송준길의 7대손 종손 송경희는 송요화의 증손자이다. 8대손 종손 송석로도 송요화의 5대손이다. 10대, 11대 종손도 모두 송요화의 자손이다. 이런 입양자 관계로 두 집안은 따로 구분하여 이해가 어렵다.
- 두 번째는 소대헌 송요화의 자손들은 송준길의 종가를 이었기 때문에 동춘당 학문이나, 혼맥, 그리고 집안의 전통적의 의례 모두 동춘당 고택의 전통과 하나로 보아야 한다.
- 세 번째는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는 방대한 고문서들도 동춘당 종가와 소대헌 자손들이 공유한 것들이 많고, 집안의 생활사에 대한 이해도 두 집이 중첩되어 이해되고 있다.
- 소대헌 고택은 위에서 제시한 사정을 수용하면, 여러 역사문화적인 사항이 동춘당 송준길 가문과 지역의 역사·문화적인 의미를 찾는 중요한 공간으로 중요민속문화재 지정 요건에 필요한 역사성, 학술성이라는 측면에서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 다만, 앞에서 제시한 여러 사정으로 보아 소대헌 고택은 별개의 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하기보다 동춘당 고택과 하나로 묶어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 마. 참고사항(대전시 의견)

- 조선후기 기호유학의 대표적인 학자인 송준길(宋浚吉, 1606~1672)의 별당인 동춘당과 안채인 동춘고택 등과 인접하여 있는 「대전 회덕 소대헌·호연재 고택」은 송준길의 둘째 손자인 수우재(守迂齋) 송병하(宋炳夏, 1646~1697)가 1674년(顯宗 15) 분가하여 건립한 고택인데, ‘동춘선생 소종택(小宗宅)’으로 불릴 정도로 송준길과 관련이 깊은 고택이며 조선후기 저명한 여류시인 김호연재(金浩然齋, 1681~1722)가 살던 공간으로 조선후기 충청지역의 대표적인 사대부가 상류주택의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고, 그 변천과정에 대한 기록이 존재하고 건축 양식 및 건축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갖고 있으므로 국가 지정 문화재로서 지정할만한 충분한 가치를 갖고 있다고 사료된다

#### 바. 검토의견

- 지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 신사임당, 허난설헌과 같이 양반 여성의 경우 호에 성씨를 붙여서 불리웠으므로 호연재는 김호연재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경남 사천의 호연재 학당, 전남 영암의 호연재 성산현씨 재실과도 구분 필요)
- 당호의 경우 거처 공간 일부분만 가리키는 경우가 많아 당호에도 고택을 붙여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지정명칭은 “대전 소대헌과 김호연재 고택(大田 小大軒 과 金浩然齋 古宅)”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영문표기 : Sodaehon and KimhoyeonJae's Historic House, Daejeon

#### 사.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명칭은 ‘대전 소대헌·호연재 고택’으로 함

#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 보고서

## 송용억 가옥 지정조사보고서

1. 조사자 : ○○○, 한국건축사, 전북대학교 교수

2. 문화재 종류 : 중요민속문화재

3. 문화재 명칭 : 송용억 가옥(宋容億 家屋)

### 4. 입지현황과 역사문화환경

- 송용억가옥은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의 도심에 위치하고 있는데 주변은 도심이 형성되어 아파트를 주로 하는 주거단지가 형성되어 있고 이 집의 좌측 전면에는 동춘당이 있고 좌측에는 동춘당고택이 있으며 주변에는 근린공원이 형성되어 있다.

### 5. 연혁 유래 및 특징

- 이 집은 회덕 동춘당(보물 제209호)의 우측 후면에 위치하고 있는데 대문을 들어서면 왼쪽에 큰 사랑채가 있고, 오른쪽에는 작은 사랑채가 있다. 작은 사랑채의 왼쪽에 나 있는 중문을 들어서면 안채가 위치하고 있다.
- 안채는 ‘ㄱ’자형 평면에 사다리꼴 모양의 방형 주초를 놓고 방형기둥을 세운다음 3량집으로 구성하였다. 안채는 최근에 대청에 유리덧문을 달아 원형이 변경되었다.
- 사랑채는 정면 5칸, 측면 2칸의 평면으로 우측 2칸은 통칸에 우물마루의 넓은 대청이 있으며 그 옆에 뒷마루가 달린 2칸 통칸의 온돌방이 있다. 그리고 방 사이에는 미닫이문을 달았다. 온돌방 옆에 있는 1칸에는 앞 칸은 온돌방을 꾸미고 뒷 칸은 상부는 다락, 하부에는 함실이 있다.
- 안채뒤에는 정면 2칸, 측면 2칸의 사당이 있는데 안채는 내부에 위패를 봉안하고 건물 정면에 ‘송씨가위조호패(宋氏家位調號牌)’라는 판이 걸려 있다.
- 구조는 3벌대의 자연석 기단위에 사다리꼴의 방형 주초위에 방형기둥을 세우고 주상부는 외부에서 보았을 때 직사각형이고 내부에서는 초각을 한 연량이 건물의 내외 방향으로 결구되어 있어 대량의 단부를 일부 보강하여 주고 있다. 지붕은 전후 평주사이에 내고주를 세우고 대량과 퇴량을 걸고 대량 위에 동자주를 세워, 내고주와 함께 종량을 받도록 하고 있다. 종량 위에는 맥연초각을 한 제형대공을 설치하여 종도리와 함께 지붕의 하중을 받쳐주고 있으며, 지붕은 홑처마 팔작지붕을 이룬다.

### 6. 지정 가치 및 종합의견

- 송용억가옥은 동춘당 송준길의 둘째 손자 송병하가 분가하면서 거주하기 시작하여 현재 11대손까지 살고 있는 오래된 집이다. 이 집은 동춘당과 동춘당고택과 같이 주변의

자연 경관과 잘 어우러져 배치되어 있는 이 지방의 대표적 상류주택이다.

- 전체적으로 건물을 비롯하여 공간구성이나 건물의 구성이 양호하고 이 지역 상류주택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활용측면에서도 대전시의 근린공원에 위치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휴식공간과 역사교육공간을 제공하고 있어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가깝게 다가가고 있어 활용도도 좋으리라고 생각한다.
- 단지 이 집의 건물구성이나 공간구성이 국가문화재로 지정되기에는 조금은 미약하지 않나 판단된다. 그리고 후대에 보수하고 생활하면서 변용된 부분도 조금은 아쉽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미흡하지 않나 판단된다.
- 그러나 이 집이 동춘당, 동춘당고택과 더불어 대전도시의 중심부에서 시민들에게 역사교육의 장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린공원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문화재청이 위치하고 있는 대전에서 국가문화재가 적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형회복에 대한 부분은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송용억 가옥 지정조사보고서

1. 조사자 : ○○○, 한국건축사, 명지대학교 교수

2. 문화재 종류 : 중요민속문화재

3. 문화재 명칭 : 송용억 가옥(宋容億 家屋)

### 4. 창건과 변천

- 송용억 가옥은 동춘당 송준길의 둘째 손자인 수우재(守迂齋) 송병하(宋炳夏, 1646-1697)가 1674년 법천동(현재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동)에 초창하였고 현재의 위치로 이 건한 것은 40년 후인 1714년 그 아들인 송요화에 의해서 이다.
- 송용억 가옥은 안채와 큰사랑채, 작은사랑채, 사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안채는 호연재(浩然齋), 큰사랑채는 소대헌(小大軒), 작은사랑채는 오숙재(寤宿齋)라고 부른다.
- 이후 중건기록은 찾아보기 어렵다. 1888년에 송종오(1828-1904)가 지은 “소대헌 중수기”에 따르면 송병하가 법천동에 분가하여 따로 살았고 그의 아들 송요화가 나이 30이 넘어 동춘당 동북쪽 100보가 채 안되는 곳에 새 집터를 사서 사당과 안채를 옮겨지었는데 소대헌은 바깥채 즉 사랑이다. 그 곁에 오숙재가 있는데 5세조 송익흠이 독서하던 곳이라는 것이다. 이로써 송용억가옥은 법천동에 초창되었다가 현재의 위치로 이 건한 것은 1714년임을 알 수 있다. 또 같은 기록에서 작은사랑채인 오숙재는 송종오가 태어나던 해인 1828년에 중건하였다고 하였다. 물론 초창에 대한 기록은 없다. 다만 오숙재의 편액은 1733-1735년에 걸린 것으로 오숙재 송익흠의 연보에 의해 추정 가능하다.
- 1888년의 큰사랑채 소대헌의 중수는 창호와 벽체를 크게 손대지 않았으며 옛 그대로 고치되 다만 루는 실로 고쳐 손님 휴식공간으로 사용했다고 했다. 따라서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마루 한 칸을 온돌로 바꾼 것으로 추정된다.
- 이외의 조선시대 중수기록은 찾아 볼 수 없고 1900년대 후반과 2000년대에 들어서 보수 정비한 기록이 남아 있다. 따라서 송용억 가옥은 조선 중기의 모습을 간직한 살림집이라고 볼 수 있다.

### 5. 건축구조 및 양식

- 송용억 가옥은 1674년에 법천동에 초창되었다가 1714년에 현재의 위치인 동춘고택 옆으로 이 건하였다. 그대로 이 건하였는지 부재만을 활용하여 구조와 양식이 바뀌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초창한지 40년 밖에 안 된 집을 이 건한 것이기 때문에 거의 그대로 이 건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중대한 중건기록이 없으므로 조선 중기 충청지역의 사대부가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송용억 가옥은 현재 전체적으로 약간 남서향을 하고 있으며 안채와 큰사랑채, 작은사랑

채, 사당으로 구성되어있다. 남쪽의 대문을 들어서면 서쪽에 큰 사랑, 동쪽에 작은사랑채가 배치되었으며 작은사랑 서쪽의 중문을 들어서면 안채 안마당에 이르게 된다. 안채 전면에 작은 사랑채가 놓여 전체적으로 ‘ㄷ’자 배치를 이루며 이보다 낮은 서쪽의 별도 영역에 큰 사랑채가 있다.

- 안채는 ‘ㄱ’자형 평면이며 가운데 3칸 대청을 기준으로 동쪽 2칸은 건넌방이고 대청과 건넌방 앞에는 툇마루가 있다. 서쪽은 남쪽으로 날개가 뻗어 나왔는데 찬방2칸과 골방 1칸, 제일 앞에는 부엌이 배치되었다. 그리고 찬방 북쪽으로는 2칸의 마루방이 있다. 구조는 무고주 3량가로 보간이 넓은 것이 특징이다. 대청 부분보다 안방이 있는 날개채 부분의 보간이 넓은 것이 특징적이다. 평면은 중부지방의 보편적인 ‘ㄱ’자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안방부분의 부엌과 골방, 마루방 등이 복잡하고 보간이 큰 것은 대규모 살림집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 부분의 구성은 동춘고택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지붕은 대청 쪽은 보간이 날개채 보다 크에도 불구하고 합각이며 날개채 부분은 맞배지붕이다. 본채 부분의 격식을 고려한 지붕형식이라고 판단된다.
- 큰 사랑채는 정면5칸, 측면2칸의 양통집 구조로 동쪽2칸은 대청이고 서쪽은 온돌방으로 구성되었다. 가구는 민도리형식의 1고주5량가이며 창호는 문열굴만 남기고 좌우 인방은 벽 속에 감추는 고식 기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청부분의 창호는 근래에 교체했는데 수종과 형식이 조잡하여 아쉬움이 남는다.
- 작은 사랑채는 안채 남쪽에 위치하며 맨 서쪽은 중문간을 시작으로 총 8칸으로 구성되었다. 책방과 골방, 작은사랑방, 마루, 큰사랑방, 마루로 구성되었다. 두 개의 사랑방에 별도의 마루를 설치한 것이 동춘고택 사랑채와 유사한 구성이다. 방과 대청 앞에는 툇마루를 두고 일자형으로 길게 만든 것도 유사점이라고 할 수 있다.

## 6. 지정 가치 및 종합의견

- 이 집은 1674년에 건축되어 1714년에 한 번 이축되었으나 변형 없이 거의 그대로 이축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크게 증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조선중기 대전 지역의 살림집을 이해 할 수 있는 건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동춘고택과 같은 가문의 은진송씨 세거지로 규모와 배치는 다르지만 전체적인 평면구성이나 건축기법에서 동춘고택과 유사한 형식을 보이고 있다. 작은사랑채와 큰사랑채가 동시에 갖추어진 집은 흔하지 않으며 특히 큰 사랑채가 양통으로 간살이 된 집은 이 지역에서는 드물다. 그러면서도 대청을 한 쪽에 두는 방식이나 안채의 경우 마루방과 툇마루 등이 전면뿐만 아니라 사방에 다양한 크기로 배치하는 방식은 이 지역의 특색이다.
- 살림집의 진입방식에서도 대문채와 중문채를 거쳐 마당의 대각선 방향으로 진입하는 역동적 처리 방식 또 한 이 지역의 특색이다. 비록 최근에 조악한 수리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비교적 조선중기의 원형이 잘 남아 있고 대전지역에서는 살림집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나마 이 지역적 특색을 알 수 있는 희소성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송용억 가옥 지정조사보고서

1. 조사자 : ○○○, 민속학, 대전보건대학교 교수

2. 문화재 종류 : 중요민속문화재

3. 문화재 명칭 : 송용억 가옥(宋容億 家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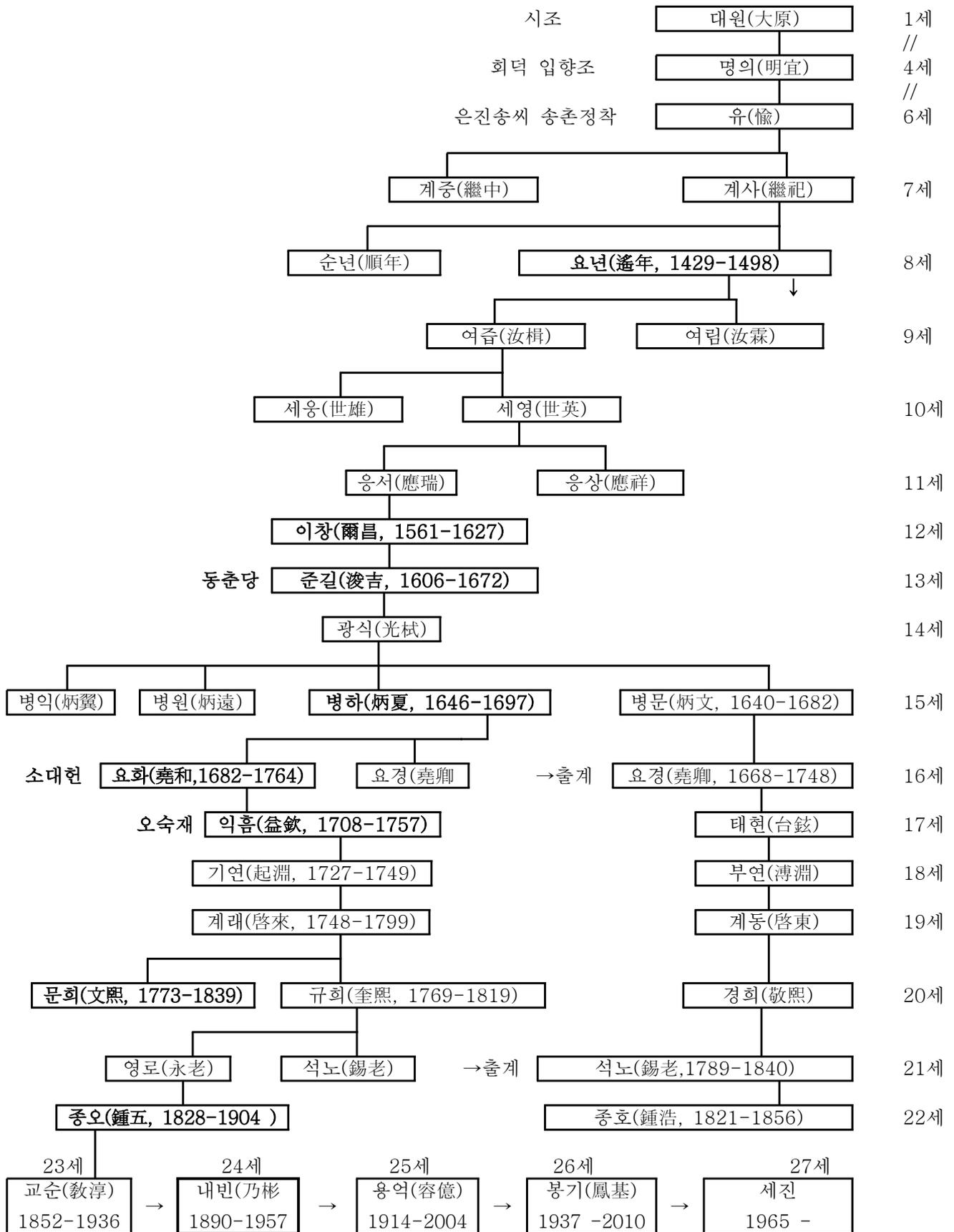
### 4. 동춘당 송준길의 가계와 종택 건립

#### 1) 송촌 은진송씨 입향과 종가의 계보

- 은진송씨는 4세 송명익(宋明宜)가 회덕에 세거하는 회덕 황씨 황수(黃粹)의 사위가 되면서 회덕의 입향조가 된다. 은진송씨가 회덕에 정착하는데 핵심적인 인물은 쌍청당(雙淸堂) 송유(宋愉, 1389-1446)이다. 그는 입향조 송명익의 손자로 젊은 나이에 벼슬에 올랐으나, 선덕왕후 강씨의 위패가 종묘에 모셔지지 않자 벼슬을 버리고, 회덕의 백달촌(白達村)에 은거하면서 학문과 후진양성에 힘을 쏟는다. 송유는 송준길의 7대조로 그가 백달촌에 정착한 이후 은진송씨들이 회덕에 많이 거주하게 되고, 백달촌이라는 이름도 송촌(宋村)으로 바뀐다. 송준길의 윗대에서 주요한 인물로는 5대조 송요년(遙年, 1429-1498)과 아버지 송이창(爾昌, 1561-1627) 등이다.
- 송요년은 송유의 손자로 1453년생에 생원시, 1479년 문과합격에 하였다. 관직은 의금부도사, 사헌부 감사, 청주 판관, 상주목사 홍주목사를 지냈다. 송유에게는 여립(汝霖)과 여즙(汝楫) 두 아들이 있는데, 장자에게 조부의 쌍청당을 물려주고, 차자인 여즙에게는 송요년이 지은 별사를 물려주었다.
- 송이창(宋爾昌, 1561-1627)은 송준길의 아버지로 1590년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고, 1600년 연원도찰방(連原道察訪)을 시작으로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 진안현감(鎭安縣監), 신령현감(新寧縣監)을 역임하였다. 1613년 계축옥사(癸丑獄事)로 파직되어 회덕(懷德)에 돌아왔다. 인조반정(仁祖反正)으로 문의현령(文義縣令), 군자감판관(軍資監判官) 등을 역임했다. 송이창은 1598년에 청좌와(淸坐窩)를 지었다고 연보에 적고 있다. 청좌와는 현재 동춘당 고택이 있는 곳으로 추정된다.
- 송준길(宋浚吉, 1606-1672)은 그는 대전이 낳은 대표적인 성리학자의 한 사람으로 그의 선대는 대대로 회덕(懷德) 송촌(宋村:지금의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에 세거하였다. 그는 율곡 이이(栗谷李珣)의 학설을 지지하였고, 특히 예학(禮學)의 종장(宗匠)이던 사계 김장생의 문인으로 학통을 이어받아 예학에 밝았고, 글씨에도 능하여 많은 비문(碑文)을 남겼다. 호는 동춘당으로 1624년 진사(進士)가 된 뒤에 학행(學行)으로 천거받아 여러 관직에 임명되었으나, 대부분 관직에 나가지 않았다. 그 뒤 김장생의 아들인 신독재 김집(愼獨齋金集)이 이조판서로 기용되면서 우암 송시열(尤庵宋時烈)과 함께 발탁되어 부사직(副司直)·진선(進善)·장령(掌令) 등의 벼슬에 올랐다. 그 후 정치적 혼란으

로 벼슬길에서 물러났다가 효종(孝宗)대에 다시 대사헌(大司憲)·이조참판(吏曹參判) 등을 거쳐 1659년에는 병조판서(兵曹判書)·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우참찬(右叅贊)으로 송시열과 함께 국정에 참여하면서 효종의 북벌계획(北伐計劃)에 참여하였다. 그 후 효종이 죽고 현종(顯宗)이 즉위하자 자의대비(慈懿大妃) 복상문제로 이른바 예송(禮訟)이 일어난 후 여러 차례 벼슬이 내려졌으나 계속 사퇴하였다. 그가 죽은 후 다시 정치적 혼란으로 한 때 관직이 삭탈되기도 하였으나 얼마 안 있어 다시 복구되었다. 1681년 회덕(懷德) 송현서원(崇賢書院)에 제향되고 문정(文正)이라는 시호(諡號)를 받았고, 1756년(英祖 32)에는 문묘(文廟)에 제향되었다.

- 소대헌 고택과 관련한 인물은 송준길의 둘째 손자 송병하(宋炳夏, 1646~1697), 증손자 송요화(宋堯和, 1682~1764), 고손자 송익흠(宋益欽, 1708~1757) 등 이다.
- 송병하(宋炳夏, 1646~1697)는 동춘당(同春堂) 송준길(宋浚吉)의 손자이며 송준길의 외아들 송광식(宋光弼, 1625~1664)의 둘째 아들이다. 집안에서는 조부인 송준길에게 배웠고, 우암 송시열(尤庵 宋時烈)에게 나아가 학문을 익혔다. 1686년(肅宗 12) 선혜청정랑(宣惠廳 正郎)을, 1695년(숙종 21) 장예원 사평(掌隸院 司評)이 되었는데 병으로 나가지 아니했다. 그가 벼슬길에 나간 후 여러 관직을 거쳤고, 1697년(숙종 23)에 수원부사(水原府使) 이후 충주목사(忠州牧使)를 제수(除授)했는데 나가지 않았다.
- 송요화(宋堯和, 1682~1764)는 호가 소대헌(小大軒)이고, 소대헌을 건립한 인물이다. 그는 동춘당(同春堂) 송준길(宋浚吉)의 증손이며 송병하(宋炳夏)의 아들이다. 삼연(三淵) 김창흡(金昌翕, 1653~1722) 문하에서 역학(易學)을 배웠고 제자백가(諸子百家)를 익혔다. 1730년(영조 6)에 벼슬길에 나아가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등의 여러 내직(內職)과 선산부사, 광주목사 등 여러 외직(外職)을 거쳤다. 1756년(영조 32)에 노인(老人) 우대(優待)로써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올랐으며 1763년(영조 39)에는 자헌대부(資憲大夫)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에 올랐다. 문집으로 『소대헌유고(小大軒遺稿)』가 있다.
- 송익흠(宋益欽, 1708~1757)은 호가 오숙재(寤宿齋)이고 소대헌(小大軒) 송요화(宋堯和)의 아들이자 송준길의 고손자이다. 어머니는 안동김씨(安東金氏)로 호가 호연재(浩然齋)이다. 호연재 김씨(1681-1722)는 경서(經書)와 사서(四書)에 능통하였고, 여류시인이었다. 시가(媿家)뿐만 아니라 친정 식구들과 교류한 많은 언문간찰을 남겼다. 송익흠은 어릴 때 이런 어머니에게 배웠고 육경(六經)에 전심하며 학문에 힘썼다. 재종형제간인 송명흠(宋明欽, 1705~1768), 송문흠(宋文欽, 1710~1752) 형제와 학문적 교류가 많았다. 벼슬은 1751년(英祖 27) 존호도감 감조관(尊號都監監造官)을 거쳐 1752년에는 홍천현감(洪川縣監), 1754년 사복시 주부(司僕寺主簿)로 제수되었고 보은현감(報恩縣監)이 되어 나갔다. 문집으로 『오숙재집(寤宿齋集)』이 있다.



## 5. 소대헌 고택의 건립

- 은진송씨 소대헌 고택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198-3, 4에 자리하고 있다. 이 고택은 소대헌(小大軒) 송요화(宋堯和, 1682~1764) 이후에 후손들이 대대로 살아 온 집이다. 고택으로 가는 길 좌측에는 동춘당(同春堂, 보물제 209호)이고 동춘당 뒤편에 동춘당 고택이 있다.
- 동춘당 송준길의 아들과 손자들은 동춘당 고택에서 나고 자랐다. 송준길은 3명의 손자를 두었는데, 둘째 손자 송병하가 분가하여 법천동(대덕구 법동)에 살았다. 송병하는 요경과 요화 두 아들을 두었는데, 장남 요경은 동춘당 종가로 양자로 갔고, 둘째인 요화가 그대로 법천에서 거주하였지만, 1714년 송촌으로 들어와서 살게 된다. 이 때 동춘당 고택에서 100보 떨어져 있던 곳에 새 집터를 마련 한 것으로 소대헌 중수기에 나타나 있다.
- 1888년(高宗 25) 송병하의 7대손 송종오(宋鍾五, 1828~1904)가 지은 「소대헌중수기(小大軒 重修記)」를 보면, 송병하(宋炳夏, 1646~1697)가 법천동(法泉洞:현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동)에 살았고, 그 아들인 송용화(宋堯和, 1682~1764)가 나이 30이 넘어 동춘당 동북쪽으로 100보가 채 안 되는 곳에 새 집터를 사서 사당과 안채[祠宇正寢]를 옮겨지었는데 소대헌(小大軒)은 바깥채 즉 사랑이다. 소대헌 곁에 오숙재(寤宿齋)가 있는 송종오의 5대조 송익흠(宋益欽, 1708~1757)이 독서하던 방이라고 하였다.
- 소대헌은 법천동에서 옮겨 지은 큰사랑채이고, 오숙재는 작은 사랑채로 1733~1735년경에 편액을 걸었던 것으로 송익흠의 연보에서 추정할 수 있다. 작은사랑채 오숙재(寤宿齋)는 1828년(순조 28) 중건, 큰사랑채 소대헌(小大軒)은 1837년(헌종 3)과 1888년(고종 25)에 중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 6. 소대헌 송요화가의 역사 · 문화적인 자료와 전승의례

### 1) 혼례

- 회덕의 은진송씨는 호서지역의 명문가 널리 알려져 있다. 4세 송명익이 회덕의 부호 회덕 황씨 황수의 사위가 되어 회덕에 입향하였고, 6세 송유가 정착한 후 명문가와 혼인하여 사회적 기반 다졌다. 그의 장남 7세 계사는 김종서의 아우 김종홍의 딸과 차남 계중은 권근의 아우 권홍의 딸과 혼인하였다. 8세 요년은 나주 판관을 지낸 김양을의 딸과 혼인하였다. 요년의 장남 여림은 우의정을 지낸 광산김씨 가문의 김국광의 딸과, 차남 여즙은 태조의 현손 아립군의 딸과 혼인하였다. 10세 여즙의 장남 세영은 세종대왕의 증손자 계와 딸과 혼인하였다. 10세 송이창은 아산김씨 김은희의 딸과 혼인하였다.
- 동춘당 송준길은 기호학파이면서도 영남학파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 1563-1633)의 사위가 되었다. 당시 학파간의 학맥을 견고하게 형성되어 당쟁이 여러번 일어나 교류가 쉽지 않았던 시기였다. 하지만, 영남학파로 특히 예학 뛰어난 식견을 가진 정경세는 기호학파 예학자 김장생과의 인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다. 정경세는 김장생과의 관계로 송준길을 사위로 맞았고, 그 뒤 송준길은 정경세의 영남학파의

예학과 김장생의 기호학과의 예학을 종합하고 조화를 이루게 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송준길이 이후에도 우봉 이씨, 대전 무수동의 안동권씨 집안, 덕수 이씨, 여흥민씨 등의 집안 등과 혼반(婚班)을 이어갔다.

## 2) 식생활 문화

- 동춘당 가문에서는 조선후기 식생활문화를 볼 수 있는 음식조리서를 주식시의(酒食是儀)와 우음제방(禹飲諸方)이 전해지고 있다.
- 주식시의는 한글 필사본으로 조리서로 송영로(宋永老, 1803-1881)의 부안 연안이씨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술 만드법, 약탕, 찜, 죽, 면, 미음, 전 김치, 장류 등 다양한 음식 조리법과 생선 굽는 법. 계를 오래 두는 법, 고기 삶는 법 등 음식재료 다루는 법이나 기본적인 조리법 등 94종 정도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 우음제방은 은진송씨가에서 전해 오는 각종 술 빚는 방법을 기록 양조서(釀造書)이다. 여기에는 소곡주, 호산춘, 두견주, 송순주, 보리소주, 국화주, 구일주, 백일주 등 24가지의 술 담그는 방법이 기술되어 있다.
- 현재 집안에서 전하는 송순주(소대현 송용화가, 무형문화재 제3호-가)와 국화주(동춘당 종가, 무형문화재 제3호-나)가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전승되고 있다.

## 3) 의례문화

- 동춘당 송준길은 기호학파로서 김장생의 문하에서 학문을 하면서 예학(禮學)에도 밝았다. 그는 전문적인 예서를 남기지 않았지만, 김장생 · 김과의 예문답(禮問答)이나, 장인 정경세와의 예문답 등에서 그의 예학사상을 볼 수 있다. 기해예송에서 주장한 ‘천하동례(天下同禮)’의 예설도 실록 등에 다양하게 수록되어 있다. 송준길이 추구한 예학사상은 실용성이 높은 주자의 『가례(家禮)』를 많이 따랐지만, 우리의 속례(俗禮)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이었다.
- 그 예로, 회덕에 세거해 온 은진 송씨가 서울에 많이 거주하는 정랑공파(正郎, 송순년)와 회덕에 많이 거주하는 판교공파(判教, 송요년)이 있었는데, 정랑공파는 4대봉사를 하고, 판교공파는 국법에 따라 3대봉사를 하였다. 이에 송준길은 문중의 여러 일가들과 논의 거쳐 4대봉사로 결정하였다. 이것은 한 문중의 화합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지만, 가례의 통일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고자 했다. 실생활에서도 친구문상법, 부의(賻儀) 품목, 상중에 맞 있는 음식 먹지 않는 일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하였다고 한다.
- 동춘당 고택이 제사공간으로는 가묘(家廟)와 별묘(別廟)가 있다. 가묘에는 4대조상의 위패가 모셔져 있고, 별묘에는 불천위인 동춘당 송준길의 위패가 모셔 있다. 동춘당 송준길 집안에서는 이 가묘와 별묘의 제례에 관한 내용을 수록한 덕은가승(德殷家承) 전한다.
- 덕은가승에는 사당과 관리 제전(祭田) 등이 적혀 있고, 시제는 봄 2월과 5월, 가을 8월과 11월 상정(上丁)에 실행한다. 사고 있을 때에는 의논하여 중정(中丁)안, 하정(下丁)으로 물려서 정한다. 이외에 제물에 관한 기록도 보인다.
- 예학에 밝은 송준길은 집안 제례에 관 여러 규칙을 정하여 지내도록 하였지만 현재 전승되는 제례문화는 기제사와 묘사 등이 전승하지만, 소대현 송요화의 고택이 문화재청의 소유가 됨에 따라 제사는 후손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지내고 있다.

#### 4) 고문서와 생활용품

- 동춘당가의 고문서는 한국중앙연구원에서 정리한 바 있고, 현재 상당한 분량이 대전선사 박물관에 기탁되어 있다. 동춘당가의 고문서는 대체로 16세기에서 20세기까지 자료로서 조선중기부터 근대까지 걸쳐 생활문화사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들이 많이 있다.
- 자료현황을 보면, 고문서(古文書) 55종 1861점, 성책고문서(成冊古文書) 199종, 256책, 서화필첩(書畵筆帖) 161종 175책, 고서(古書) 304종, 1500책 등 모두 719종 3792점이다.
- 고문서는 고신(告身), 홍패(紅牌), 백패(白牌), 소지(所志), 호적(戶籍), 간찰(簡札), 혼서(婚書), 치부(置簿) 등이 있는데, 특히 언간(諺簡) 373점이나 포함되어 있다. 이들 언간(諺簡)은 조선후기 여성사와 가족문화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 성책고문서는 치부류, 송현서원·회덕향교·비래서당 자료, 일기류 등이 있다. 특히, 송촌 동대동계첩, 비래서당 관련 자료, 송현서원과 회덕향교 자료는 조선후기향촌사회의 자료로 향촌사회의 변화와 그 실상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 서화필첩으로는 낱장으로 된 것이 67종, 필첩 등으로 장첩한 것이 109첩인데, 낱장의 첩 가운데, 동춘당 글씨가 약 20여점이다.
- 고서 중 전적은 대체로 17세기 판본이 많다. 17세기 전적 가운데 ‘동춘옹(同春翁)’ 장서인이 있어 동춘당 송준길 직접 소장한 고서가 그대로 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적 들은 활자본 많고, 소장전적이 대부분 완질본으로 보관되어 있고, 낙질본도 결본도 적다.
- 생활용품으로는 투호, 쌍륙, 바둑판 놀이도구와 흑립, 땡기, 은제비녀, 장도, 삼자노리개, 좌등, 지등롱, 제등, 조족등, 찬합, 연초합, 표주박, 부채 등 의생활과 주생활을 엿 볼 수 있는 민속자료들이 보관되어 있다.

#### 7. 지정가치 및 종합의견

- 대전 소대헌 고택은 동춘당 송준길의 둘째 손자 송병하가 분가하여 법천동(대덕구 법동)에 살았다. 송병하(宋炳夏, 1646-1697)는 요경(堯卿, 1668-1748) 과 요화(堯和, 1682-1764) 두 아들을 두었는데, 장남 요경은 동춘당 종가로 양자로 갔고, 둘째인 요화가 그대로 법천에서 거주하였지만, 1714년 송촌으로 들어와서 살게 된다. 이 때 동춘당 고택에서 100보 떨어져 있던 곳에 새 집터를 마련 한 것으로 소대헌 중수기에 나타 있다.
- 소대헌(小大軒)은 송요화(宋堯和, 1682~1764)의 호이고, 법천의 사당과 안채[祠宇正寢]를 옮겨 지었는데 바깥채 큰사랑에 소대헌(小大軒)이라는 편액을 걸었다. 소대헌 곁에 오숙재(寤宿齋)가 있는 송요화의 아들 오숙재 송익흠(宋益欽, 1708~1757)이 독서하던 방이라고 하였다. 소이헌 고택은 법천의 집을 이건하였으나, 작은사랑채 오숙재(寤宿齋)는 1828년(純祖 28) 중건, 큰사랑채[ 소대헌(小大軒)은 1837년(헌종 3)과 1888년(고종 25)에 중수한 것이다. 그 뒤 대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수리보수를 거치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지만, 고택은 국민신탁제도에 따라 국가에서 매입하여 문화재청의 소유가 되었다.
- 송촌에 동춘당 송준길의 고택이 자리 잡고 그 뒤 후손들이 분가하면서 소대헌 송요화

의 고택도 건립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소대헌 고택은 큰 집격인 동춘당 고택과 분리하여 이해하면 의미를 갖기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동춘당 고택과 통합하여 동춘당 송준길 가문으로 이해하면 한 집안의 가계계승의 문제나, 호서지역의 명문가후손 집안으로 면모를 찾을 수 있다. 동춘당 고택과 소대헌 고택을 연관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는 동춘당 송준길 종가는 자손이 귀하여 양자를 들이게 된다. 이 양자는 송준길의 둘째 손자 송병하의 가문에서 들어오게 된다. 동춘당 종가로 양자로 간 송요경은 송준길의 증손자로 소대헌 송요화의 친형이고, 송준길의 7대손 종손 송경희는 송요화의 증손자이다. 8대손 종손 송석로도 송요화의 5대손이다. 10대, 11대 종손도 모두 송요화의 자손이다. 이런 입양자 관계로 두 집안은 따로 구분하여 이해가 어렵다.
- 두 번째는 소대헌 송요화의 자손들은 송준길의 종가를 이었기 때문에 동춘당 학문이나, 혼맥, 그리고 집안의 전통적 의례 모두 동춘당 고택의 전통과 하나로 보아야 한다.
- 세 번째는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는 방대한 고문서들도 동춘당 종가와 소대헌 자손들이 공유한 것들이 많고, 집안의 생활사에 대한 이해도 두 집이 중첩되어 이해되고 있다.
- 소대헌 고택은 위에서 제시한 사정을 수용하면, 여러 역사문화적인 사항이 동춘당 송준길 가문과 지역의 역사·문화적인 의미를 찾는 중요한 공간으로 중요민속문화재 지정 요건에 필요한 역사성, 학술성이라는 측면에서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 다만, 앞에서 제시한 여러 사정으로 보아 소이헌 고택은 별개의 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하기보다 동춘당 고택과 하나로 묶어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 3. 안동 하회마을 내 골재채취

####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 지정구역 내 골재채취를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안동 하회마을 지정구역 내 골재채취 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 2014년도 제6차 민속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14.12.1)에서 인접한 위치에 골재채취 신청(신청지 : 풍천면 광덕리 1391-45번지) 사례가 있으며 '낙동강 수계 영향에 대한 검토를 한 후 재심의' 하는 것으로 보류되었음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합)○○개발
-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
  - 소재지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일원
- (3) 신청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광덕리 1391-30, 1391-31, 1391-38
- (4) 신청내용 : 골재채취(모래) 후 복토
  - 채취면적 12,783㎡, 채굴깊이 7m

#### 라. 인접지역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 / 2014. 11. 17)

- 하회마을과 약 2km이격되어 경관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없으며, 낙동강 제방 안쪽에 위치하여 강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10m 깊이로 깊게 채취하는 공사이며, 향후 유사신청이 지속적으로 접수될 경우 낙동강 수계에 어떠한 영향일 미칠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

#### 마. 특기사항(검토의견)

- 기 심의된 사례와 같이 낙동강 수계 영향에 대한 검토를 거쳐 재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사. 의결사항

- 보류
  - 공신력있는 기관의 검토를 받은 후 재심의(수계영향)

## 4. 성읍 민속마을 내 단독주택 신축

### 가. 제안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88호 「성읍 민속마을」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중요민속문화재 제188호 성읍 민속마을 내 단독주택 신축이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16년도 제3차 민속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16.6.14)에서 현지조사 후 재심의 하는 것으로 보류되어 재심의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188호 「성읍 민속마을」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일원
- (3) 신청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716번지
- (4) 신청내용 : 단독주택 신축
  - 건축면적 : 109.35㎡(연면적 : 98.54㎡). 높이 : 4.815m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지붕(징크마감), 벽체(제주돌담쌓기, 제주석마감)

###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2016.7.22)

- 성읍 민속마을 지정구역내에(성곽외부)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임
- 문화재구역 내 밭으로서 종합정비계획 보완용역 후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마. 검토의견

- 현지조사 의견과 같이 종합정비계획 보완용역 후 재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사. 의결사항

- 보류
  - 종합정비계획 보완용역후 재검토

## 5. 성읍 민속마을 내 안내판 설치

### 가. 제안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88호 「성읍 민속마을」에 안내판을 설치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중요민속문화재 제188호 성읍 민속마을 내 안내판 설치가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서귀포시 표선면장
-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188호 「성읍 민속마을」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일원
- (3) 신청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778
- (4) 신청내용 : 안내판 설치
  - 규모 : 2900×2300mm
  - 수량 : 1식
  - 재질 : 목재 샌드블라스트 가공
  - 용도 : 표선면 관광지 안내

### 라. 검토의견

- 성읍무형문화재전수관 주차장 도로변에 안내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주변 경관을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마을 디자인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설치토록 함

## 6. 성읍 민속마을 주변 마사 및 창고 신축

### 가. 제안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88호 「성읍 민속마을」 주변에 마사 및 창고를 신축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중요민속문화재 제188호 성읍 민속마을 주변 마사 및 창고신축이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1구역(이격거리 약375m)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16년도 제3차 민속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16.6.14)에서 현지조사 후 재심의 하는 것으로 보류되어 재심의하는 사항임
- \* 1구역(신축불가, 기존 건축물 규모 범위내 개·보수 허용)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188호 「성읍 민속마을」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일원
- (3) 신청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신흥리 1672-4번지
- (4) 신청내용 : 마사 및 창고 신축

| 구 분         | 건축면적                | 구 조             | 최고높이  |
|-------------|---------------------|-----------------|-------|
| A동 (마사)     | 90m <sup>2</sup>    | 블록조, 지붕골패널      | 4.85m |
| B동 (장비보관창고) | 24.5m <sup>2</sup>  | 경량철골구조, 패널 위 싱글 | 4.35m |
| C동 (사료보관창고) | 18m <sup>2</sup>    | 경량철골구조, 패널 위 싱글 | 3.52m |
|             | 132.5m <sup>2</sup> |                 |       |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2016.7.22)**

- 성읍 민속마을 지정구역에서 375m 이격된 지역에 마사(1동) 및 창고(2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 1구역 : 신축불가, 기존 건축물 규모 범위내 개·보수 허용
- 성읍민속마을에서 375m 이격되어 있고 마루선, 조망성 등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성읍민속마을과의 일체성을 고려하여 경사지붕(맞배, 우진각, 팔작지붕 등)으로 변경하여 민속마을과의 조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습지보존을 위해서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 벽체와 지붕 색상은 명·채도가 낮은 색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마. 검토의견**

- 현지조사 의견과 같이 건물 지붕형태를 경사지붕으로 변경하고, 벽체와 지붕색상은 명채도가 낮은 색상으로 하며,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지붕색상은 명·채도가 낮은 색상으로 맞배지붕으로 하고,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토록 함

## 7. 성읍 민속마을 주변 단독주택 신축(이병오)

### 가. 제안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88호 「성읍 민속마을」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중요민속문화재 제188호 성읍 민속마을 주변 단독주택신축이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1구역(이격거리 약258m) 및 4-2구역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 1구역(신축불가, 기존 건축물 규모 범위내 개·보수 허용)
  - \* 4-2구역(평슬라브 신축불가, 경사지붕 7.5m(1층) 이하(공통사항 : 경사지붕은 합각, 우진각, 맞배지붕으로 제한)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188호 「성읍 민속마을」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일원
- (3) 신청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2250-7
- (4) 신청내용 : 단독주택 신축
  - 규모 : 건축면적 100.44㎡, 높이 : 5.65m
  - 구조 : 경량철골조, 아스팔트형글, 샌드위치패널위 시멘트사이딩마감

###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2016.7.22)

- 성읍 민속마을 지정구역에서 258m 이격된 지역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 1구역 : 신축불가 / 4-2구역 : 평슬라브 신축불가, 경사지붕 7.5m(1층) 이하 신축 가능(공통사항 : 경사지붕은 합각, 우진각, 맞배지붕으로 제한)

- 신청지역이 허용기준 4-2구역(경사지붕 7.5m 신축가능) 기준은 충족하나 1구역(신축불가)에 걸쳐있어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한 사항임
- 성읍민속마을에서 258m 이격되어 있고 마루선, 일체성, 조망성 등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마. 검토의견

- 현지조사 의견과 같이 문화재주변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바. 의결사항

- 가결

## 8. 성읍 민속마을 주변 단독주택 신축(윤○○)

### 가. 제안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88호 「성읍 민속마을」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중요민속문화재 제188호 성읍 민속마을 주변 단독주택 신축이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1구역(이격거리 약275m) 및 4-2구역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 1구역(신축불가, 기존 건축물 규모 범위내 개·보수 허용)
  - \* 4-2구역(평슬라브 신축불가, 경사지붕 7.5m(1층) 이하(공통사항 : 경사지붕은 합각, 우진각, 맞배지붕으로 제한)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188호 「성읍 민속마을」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일원
- (3) 신청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2250-7
- (4) 신청내용 : 단독주택 신축
  - 규모 : 건축면적 100.44㎡, 높이 : 5.65m
  - 구조 : 경량철골조, 아스팔트청굴, 샌드위치패널위 시멘트사이딩마감

###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2016.7.22)

- 성읍 민속마을 지정구역에서 275m 이격된 지역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 1구역 : 신축불가 / 4-2구역 : 평슬라브 신축불가, 경사지붕 7.5m(1층) 이하 신축 가능(공통사항 : 경사지붕은 합각, 우진각, 맞배지붕으로 제한)

- 신청지역이 허용기준 4-2구역(경사지붕 7.5m 신축가능) 기준은 충족하나 1구역(신축불가)에 걸쳐있어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한 사항임
- 성읍민속마을에서 275m 이격되어 있고 마루선, 일체성, 조망성 등 역사문화 환경을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마. 검토의견**

- 현지조사 의견과 같이 문화재주변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가결

## 9. 성읍 민속마을 주변 단독주택 신축(정○○)

### 가. 제안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88호 「성읍 민속마을」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중요민속문화재 제188호 성읍 민속마을 주변 단독주택 신축이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4-2구역(이격거리 약340m)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 4-2구역(평슬라브 신축불가, 경사지붕 7.5m(1층) 이하(공통사항 : 경사지붕은 합각, 우진각, 맞배지붕으로 제한)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188호 「성읍 민속마을」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일원
- (3) 신청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2251-6
- (4) 신청내용 : 단독주택 신축
  - 규모 : 건축면적 98.82㎡, 높이 : 5.55m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아연도강판돌출잇기(경사+슬라브), 테라코트마감

###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2016.7.22)

- 성읍 민속마을 지정구역에서 340m 이격된 지역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 4-2구역 : 평슬라브 신축불가, 경사지붕 7.5m(1층) 이하 신축 가능(공통사항 : 경사지붕은 합각, 우진각, 맞배지붕으로 제한)
- 허용기준 높이(경사지붕 7.5m 신축가능) 기준을 충족하나 신청건물은 경사지붕+평슬라브건물로 기준에 맞지 않아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한 사항임

- 현관부분을 슬래브로 하고 양측에 경사지붕을 꾸미는 형식으로서 역사문화 환경을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마. 검토의견**

- 현지조사 의견과 같이 문화재주변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가결

## 10. 성읍 민속마을 주변 단독주택 신축(김○○)

### 가. 제안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88호 「성읍 민속마을」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중요민속문화재 제188호 성읍 민속마을 주변 단독주택 신축이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4-2구역(이격거리 약280m)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 4-2구역(평슬라브 신축불가, 경사지붕 7.5m(1층) 이하(공통사항 : 경사지붕은 합각, 우진각, 맞배지붕으로 제한)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188호 「성읍 민속마을」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일원
- (3) 신청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신흥리 1688-21
- (4) 신청내용 : 단독주택 신축
  - 규모 : 건축면적 98.82㎡, 높이 : 5.55m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아연도강판돌출잇기(경사+슬라브), 테라코트마감

###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2016.7.22)

- 성읍 민속마을 지정구역에서 280m 이격된 지역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 4-2구역 : 평슬라브 신축불가, 경사지붕 7.5m(1층) 이하 신축 가능(공통사항 : 경사지붕은 합각, 우진각, 맞배지붕으로 제한)
- 허용기준 높이(경사지붕 7.5m 신축가능) 기준을 충족하나 신청건물은 경사지붕+평슬라브건물로 기준에 맞지 않아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한 사안임

- 현관부분을 슬래브로 하고 양측에 경사지붕을 꾸미는 형식으로서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마. 검토의견**

- 현지조사 의견과 같이 문화재주변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가결

## 11. 성읍 민속마을 주변 단독주택 신축(이규오)

### 가. 제안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88호 「성읍 민속마을」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중요민속문화재 제188호 성읍 민속마을 주변 단독주택 신축이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4-2구역(이격거리 약140m)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 4-2구역(평슬라브 신축불가, 경사지붕 7.5m(1층) 이하(공통사항 : 경사지붕은 합각, 우진각, 맞배지붕으로 제한)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188호 「성읍 민속마을」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일원
- (3) 신청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신흥리 1688
- (4) 신청내용 : 단독주택 신축
  - 규모 : 건축면적 98.82㎡, 높이 : 5.55m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아연도강판돌출잇기(경사+슬라브), 테라코트마감

###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2016.7.22)

- 성읍 민속마을 지정구역에서 140m 이격된 지역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 4-2구역 : 평슬라브 신축불가, 경사지붕 7.5m(1층) 이하 신축 가능(공통사항 : 경사지붕은 합각, 우진각, 맞배지붕으로 제한)
- 허용기준 높이(경사지붕 7.5m 신축가능) 기준을 충족하나 신청건물은 경사지붕+평슬라브건물로 기준에 맞지 않아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한 사안임

- 현관부분을 슬래브로 하고 양측에 경사지붕을 꾸미는 형식으로서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마. 검토의견**

- 현지조사 의견과 같이 문화재주변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가결

## 12. 성읍 민속마을 주변 단독주택 신축(허ㅇㅇ)

### 가. 제안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88호 「성읍 민속마을」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중요민속문화재 제188호 성읍 민속마을 주변 단독주택 신축이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4-2구역(이격거리 약220m)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 4-2구역(평슬라브 신축불가, 경사지붕 7.5m(1층) 이하(공통사항 : 경사지붕은 합각, 우진각, 맞배지붕으로 제한)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ㅇㅇㅇ
-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188호 「성읍 민속마을」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일원
- (3) 신청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신흥리 1688-20
- (4) 신청내용 : 단독주택 신축
  - 규모 : 건축면적 98.82㎡, 높이 : 5.55m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아연도강판돌출잇기(경사+슬라브), 테라코트마감

###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ㅇㅇㅇ, 전문위원 ㅇㅇㅇ/2016.7.22)

- 성읍 민속마을 지정구역에서 220m 이격된 지역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 4-2구역 : 평슬라브 신축불가, 경사지붕 7.5m(1층) 이하 신축 가능(공통사항 : 경사지붕은 합각, 우진각, 맞배지붕으로 제한)
- 허용기준 높이(경사지붕 7.5m 신축가능) 기준을 충족하나 신청건물은 경사지붕+평슬라브건물로 기준에 맞지 않아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한 사안임

- 현관부분을 슬래브로 하고 양측에 경사지붕을 꾸미는 형식으로서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마. 검토의견**

- 현지조사 의견과 같이 문화재주변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가결

### 13. 영주 무섬마을 주변 상수관로 매설

#### 가. 제안사항

경북 영주시 문수면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278호 「영주 무섬마을」 주변 상수관로 매설을 위하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중요민속문화재 제278호 영주 무섬마을 주변 상수관로 매설이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형상변경 허용기준」 상1구역(이격거리 160m)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 1구역(원형 보존지역)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영주시장
-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278호 「영주 무섬마을」
  - 소재지 : 경북 영주시 문수면 수도리 일원
- (3) 신청위치 : 경북 영주시 문수면 승문리 일원
- (4) 신청내용 : 상수관로 매설
  - 관로 매설(D50 ~ 150), L=2.7Km

####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2016.7.14)

- 영주 무섬마을 지정구역에서 160m 이격된 지역에 상수관로를 매설하고자 하는 내용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 1구역 : 원형보존지역
- 영주 무섬마을 북측 무섬교 건너편 문평로 기존도로 옆에 상수관로를 매설하는 것으로 무섬마을에서 거리가 멀어 조망성과 마루선, 일체성 등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마. 검토의견

- 현지조사 의견과 같이 문화재주변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바. 의결사항

- 가결

## 14. 경주 양동마을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 가. 제안사항

경북 경주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89호 「경주 양동마을」 주변 현상 변경 허용기준 조정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우리청(보존정책과)에서는 현상변경허용기준 제도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합리적 규제방안 마련과 규제순응도 개선, 체계적 심의기준 제공등을 위하여 현상변경 검토기준 마련 연구용역을 시행하였음
- 그에 따라 「경주 양동마을」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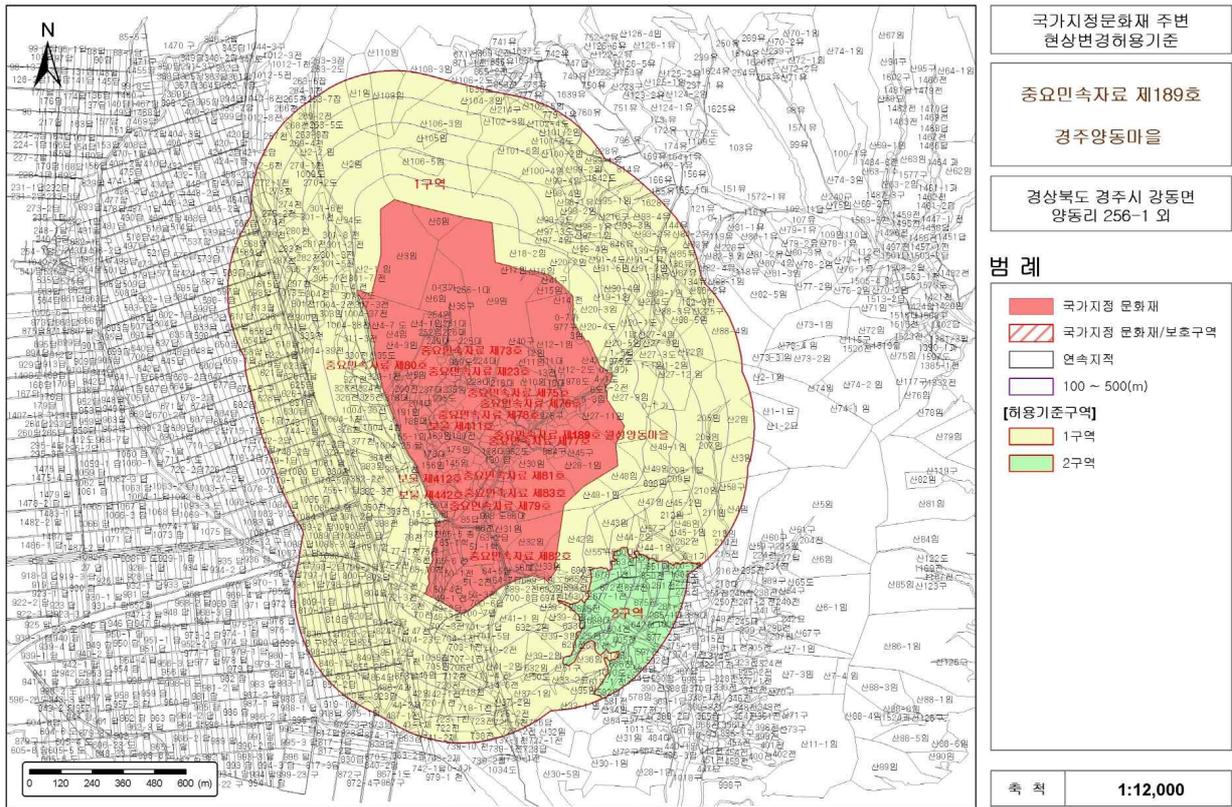
### 다. 주요내용

- (1)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문화재 제189호 「경주 양동마을」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256-1 외
- (3) 검토내용 : 경주 양동마을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 민속마을전통가옥 주요 경관관리지표
    - 장소성(입지여건), 조망성(진입부, 내·외부), 마루선, 일체성

<기 시행중인 현상변경허용기준(제17152호, 2009.12.14(월))>

| 구분  | 허용기준  |            | 비고 |
|-----|---|------------|----|
|     | 평지붕   | 경사지붕(3:10) |    |
| 1구역 | ·원지형 보존지역<br>·기존 건축물 규모 범위 내 개·보수허용   |            |    |
| 2구역 |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    |
| 공통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br>·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1m 이상 성 · 절토 금지<br>·벽체는 미색, 회색, 녹색 계통/지붕은 갈색, 진회색 계통<br>·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            |    |

##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변경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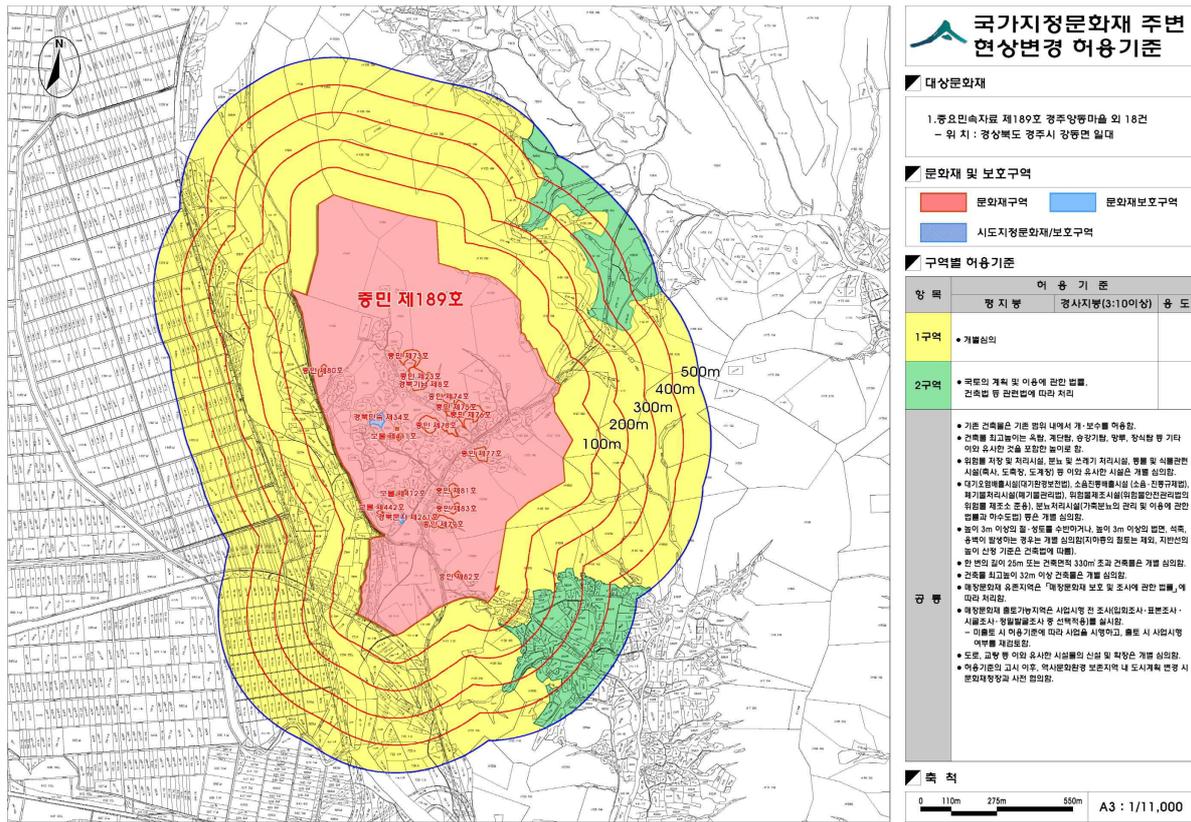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및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현지조사 후 조정안>

| 구분   | 허용기준  |                   | 비고 |
|------|---|-------------------|----|
|      | 평지붕   | 경사지붕(경사각 3:10 이상) |    |
| 제1구역 | ○ 개별심의  |                   |    |
| 제2구역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  |                   |    |
| 공통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li>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li> <li>○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li> </ul> |                   |    |

| 구분 | 허 용 기 준  |                   | 비고 |
|----|--|-------------------|----|
|    | 평지붕  | 경사지붕(경사각 3:10 이상)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m<sup>2</sup>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li> <li>○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li> <li>○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li> <li>○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li> </ul> </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li> <li>○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li> </ul> |                   |    |

<현상변경 허용기준도면 조정안>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 2016.7.13)>

- 허용기준 작성지침에 따라서 공통사항 적용사항 조정, 1구역은 개별심의로 조정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내 개·보수 허용으로 조정
- 안계저수지 공유수면은 2구역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라. 검토의견

- 현지조사 의견과 같이 조정하는 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가결

## 15. 영주 무섬마을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 가. 제안사항

경북 영주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278호 「영주 무섬마을」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우리청(보존정책과)에서는 현상변경허용기준 제도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합리적 규제방안 마련과 규제순응도 개선, 체계적 심의기준 제공등을 위하여 현상변경 검토기준 마련 연구용역을 시행하였음
- 그에 따라 「영주 무섬마을」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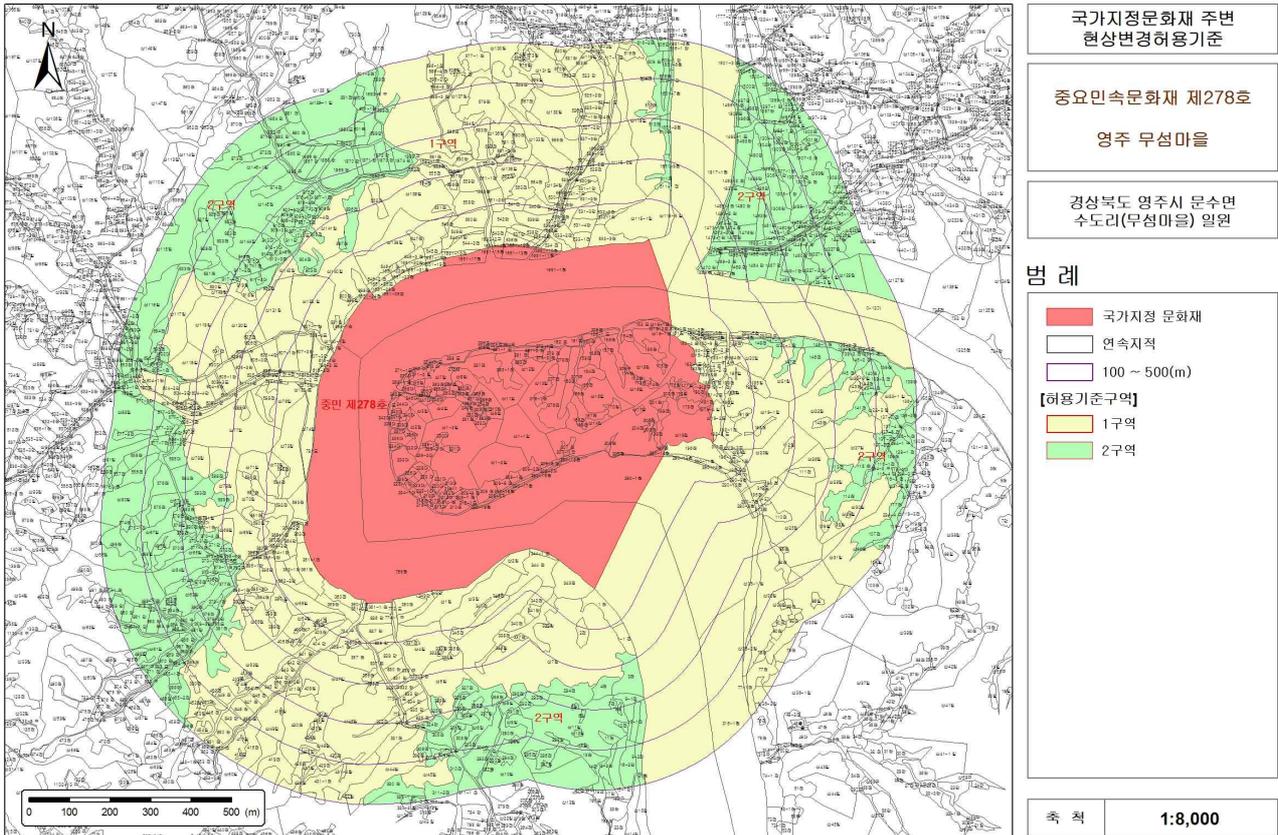
### 다. 주요내용

- (1)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문화재 제278호 「영주 무섬마을」
  - 소재지 : 경북 영주시 문수면 수도리 일원
- (3) 검토내용 : 영주 무섬마을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 민속마을전통가옥 주요 경관관리지표
    - 장소성(입지여건), 조망성(진입부, 내·외부), 마루선, 일체성

<기 시행중인 현상변경허용기준(제18160호, 2013.12.12(목))>

| 구분   | 허용기준   |                   |
|------|--|-------------------|
|      | 평지붕  | 경사지붕 (경사가 3:10이상) |
| 1구역  | ○ 원형 보존지역  |                   |
| 2구역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br>-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                   |
| 공통사항 | ○ 동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 사항임.<br>○ 기존 건축물·시설물은 전통가옥형태에 한하여 재·개축, 보수 허용<br>○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색상 - 진회색, 밤색 등)<br>○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 제한<br>○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로 권장<br>○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외 유사한 것을 포함. |                   |

###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변경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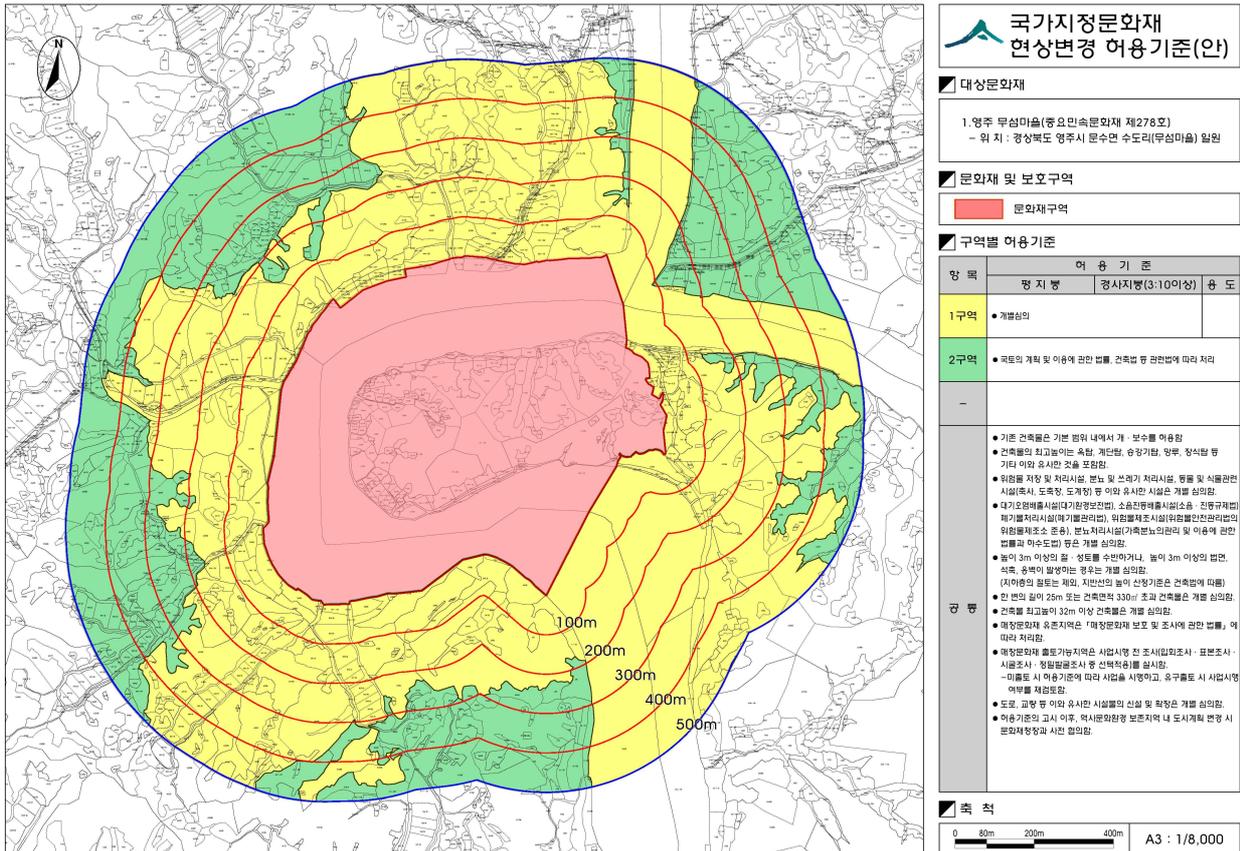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현지조사 후 조정안>

| 구분   | 허용기준   |                   |
|------|--|-------------------|
|      | 평슬라브   | 경사지붕 (경사가 3:10이상) |
| 1구역  | ◦ 개별심의   |                   |
| 2구역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   |                   |
| 공통사항 |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br>◦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br>◦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br>◦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 관한법률과 하수도법)등은 개별 심의함. |                   |

- 높이가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가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가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건축물 최고높이가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 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현상변경 허용기준도면 조정안>



\*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중반이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및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 2016.7.14)>

- 허용기준 작성지침에 따라서 공통사항 적용사항 조정, 1구역은 개별심의로 조정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 개·보수 허용으로 조정
- 마을의 남쪽에 임야의 뒤쪽에 위치하여 조망되지 않는 1구역은 2구역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431-1 지역)

라. 검토의견

- 현지조사 의견과 같이 조정하는 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가결

## 16. 논산 백일헌 종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

### 가. 제안사항

충남 논산시 상월면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273호 「백일헌 종택」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한 사항에 대해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중요민속문화재 제273호 백일헌 종택 주변에 단독주택 건물 신축을 위한 현상변경 신청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의 제1구역(이격거리 약 100m)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 1구역(원지형 보존지역)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273호 「백일헌 종택」
  - 소재지 : 충남 논산시 상월면 주곡리 51번지
- (3) 신청위치 : 충남 논산시 상월면 주곡리 31, 30-2번지
- (4) 추진경과 : '16. 6월 제3차 민속분과 심의 결과 부결
  - 충헌사(충남 유형문화재)에서 직접적인 조망이 이루어지며, 향후 주변지역에 지속적으로 농가주택이 신축될 경우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로 부결
- (5) 신청내용 : 단독주택 신축
  - 부지면적 : 485m<sup>2</sup> / 연면적 : 99.54m<sup>2</sup>
  - 높이 : 5.25m(1층) / 구조 : 벽돌구조, 아스팔트싱글 지붕
  - 소나무 등 나무 식재 차폐 조정
  - \* 사업변경 : 높이(당초 5.8 → 변경 5.25m), 나무 식재 차폐 조정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 전문위원 ○○○, ○○○, ○○○ / 2016.6.29)

- 신청인은 붕괴 우려가 있는 퇴락이 심한 집의 거주자로 불의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어 시급성이 요구됨
- 신청지는 문화재(지방문화재 포함) 전방 시각선상에서 다소 벗어난 곳에 위치한 마을회관 바로 옆으로 신청 설계도서대로 건립하여도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마. 검토의견

- 층헌사에서 조망성을 고려, 건물의 높이를 낮추고, 소나무 등 차폐 수목을 식재하여 변경신청한 사안으로서 조망성, 왜소성, 마루선 등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가결

## 17. 제원 박도수가옥 주변 단독주택 신축

### 가. 제안사항

충북 제천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37호 「박도수가옥」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한 사항에 대해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제원 박도수가옥 주변 단독주택 신축공사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의 제1구역(이격거리 약 167m)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1구역(원지형 보존지역)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137호 「박도수가옥」
  - 소재지 :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구룡리 305번지
- (3) 신청위치 :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구룡리 275-3번지
- (4) 신청내용 : 단독주택신축
  - 규모 : 대지면적 871㎡, 건축면적 108.13㎡, 높이 5.85m
  - 구조 : 경량철골조, 적벽돌 치장쌓기, 경사지붕(칼라아스팔트싱글)

###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 / 2016. 7. 18)

- 가옥 북동방향 능선너머에 위치하는 1층 단독주택으로 전혀 가시되지 않으므로 문화재보존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마. 검토의견

- 신청지는 문화재와 약 167m 떨어져 있으나, 사이에 구룡이 위치하고 있어 현지조사 의견대로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바. 의결사항

- 가결

## 18. 남원 몽심재 주변 도로굴착 및 개선

### 가. 제안사항

전북 남원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49호 「몽심재」 주변 도로굴착 및 개선 사업을 위해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한 사항에 대해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남원 몽심재 주변 마을안길(호곡안길) 정비를 위한 도로굴착 및 개선 공사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의 제3구역(이격거리 약 220m)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3구역(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남원시장
-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149호 「남원 몽심재」
  - 소재지 : 전라북도 남원시 수지면 호곡리 796-3번지
- (3) 신청위치 : 전라북도 남원시 수지면 호곡리 595번지 일원
- (4) 신청내용 : 마을안길 정비·개선 공사
  - 콘크리트 도로개설 B=3m, L=149m

###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 / 2016. 7. 12)

- 문화재와 멀리 이격되어 있고 주택과 임야 등으로 차단되어 조망성, 왜소화, 마루선 등을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몽심재 주변 임야로서 일체성을 감안하고, 당초에 폭 1.5m 내외의 자연 발생 소로가 있었다는 점과 어귀길·안길·셋길 등으로 이어지는 마을 동선의 위계를 고려하여, 도로의 계획 폭 3m(노건 포함 약 3.7m)를 2.5m 정도로 축소하고, 콘크리트 포장을 황토 콘크리트 포장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겠음

### 마. 검토의견

- 현지조사 의견과 같이 도로폭을 3m에서 2.5m 정도로 축소하고 콘크리트 포장은 황토콘크리트 포장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폭을 2.5m 정도로 축소하고 황토콘크리트포장으로 조성후 시행하도록 함

## 19. 청송 송소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심○박)

### 가. 제안사항

경북 청송군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250호 「송소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송소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공사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의 제1구역(이격거리 약 155m)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 1구역(원지형 보존지역)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250호 「송소고택」
  - 소재지 :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덕천리 176번지
- (3) 신청위치 :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덕천리 218번지
- (4) 신청내용 : 단독주택신축
  - 규모 : 높이 6m, 건축면적 73.32㎡
  - 구조 : 철근콘크리트/목구조, 시스템창호, 황토벽마감, 기와지붕(플라스틱)

###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 / 2016. 7. 19)

- 마을 내 1층 주택 재건축으로써 왜소화, 조망성, 마루선 등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전통한옥 마을로 유지하고 있는 마을의 일체성 보존을 위해서 창호(시스템창호)와 벽체(황토벽)를 전통한옥 형태와 어울리게 조정하고 플라스틱 기와는 한식기와(일체형 등)로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마. 수정신청(현지조사 후 도면변경)

- 변경사항(규모는 동일)

: 시스템창호→전통무늬창호, 황토벽마감→회벽마감, 플라스틱기와→한식기와

#### 바. 검토의견

- 현지조사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신청한 설계도서와 같이 시행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사. 참고사항

- 문화재 주변 도지정문화재 현황
  - 초전택(경상북도 민속문화재) : 이격거리 70m
  - 송정고택(경상북도 민속문화재) : 이격거리 205m

#### 아.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조정후 시행

## 20. 청송 송소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심○적)

### 가. 제안사항

경북 청송군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250호 「송소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송소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공사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의 제1구역(이격거리 약 160m)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 1구역(원지형 보존지역)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250호 「송소고택」
  - 소재지 :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덕천리 176번지
- (3) 신청위치 :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덕천리 223번지
- (4) 신청내용 : 단독주택신축
  - 규모 : 높이 6m 건축면적 72.78㎡
  - 구조 : 철근콘크리트/목구조, 시스템창호, 황토벽마감, 기와지붕(플라스틱)

###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 / 2016. 7. 19)

- 마을 내 1층 주택 재건축으로써 왜소화, 조망성, 마루선 등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전통한옥 마을로 유지하고 있는 마을의 일체성 보존을 위해서 창호(시스템창호)와 벽체(황토벽)를 전통한옥 형태와 어울리게 조정하고 플라스틱 기와는 한식기와(일체형 등)로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마. 수정신청(현지조사 후 도면변경)**

- 변경사항(규모는 동일)

: 시스템창호→전통무늬창호, 황토벽마감→회벽마감, 플라스틱기와→한식기와

**바. 검토의견**

- 현지조사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신청한 설계도서와 같이 시행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사. 참고사항**

- 문화재 주변 도지정문화재 현황
  - 초전택(경상북도 민속문화재) : 이격거리 70m
  - 송정고택(경상북도 민속문화재) : 이격거리 205m

**아.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조정후 시행

## 21. 해저 만회고택 주변 빗물펌프장 신축

### 가. 제안사항

경북 봉화군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69호 「해저 만회고택」 주변 빗물펌프장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해저 만회고택 주변 상습 침수지역의 수해 방지를 위해 신청한 빗물펌프장 신축 공사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의 제1구역(1구역 경계로부터 약 20m 이격)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1구역(원지형 보존지역)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봉화군수
-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169호 「해저 만회고택」
  - 소재지 : 경상북도 봉화군 봉황읍 해저리 485번지
- (3) 신청위치 : 경상북도 봉화군 봉황읍 해저리 1118-12번지
- (4) 신청내용 : 빗물펌프장(전기실 포함) 신축
  - 규모
    - 펌프장 : 12.9m(가로)×3.2m(지면으로부터의 높이)
    - 전기실(수배전반/발전기) : 7.7m(가로)×3.5m(높이)
  - 펌프장 형태 : 수문펌프 일체형

###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 / 2016. 7. 28)

- 신청사업은 상습 침수지역의 수해를 방지하기 위한 빗물펌프장을 신설하는 것으로 위치가 마을의 전방 조망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이나 기존의 일반적 펌프장과 달리 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수문펌프 일체형’으로 함에 따라 조망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위원회에서 논의 후 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마. 검토의견

- 현지조사 의견과 같이 위원회에서 논의 후 결정 처리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외관 마감을 보완하도록 함

## 22. 안동 학암고택 주변 오미 한옥집단마을 관광자원 개발사업

###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79호 「안동 학암고택」 주변 탐방로 정비 및 마을입구 봉황문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안동 학암고택 주변에 위치한 오미마을 주변 탐방로 정비 및 마을 진입로에 봉황문 신축을 위해 신청한 공사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의 제1~3구역에 해당하는 심의대상 사업이므로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 1구역(보존지역), 2구역(평지붕 5m, 경사지붕 7.5m), 3구역(건축법 등 관련법 적용)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안동시장
-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179호 「안동 학암고택」
  - 소재지 :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오미리 248번지
- (3) 신청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오미리 일원
- (4) 신청내용 : 봉황문 신축 및 탐방로 정비공사

#### <신청내역>

| 사업명         | 규모(양식)   | 위치                | 필요성   |
|-------------|--|-------------------|---|
| 봉황문<br>신축공사 | 12.49㎡(맞배지붕, 한식<br>기와중와잇기, 막새마감)<br>* 높이(약 8.5m) | 1구역<br>(마을 진입도로)  | '세전서화첩' 등 문헌에 마을 어귀에<br>봉황문이 있었다는 유래를 바탕<br>으로 재건 |
| 탐방로<br>정비공사 | L=3.6km, W=1.5m                                  | 2,3구역<br>(오미리 일원) | 기존 탐방로를 안전상 이유로<br>재정비                            |

#### 라. 검토의견

- 1구역에 해당하는 오리마을 주 진입로에 신축하려는 봉황문은 유래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으나, 확실한 건립에 관한 기록은 불분명함. 이에 추후 현지조사 후 재심의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바. 참고사항

- 문화재 주변 도지정문화재 현황
  - 안동 허백당(중요민속문화재 284호)
  - 안동 삼벽당(경상북도 민속문화재)
  - 안동풍산김씨영감댁(경상북도 민속문화재)
  - 안동 오미동 도림강당(경상북도 유형문화재)
  - 안동 죽암서실(경상북도 민속문화재)

#### 사.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 23. 청도 운강고택 및 만화정 주변 생태탐방로 조성

### 가. 제안사항

경북 청도군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06호 「청도 운강고택 및 만화정」 주변 생태탐방로(징검다리 데크로드 쉼터 등) 조성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청도 운강고택 및 만화정 주변에 위치한 동창천에 생태탐방로(징검다리 데크로드 쉼터 등) 조성 요청 공사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의 제2구역(1구역인 동창천에 바로 연접)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 2구역(평슬라브 신축불가, 경사지붕 7.5m 이하)
  - \* 공통사항(동창천은 중요 조망지역으로 건축제한)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청도군수
-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109호 「운강고택 및 만화정」
  - 소재지 :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신지리 269-1 외
- (3) 신청위치 :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신지리 1637 일원
- (4) 신청내용 : 동창천(1구역)에 연접한 시설물 신축(11동)

<시설물 세부내역(11동)>

| 시설명      | 규모                          | 시설명   | 규모                    |
|----------|-----------------------------|---|-----------------------|
| 징검다리     | L=159.2m                    | 소나무숲 정비                                       | A=5,138m <sup>2</sup> |
| 자연석 의자   | A=140m <sup>2</sup>         | 데크탐방로   | L=373                 |
| 전망대 벤치   | A=34m <sup>2</sup>          | 화단조성  | A=386m <sup>2</sup>   |
| 데크탐방로    | B=2m, L=30m                 | 주차공간 조성                                       | A=167m <sup>2</sup>   |
| 미끄럼 방지포장 | L=77, A=180.5m <sup>2</sup> | 야자매트탐방로                                       | B=1.5m, L=64.7m       |
| 철평석탐방로   | B=1.5m, A=60m <sup>2</sup>  | * 당초 사업에 포함된 시설물(총 13동) 중 국가지정 문화재 연접 시설물 11동 |                       |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 / 2016. 8. 1)**

- 신청한 사업은 ‘싱그린 1530 건강 쉼마리 걷기 코스’ 사업에 필요한 시설들로 금천교 하부 데크가 만화정의 전방 조망에 일부 눈에 띄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단, 탐방로 옆 화단설치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마. 검토의견**

- 현지조사 의견과 같이 탐방로 옆 화단설치는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바. 참고사항**

- 문화재 주변 도지정문화재 현황
  - 선암선원(경상북도 민속문화재)
  - 선암고택(경상북도 민속문화재)
  - 도일고택(경상북도 민속문화재)
  - 명중고택(경상북도 민속문화재)
  - 운남고택(경상북도 민속문화재)

**사.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화단 조성

## 24. 함양 일두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

### 가. 제안사항

경남 함양군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86호 「함양 일두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일두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공사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의 제1구역(이격거리 약 20m)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1구역(원지형 보존지역)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186호 「함양일두고택」
  - 소재지 :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 개평리 262-1번지
- (3) 신청위치 :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 개평리 263-4번지
- (4) 신청내용 : 단독주택신축(재건축)
  - 규모 : 높이 6.5m 건축면적 48.86㎡
  - 구조 : 일반목구조, 알루미늄 창호, 한식시멘트 기와

###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 / 2016. 7. 26)

- 일두고택에서 20m 이격된 1구역(원지형보존) 기존 가옥 내에서 기와집이 노후·훼손되어 철거 후 재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전통한옥 형태로 신축하는 사항으로서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일체성을 고려하여 알루미늄 창호를 전통창호 형태로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마. 검토의견

- 의견과 같이 현지조사 의견대로 알루미늄 창호를 전통창호 형태로 변경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아.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알루미늄창호는 전통창호 형태로 조정

## 25. 청원 이항희 가옥 주변 자재창고 및 단독주택 신축

### 가. 제안사항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33호 청원 이항희 가옥 주변 근린생활시설(자재창고) 및 단독주택신축공사를 위해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한 사항에 대해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청원 이항희 가옥 주변 근린생활시설(창고)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위한 현상변경 신청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의 제1구역(이격거리 약 250m)으로 심의대상 사업이므로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한 것임  
\* 1구역(원지형 보존지역)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133호 「청원 이항희 가옥」  
○ 소재지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고은리 190-1번지
- (3) 신청위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고은리 208-2, 208-9번지
- (4) 신청경과  
○ '16.2.16 심의(단독주택) : 높이 8.9m(2층), 건축면적 100.82㎡  
(역사문화경관 저해로 부결)
- 금회신청(자재창고 및 단독주택)
- (5) 신청내용

| 구 분              | 건축면적                     | 구 조                            | 최고높이     |
|------------------|--------------------------|--------------------------------|----------|
| 근린생활시설<br>(자재창고) | 97.51㎡                   | 철골구조, 경사지붕(점토기와),<br>적벽돌 치장 쌓기 | 5.4m(1층) |
| 단독주택             | 114.29㎡<br>*연면적(193.52㎡) | 철근콘크리트, 경사지붕(점토기와),<br>칼라몰탈마감  | 7.2m(2층) |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 / 2016.7.29)

- 근린생활시설(1층 창고) : 고은리 208-2
  - 대상지는 문화재와 25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문화재와의 사이에 산이 있어 보이지 않음. 경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6.9m까지 보이지 않으나 신청대상 건물은 5.4m 이므로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을 것임
  - 따라서, 거리가 있고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는 등 거의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단독주택(2층) : 고은리 208-9
  - 대상지는 문화재와 250m 거리에 위치하고 문화재와의 사이에 산이 있어 보이지 않음
  - 경관 시뮬레이션에서 10.1m 까지는 보이지 않으나, 해당 건물은 7.2m이므로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마. 검토의견

- 현지조사 의견과 같이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바. 참고사항

- 동일 지번과 관련한 사업에 대한 현상변경 신청 경과사항

| 구 분  | 신청내용                                  |   |
|------|---------------------------------------|---|
| 심의일자 | '11.06.13                             | '12.4.2                                 |
| 사업내용 | 단독주택 10동, 지상1층                        | 단독주택 10동, 지상2층                          |
| 건축면적 | 997.20㎡(99.72㎡×10동)                   | 764.10㎡(76.41㎡×10동)                     |
| 연면적  | 997.20㎡(99.72㎡×10동)                   | 1,151.7㎡(1층 76.41㎡×10동 / 2층 38.76㎡×10동) |
| 건물높이 | 1층 5m                                 | 2층 8.65m                                |
| 심의결과 | 조건부 허가                                | 부결                                      |
|      | ※ 보완 제출된 설계도면대로 시행하되, 기 허가조건을 준수하도록 함 | ※ 문화재 전면 경관 저해                          |

사. 의결사항

- 가결

## 26. 부안 동문안 당산 보호구역 내 시설물 증축

### 가. 제안사항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9호 「부안 동문안 당산」 보호구역 내 기존 소매점 일부를 철거하고 기계식 세차장을 설치하고자 현상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중요민속문화재 제19호 「부안 동문안 당산」 보호구역 내 기존 소매점 일부를 철거하고 기계식 세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문화재 관리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19호 「부안 동문안 당산」
  - 소재지 : 전북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 387-5번지 외
- (3) 신청위치 : 전북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 386-3(문화재보호구역 내)
- (4) 신청내용 : 기존 소매점을 일부 철거 후 기계식 세차장 설치
  - 기존 시설물(기존 1동) 면적/높이 : 48.18㎡/약 3.7m
  - 변경 시설물(기존 1동) 면적/높이 : 82.80㎡(증 34.62㎡)/4.0m

###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 충남역사문화연구원 팀장 민정희 / 2016.7.29.)

- 본 신청 건은 「부안 동문안 당산」 문화재보호구역 내 기존 소매점을 일부 철거하고 기계식 세차장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면적이 일부 증가되지만 당산과 사업대상 부지가 담장 등으로 차폐되어 있고, 증축되는 시설물 높이가 기존 시설물과 비슷하므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기계식 세차장 색상(벽체 및 지붕 등)을 무채색 계열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마. 검토의견

- 현지조사 의견과 같이 벽체 및 지붕을 무채색 계열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벽체 및 지붕을 무채색 계열로 조정

# 검 토 사 항

## 27.안동 하회마을 지정구역 조정

###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풍천면 소재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 지정구역 조정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 지정구역 조정이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16년도 제1차 합동분과 문화재위원회('16.2.16.)검토 후 지정예(2016.3.10.~4.10.)를 하였는데,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016.4.1) 및 2016년도 제2차 합동분과 문화재위원회('16.4.12.)에서 “하회마을 강변길 안쪽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세계문화유산 보존관리와 역사성 보호를 위하여 하회마을 지정구역으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경주시에 서 이를 반영한 지정구역 조정안을 제출함('16.5.2)
- 안동시에서 제출한 조정안을 2016년도 제3차 민속분과 문화재위원회('16.6.14)에서 검토 결과 “강변길 바깥측 확대부분에 대한 확인을 한 후 재검토”토록 보류되어 이를 재검토한 지정구역 조정안을 제출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안동시장
-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
  - 소재지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일원
- (3) 신청내용 : 중요민속문화재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 문화재지정구역 변경
  - 당초 1,343필지 7,200,660㎡, ⇒ 변경 1,577필지, 6,495,535㎡(감 705,125㎡)
  - 주요내용
    - 해제 : 광덕교 하류, 하회삼거리, 인금리 지역
    - 추가지정 : 하회마을 입구 주차장 지역, 하회마을 강변길 안쪽

## 라. 안동시 의견

- 안동 하회마을의 문화재구역 설정은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병산리, 임금리, 광덕리 일원의 1,343필지 7,200,660㎡를 지정하였음
- 하회삼거리 일원과 광덕리, 임금리의 일부 지역은 문화재의 경관보호 및 낙동강의 하상 변경에 큰 영향이 없는 지역이나 당초에 문화재구역으로 설정되어 지역 주민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음
- 이에 문화재와 주변 현황에 타당하도록 문화재구역을 조정하여 문화재보호와 사유재산 보호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 마. 관계전문가 의견

### (1) 민속분과 위원 ○○○, ○○○, ○○○ / 2015.3.11 현지조사

- 문화재지정구역 신청안 중, 중리삼거리, 광덕교 하류, 임금리지역 축소 및 마을입구 관리사무소 주변 추가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나머지 조정안은 현재 지정구역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지정구역 조정에 따라 재조정하여 검토하도록 함
- ※ 2015년 4월 민속분과 문화재위원회 회의 시 ‘현지조사 의견에 따라 시행 하되, 세계문화유산분과 검토 후 시행토록’ 조건부가결‘됨

### (2) 세계유산분과 위원 ○○○, ○○○ / 2015.10.2. 현지조사

- ‘인금지 지역’은 기 지정구역을 보존하되, 임금리 민가와 의 거리 관계를 고려하여 경계선을 조정토록 함
- ‘마을 입구 주차장’ 추가 지정 시 마을 역사를 설명하는 비석 등 기념물까지 지정구역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병산삼거리’구역까지 확대가 필요함
- ‘하회삼거리’지역을 해제 시 그에 따른 하회삼거리 주변 신축 가능한 건물 높이나 규모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광덕교 하류’지역 해제는 이견 없음
- 기타 지역은 기 지정구역을 보존토록 함

### (3) 세계유산분과 위원 ○○○ / 2015.12.15. 자문

- ‘하회마을 지정구역 조정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함
  - 1차 현장조사 안으로 제시한 붉은선에서 병산삼거리 포함 구역을 제외시키고
  - 안동시에서 제안한 푸른선에서 고개마루(225-3전) 정상을 경계로 하고
  - 고개마루와 하회마을 사이 구역은 1차 현장조사 시 제시한 붉은선으로 할 것을 권함
  - 고개마루의 경계선은 도로와 직교되는 선으로 조정하도록 함

- 하회(중리)삼거리 지정구역 해제여부는 지정 당시 자료를 확인한 후 추후 결정하도록 함

**(4) 제2차 합동분과 문화재위원회 / 2016.4.12.**

- 하회마을 강변길 안쪽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세계문화유산 보존관리와 역사성 보호를 위하여 하회마을 지정구역으로 확대가 필요

**(5) 제3차 민속분과 문화재위원회 / 2016.6.14.**

- 강변길 바깥측 확대부분에 대한 확인을 한 후 재검토토록 함

**바. 검토의견**

- 제2차 합동분과 및 제3차 민속분과 문화재위원회 의견에 따라 수정한 내용과 같이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 안동시에서 추가로 요청한 강변 바깥측 문화재구역 확대부분은 현지조사 의견을 잘못 이해하여 추가된 것으로서 금회 조정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재제출하였음

**바. 의결사항**

- 가결

## 28. 안동 보백당 종택 지정 검토

###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소재 「안동 보백당 종택」 국가지정 문화재(중요 민속문화재) 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소재 경상북도 민속문화재 제19호 「안동 보백당 종택」을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로 승격 지정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경상북도지사(안동시장)
- (2) 대상문화재 : 안동 안동김씨 정헌공파 종택(安東 安東金氏 定獻公派 宗宅)
  - 소재지 :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충효로 1736-3(목계리 704)외 1
  - 소유자 : 김해동 외 3인
  - 수량 : 일괄(건물 4동, 토지 2,879㎡<2필지>)
    - 건축물 지정 : 4동

| 명칭        | 시대        | 구조/형식/형태 | 크기/수량                   | 소유자     |          |
|-----------|-----------|----------|-------------------------|---------|----------|
| 안동 보백당 종택 | 본채 (용계당)  | 조선시대     | 목구조 5량가, 정면6칸×측면6칸, ㄱ자형 | 257.83㎡ | 김해동 외 1인 |
|           | 사랑채 (보백당) | 대한제국     | 목구조 5량가, 정면3칸×측면2칸, -자형 | 33.60㎡  |          |
|           | 대문채       | 조선시대     | 목구조 3량가, 정면6칸×측면1칸, -자형 | 39.00㎡  |          |
|           | 사당        | 조선시대     | 목구조 3량가, 정면3칸×측면2칸, -자형 | 19.53㎡  |          |
| 계         |           |          | 349.96㎡                 |         |          |

- 토지 지정 면적 : 2,879㎡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  | 지정(㎡)  | 소유자     |
|----------------|-----|----|--------|--------|---------|
| 경북 안동시 길안면 목계리 | 704 | 대  | 2,879㎡ | 2,039㎡ | 김승한 외1인 |
| 경북 안동시 길안면 목계리 | 705 | 대  | 840㎡   | 840    |         |
| 계              |     |    | 3,719㎡ | 2,879㎡ |         |

라. 지정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불임1 참조

<○○○ 문화재위원> : 지정가치 있음

- 종택은 18세기 후반 이웃 마을에서 이 건한 후 한국전쟁 때 몸채가 소실되고 별당만 남은 것을 5년 뒤 중건하였다. 현재 몸채 건물이 안동 지역 사대부가의 전형적인 배치 및 평면형식 등이 유사한 것으로 보아 중건 당시에 소실 이전의 모습을 복원 하고자하는 의지로 옛 모습 그대로 살려 지은 것이라 생각된다.
- 주된 기능이 제청인 별당형 사랑채(보백당)는 소박하고 담백한 모습이지만 그 위상을 위하여 건물 전반에 담은 예지와 공역에 기울인 깊은 정성을 엿보게 하는 종가의 상징적 건물이다. 또한 명당 풍수형국의 입지환경이 대부분 그대로 남아 있고 신(新) 안동 김씨 일문이 이룬 역사문화 환경이 살아 있는 특별한 장소성은 고유한 문화적 특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 비록 몸채가 특수한 시대적 배경으로 후대에 중건하였지만 앞선 시기의 이 지역 건물에 비추어 볼 때 크게 뒤떨어지지 않으며, 특히 별당형 사랑채는 김계행의 청백리가 녹아든 격조 있는 건물이다.
- 따라서 몸채가 건축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안동지역의 역사문화적 성격을 살펴 볼 수 있는 사대부의 주거건축 정채와 지역적 특성을 비교적 잘 보여주고 있으므로 중요민속문화재의 중요한 가치 기준인 민속적 의미가 크다면 지정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 문화재위원> : 위원회 검토 필요

- 현재 터에 종택이 자리 잡은 것은 김계행의 15대손인 김학규(金學圭, 1852-1922)이다. 종손이 묵계리와 이웃한 길안면 고란리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아마 김계행 이후 어느 시기에 종택이 고란리로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 종손 김학규가 고란리에서 다시 묵계리로 옮기 시기는 정확하지 않으나, 그의 부친 김병주(1883-1880)가 묵계에서 별세했다는 것으로 보아 김학규의 연령, 김병주의 사망 시기 등을 추정해 보면 대체로 1880년대 이후로 보인다. 그리고 보백당은 1906년 건립하였고, 1916년 경 중수한 것이다. 보백당은 제청(祭廳)으로도 사용되어 건립 당시에는 마루에 감실(龕室)이 있었다. 즉, 현재 사당은 1994년에 건립된 것이다. 안채는 한국전쟁(6. 25 전쟁)에 모두 소실되어 다시 지은 것이다.

- 종택을 비롯한 집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집의 건립 연대와 시대적인 특성 등이다. 이러한 것이 전제되면 그 집에서 전승되는 생활문화 자료들이 얼마나 역사성과 학술성을 갖추었는지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안동김씨 정헌공파 종택은 가장 오래된 보백당이 1906년이고, 안채는 한국전쟁으로 소실되어 새로 지은 것이다. 여기에는 한국전쟁 이후 새로 지은 건물이 어느 정도 전통성을 갖고 복원되었는지도 하나의 검토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안동김씨 정헌공파 종택에서 전승하는 민속학적인 자료나 의례로서 중요시 여기는 것은 김계행의 불천위 제사이다. 김계행(金係行, 1431-1517, 호 보백당, 시호 정헌공)은 사후 351년만인 1868(고종 3)년 정헌공이라는 시호를 받고, 392년만인 1909(순종 3)년에 불천위 교지를 받아 국불천위가 되었다. 현재 불천위 제사는 종택에서 문중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비교적 전통적이 방식으로 올리고 있다. 이외에 혼례나 상례와 관련 유물이나, 문헌, 문서 등이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다. 조상들이 사용한 생활문화 유품들도 확인되지 않았다.
- 전적을 비롯한 고문서는 993점이 안동 국학진흥원 기탁되어 있지만, 이 자료들에서도 종택의 전승 생활사를 볼 수 있는 자료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종택이나 문중에서는 대체적으로 김계행에 대한 기록인의 『보백당선생실기(寶白堂先生實紀)』를 통하여 그들의 정체성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김계행의 유훈 “吾家無寶物 寶物惟清白(우리 집에 보물이 없으니 보물이 있다면 오직 청백뿐)”은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 안동김씨 정헌공파 종택의 국가민속문화재로서 가치는 일차적으로 집의 건립연대와 복원 과정에 대한 논의 있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필요한 역사성, 학술성의 조건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 문화재전문위원> : 지정가치 있음

- ‘안동김씨 정헌공파 종택’은 보백당 김계행의 종택으로 본채와 별당건물인 보백당 모두 건축사적인 관점에서 역사성은 다소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500년 동안의 오랜 세월 속에서 이건과 중건을 반복하면서 그 맥을 이어왔던 측면에서 그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 특히, 보백당의 가치는 『보백당중건상량문(寶白堂重建上樑文)』에 함축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보백당 김계행의 유훈인 “吾家無寶物 寶物惟清白(우리집에 보물이 없으니 보물이 있다면 오직 청백뿐)”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또한, 보백당 김계행의 불천위제사는 김계행의 사후 392년이 되는 1909년(융희3)에 대한제국 궁내부에서 불천위를 인정한 마지막 국불천위로서 비록 시기적으로는 늦지만 그 의미는 종택의 민속학적 관점에서 중요한 사료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 마. 참고사항(안동시 의견)

- 정헌공파 종택은 보백당 김계행이 만년에 목계리에 이주한 종택으로, 소산마을의 큰 종가인 비안공 구택(김삼근 : 김계행의 부)과 더불어 안동김씨 비안공파 문중의 세거지 중 하나로 조선시대 향촌사회 동향과 연계망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가치가 큼.
- 김계행은 조선 초기의 문신으로 남긴 글과 행적에 관한 내용은 보백당 실기(寶白堂 實記), 긍암집(肯庵集), 범암집(汎庵集) 등에 기록되어 역사상 뚜렷한 족적을 남겼으며, 1868년(고종 5)에 추증된 시호교지와 1909년(융희 3)에 받은 불조전 칙명(不祧典 勅命)은 인문·역사적 가치가 깊음
- 정헌공파 종택의 본채는 안동지방의 전형적인 口자형 평면구조를 가지되 사랑영역이 돌출되는 특징을 나타냅니다. 별동형 사랑채인 보백당은 제청의 역할을 엿볼 수 있으며, 사당과 함께 안동지방의 제례문화 전통을 이어가는 자료로서 가치가 있기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필요함

#### 바. 검토의견

- 현지조사 의견을 참조하여 위원회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국가지정으로 할 경우, 명칭은 “안동 보백당 종택(安東 寶白堂 宗宅)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영문표기 : Bobaekdang Head House, Andong

#### 사. 의결사항

- 보류
  - 민속적 자료, 기록 등 보완후 재검토

##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 보고서

### 안동 안동김씨 정헌공파 종택 조사 보고서

1. 조사자 : ○○○, 한국건축사, 경북대학교 교수
2. 문화재 종류 : 중요민속문화재
3. 문화재 명칭 : 안동 안동김씨 정헌공파 종택(安東 安東金氏 定獻公派宗宅)

#### 4. 입지환경과 문화재 현황

- 안동김씨 정헌공파종택<sup>1)</sup>은 보백당(寶白堂) 김계행(金係行, 1431 ~ 1517)<sup>2)</sup>의 종가이다. 안동에서 영천 방면 국도를 따라 길안면 소재지를 지나 5km 정도가다 보면 만나는 목계<sup>3)</sup>1리에 위치하고 있다. 목계1리<sup>4)</sup>는 선항리(仙巷里, 서낭대이), 상리(上里), 하리(下里, 안룻마), 새마을, 구만(九滿, 구미넛골)라 불리는 5개의 작은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종택은 선항리 마을의 서편 산기슭에 남서향으로 앉아 있다. 원래 상리마을에 있던 종택이 전소되어 1700년대 말쯤 고란리<sup>5)</sup>로 옮겨다가 15대 종손 난포(蘭圃) 김학규(金學圭, 1852 ~ 1922)가 목계서원 원장의 권유<sup>6)</sup>에 따라 다시 지금 자리로 옮겨왔다.
- 선항리는 목계1리 중에서 입지공간이 비교적 잘 보존되고 있는 마을이다. 마을을 감싸고 있는 주산 현무봉과 좌청룡·우백호의 사격은 종택의 혈치를 보호하는 장풍역할을 하고 있다. 득수형국은 길안천이 들판을 감싸면서 궁수를 이루어 동출서류(東出西流) 형태로 흐르고 있으므로 길수이다. 천이 들판을 감싸듯이 환포하면서 흘러나가기 때문에 홍수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또한 내룡맥<sup>7)</sup>에 의지한 종택의 전저후고(前低後高) 정주공간은 배수와 농업용수의 조달이 쉽게 이루어지는 입지공간을 이루게 된다. 따라서 종택은 주산의 내룡맥과 길안천이 어우러진 음래양수(陰來陽授)의 혈장을 이룬 ‘장풍득수명당’

1) 경상북도 민속문화재 제19호(1980년 지정). 인근의 목계서원과 함께 지정되었음.

2) 충주향교 교수 임기를 마치고 풍산으로 돌아온 후 과거에 급제하여 사헌부감찰에 제수되었다가 고령 현감으로 2년 정도 부임함. 풍산과 목계를 왕래하다가 71세 때 목계에서 살기 시작함.

3) 원래 거묵역(居墨驛)으로 불리던 마을로 1500년(연산군 6)에 보백당이 무오사화(1498년)를 피해 머물면서 묵촌(默村)으로 개칭하였다가 송암폭포(松岩瀑布) 위에 만휴정(晩休亭)을 짓고 앞으로 흐르는 냇물이 잔잔히 흐르는 모습을 보고 다시 목계(默溪)라 이름 했다고 함.

4) 목계는 안동김씨 집성촌으로 현재 80여 가구 가운데 40여 가구가 안동김씨이며, 대부분 목계 1리 선항에 모여 살고 있음.

5) 현재 위치에서 동남쪽으로 2km 정도 떨어진 마을.

6) “그대는 명현의 종손으로 대를 이어왔는데 지금 종가의 위치는 매우 궁벽하니 목계의 서원 곁으로 옮기는 것이 더 좋겠네, 옮기면서 문호를 조금 넓히면 그 선사(先祠)를 추존하고 보위함과 빈객들을 응접하는 것 둘 다 편안할 수 있을 것 일세”라고 설명했다고 함.

7) 청룡은 관직과 명예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러한 입지는 높은 기개와 청렴한 선비가 배출되는 형국으로 봄.

입지형국으로 500여 년 동안 가문이 이어져 오고 있다.

- 종택 주변 1km 내외 거리에 일문의 역사문화환경을 살펴 볼 수 있는 여러 문화유산들이 자리 잡고 있다. 500m 정도 떨어진 동편에는 목계서원<sup>8)</sup>이, 길안천 건너편 남쪽에는 안동 만휴정(晩休亭)<sup>9)</sup>과 만휴정 원림(園林)<sup>10)</sup>이 있다. 이외에도 동편의 마을에 목계리 당집, 선항서당(仙巷書堂)<sup>11)</sup>이 있으며, 마을에서 동남쪽의 길안천 너머 멀리에는 조상들의 묘제를 지내기 위한 재실인 달수재(達壽齋) 등이 있다.
- 이처럼 소산에 뿌리를 내리고 터전을 다진 新(또는 後) 안동 김씨 문중<sup>12)</sup>의 김계행과 그 후손들이 목계리에 또 하나의 역사문화환경을 이루었다.

## 5. 연혁 유래 및 특징

- 처음 지은 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5대 종손 난포(蘭圃) 김학규(金學圭, 1852~1922)가 1880년대에 지금의 위치로 이진한 것으로 추정된다. 보백당은 「난포공행장」에 의하면 1906년(광무 10)에 건립하고 10년 뒤에 중수했음을 알 수 있다.
- 한편 1906년에 지은 ‘보백당’<sup>13)</sup> 당호는 김계행이 혼란한 정사를 피해 고향으로 돌아와 1498년(68세)에 만휴정을 건립하기에 앞서 풍산 사제<sup>14)</sup>의 집 곁에 정자를 짓고 명명한 것으로 역사적 연원은 깊다.
- 몸채는 1953년 한국전쟁 때 소실된 것을 1957~58년에 중건하였으며, 사당은 불천위 교지를 받은 다음해인 1909년에 건립하고 1994년에 중수하여 오늘날까지 온전히 잘 보존하고 있다.

### ○ 배치

- 종택은 주된 좌향을 서향으로 한 장방형 대지에 대문채, 몸채, 사당, 별당(보백당), 헛간채 등이 자리 잡고 있다. 도로변에서 경사진 길을 올라가면 솟을대문채 좌측에 이 집 역사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200년쯤 된 상수리나무 한 그루가 서있다.
- 종택 전망 아래에는 길안천이 들판을 감싸 돌면서 흐르고 그 너머로는 줄지은 산들이 바라보이는 높은 지대에 앉아 있어서 부감 조망성이 아주 뛰어나다. 대문채를 들어서면 맞은편에 사랑채와 안채가 완전口자형을 이룬 몸채의 사랑채가 보인다. 대문채와 사랑채 사이에는 꽤 넓은 마당과 정원이 조성되어 있다. 이 마당 좌측에는 별당인 보백당이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몸채 좌측에 사당이 별곽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백당 뒤편

8) 지방유림의 공의로 김계행(金係行)과 응계(凝溪) 옥고(玉沽, 1382~1436)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1687년(숙종 13) 창건, 1869년(고종 6) 훼손, 1925년 복원.

9)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173호(1986년 지정), 만휴는 ‘느지막이 설 곳’이라는 뜻으로 김계행이 말년에 독서와 사색을 위해 지음.

10) 명승 제82호(2011년 지정). 만휴정 주변의 송암폭포, 계류, 산림경관 등이 조화를 이루는 명승지임.

11) 김계행의 9세손인 김학(金潯)이 후학 양성을 위해 지음.

12) 김계행의 시조는 고려 태조 때 공신 김선평(金宣平, 901~?)으로 김은열(金殷說, 신라 경순왕의 4子)의 둘째 아들 김숙승(金叔承)을 시조로 하는 안동 김씨 계열과 구분하기 위해 新(또는 後) 안동 김씨라 했다고 함.

13) ‘우리 집에 보물이란 없다. 있다면 오직 청백뿐’(吾家無寶物, 寶物惟清白)이라는 의미가 담긴 보백당은 김계행이 남긴 유훈으로 지금까지 지켜온 유무형의 모든 전통 자산에 스며들어 살아 숨쉬고 있음.

14) 안동시 풍산읍 소산리의 옛 지명임.

좌측 모서리에는 헛간채가 놓여 있다. 몸채의 좌측 사당 담장과 우측 담장 사이에 내외담을 시설하였는데, 좌측 담에는 협문을 내었다. 내외담과 사랑채와 안채의 공간 영역을 뚜렷하게 구분한 내외담의 남녀 분리와 사당의 독립적 영역은 성리학적 생활규범에 따라 공간 구분이 엄격하게 이루어진 18세기 전후의 배치 유형을 잘 보여주고 있다.

- 한편 좌측 담장 밖에 담장 따라 길게 늘어선 수목들은 주택에서는 아주 드문 풍광으로 높은 지대 북쪽의 삭풍을 막기 위한 방풍림으로 비보 역할을 한다.
- 보백당은 중건 상량문<sup>15)</sup>에서 알 수 있듯이 제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한 별동형의 사랑채이다. 제례 행례와 관례가 이루어지는 건물은 재·당 등으로 불리어진다. 별동형 사랑채가 많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는 주자가례의 내용이 권위를 갖게 되고 생활상에 영향을 미치면서 사당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던 17세기 중반 이후부터이다. <sup>16)</sup> 이런 별동형 사랑채는 집안의 다른 어떤 건물보다 위세있고 격식 높은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배치상으로는 제사지내는 사당과 동선상으로 쉽게 연결되도록 하면서 외부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맞이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졌다. 이에 따라 대부분 몸채 사랑영역과 사당이 시각적으로 연계성을 갖는 유기적 공간구성을 이루게 된다. 이 종택의 배치형태도 성리학적 규범에 따른 배치유형을 잘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 몸 채

- 몸채는 완전口자형으로 사랑채와 우익사 사이의 우측부에 중문간이 나있다. 완전 口자형은 안동을 중심으로 한 경북북부지역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바 뚜렷한 지역성으로 알려져 있다. 몸채 정면 좌측에 사랑영역이 크게 자리 잡고 그 뒤편에 본채와 양익사로 이루어진 안채가 안마당을 冂형으로 감싸고 있다.
- 본채는 겹집으로 가운데 2칸 안방을 두고 안방의 좌측으로는 각각 1칸씩의 부엌·정지방, 우측으로는 1칸 안대청과 1칸씩의 상방(작은방)과 마루방을 각기 앞뒤로 배열하였다. 정지방 앞으로는 1칸 통래간과 각각 1칸씩의 고방 2개소가 연이어져 좌익사, 상방 앞으로는 1칸 부엌·3칸 동사랑방이 중문까지 뻗어서 우익사를 이루고 있다.
- 안방 앞에는 툇마루가 있고 그 좌측단부에는 조그마한 벽장이 있다. 안마당을 향하여 좌우로 길게 배열하고 툇마루를 둔 안방과 안대청의 형식은 안동을 비롯한 영남지역에서 많이 찾아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안방은 좌우로 구분하여 우측은 옷방으로 사용하고 그 뒤편에 별실을 두었다. 안대청도 앞뒤로 각기 1칸씩으로 구분되어 있다.
- 부엌의 뒤편에는 작은 찬마루 공간을 마련하고, 상부에는 다락을 두었다. 찬마루는 이 지역에서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공간으로 안방과 정지방으로 통한다. 안주인의 사랑공간인 동사랑방도 안방 처럼 구분하여 부엌쪽 1칸을 옷방으로 사용하고 있다. 상방 부엌 위에도 안방 부엌과 같이 다락 공간을 두었다.
- 본채의 평면형식은 안동지역에서 흔치 않은 겹집으로 대부분 이 종택을 이 건한 19세기 전후한 집<sup>17)</sup>에서 주로 찾아 볼 수 있다. 안대청을 앞뒤로 나누고 앞쪽은 개방하고 들

15) 『범암집 권5-상량문』

16) 경주 양동 무첨당(1543년, 보물 411호), 봉화 거촌리 쌍벽당(1566년, 중요민속문화재 170호), 안동 퇴계종택(1715년, 경북 기념물 42호), 대구 둔산동 최씨종택(1742년, 중요민속문화재 261호), 봉화 송석헌(19세기 초, 중요민속문화재 249호) 등

17) 안동 의성김씨 운암종택(1754년 건립, 경북 민속문화재 50호), 안동 하회북촌택(1862년 건립, 중요

사이 개구부에는 4분합 굽널띠살 들문이 설치되어 있다. 안대청에 창호를 달아서 꾸민 마루방은 주로 호남·충청지역에서 많이 나타나는 유형으로 이 지역에서는 드문 예다.<sup>18)</sup> 안대청 우측의 마루방 공간도 안동지역<sup>19)</sup>에서는 찾아보기 어렵고 대체로 영덕·봉화 등 지역에서 상당수 보이는데, 이들은 대부분 고방 이다. 이러한 안채의 공간구성은 동일시기에 건립한 안동 지역의 평면형식과 유사하다. 또한 지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공간적 특징도 살펴볼 수 있다.

- 사랑공간은 대개의 경우 몸채에서 돌출시키고 지붕을 높게 하여 그 위용을 드러나게 한다. 이 종택은 중문간 밖으로 1칸 정도 돌출하고 몸채 좌익사 쪽으로는 돌출되지 않았다. 이런 모습은 18세기 전후 시기부터 사랑채가 몸채 앞쪽과 익사 바깥으로 돌출하는 날개형에 비해 그 수가 아주 적다.<sup>20)</sup> 평면은 좌측으로부터 큰 사랑방·작은 사랑방·사랑대청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큰 사랑방은 2칸으로 가운데 미서기로 양분하고 좌측칸 뒤에는 이불장과 서재를, 우측칸 뒤에는 옷방을 두었다. 사랑대청은 작은 사랑방을 감싸도록 구성하고 큰 사랑방 앞의 뒷마루와 통하도록 했다. 작은 사랑방 우측의 1칸 사랑대청은 정면에 4분합굽널띠살 들문을 설치하여 안대청 뒤 마루방처럼 꾸미고 우측면에 벽장을 마련했다. 작은 사랑방은 상례 때 빈소방으로 사용한다. 한편 사랑대청 좌측칸 처마 밑에 용계당(龍溪堂)<sup>21)</sup> 편액이 걸려 있고, 기둥에는 집안의 안녕, 번영, 길상, 장수 등을 기원하는 주련이 여러 개 걸려 있다.
- 우익사 동사랑방 앞뒤와 본채 배면과 우측면 그리고 사랑채 좌·우측면과 배면에 쪽마루가 설치되어 있는데, 본채 배면과 우측면의 쪽마루는 근년의 보수 때 철거하였다. 이 집의 많은 수장공간과 쪽마루 시설은 19세기 이후에 집에서 주로 나타나는 유형이다.
- 자연석 외벌대 기단 위에 안채는 방형초석, 사랑채는 제형초석을 놓고 모두 방주를 세우고 홀처마로 꾸민 소로 수장 민도리형식 집이다. 상부가구는 5량 가로 구성하고 기둥상부에는 안쪽을 초각하고 바깥은 직절한 보아지를 끼웠다.
- 안채와 사랑채의 온돌방 정면 창호는 머름을 두고 안팎에 각기 띠살여닫이와 솟대살 미닫이를 설치한 이중문이다. 대청에는 울거미널 창호를 달고 여러 곳에 교창과 조그마한 환기창을 시설하였다. 교창과 환기창은 19세기 이후의 건물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사랑대청 들문의 물고기 모양 철물은 이 집의 품격을 읽게 하는 장식으로 눈길을 끈다. 사

민속문화재 84호), 안동 번남택(1875년 중건, 중요민속문화재 268호), 안동 귀봉종택(1888년 중건, 중요민속문화재 267호), 안동 퇴계종택(1926년 재건, 경북 기념물 42호), 안동 퇴계태실(1930년대 개축, 경북 민속문화재 60호)

18) 안동 정재종택(1735년 건립, 경북 기념물 170호), 안동 수애당(1939년 건립, 경북 문화재자료 56호)

19) 안동 지례동 양동택(1663년 건립, 경북 민속문화재 58호), 안동 전주유씨 무실종택(18세기 전반 건립, 경북 민속문화재 47호), 안동 가일수곡고택(중요민속문화재 176호, 1792년 건립), 안동 향산고택(19세기 중후반 건립, 중요민속문화재 280호), 안동 남천고택(19세기 중후반 건립, 경북 문화재자료 324호)

20) 안동 지례동 양동택, 안동 정재종택, 안동 토계동계남고택(1800년대 건립, 경북 민속문화재 8호), 안동 퇴계종택, 안동 퇴계태실

21) 조선 말기의 문신 김가진(金嘉鎭, 1846~1922)이 씀.

랑채의 팔작지붕을 안채보다 높게 얹어 사랑공간의 위상을 일깨 하였다. 사랑공간의 지붕을 몸채에서 독립적으로 높게 하여 돋보이게 한 시기는 17세기 이후부터다.

- 이상에서 살펴본 몸채는 창건 당시의 시기적 경향과 지역의 공간적 특징을 잘 보여 주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실 이전의 모습을 복원하고자하는 의지로 거의 옛 모습 그대로 증건한 것으로 생각된다.

### ○ 보백당

- 보백당은 증건 상량문에서 알 수 있듯이 제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한 별동형의 사랑채로 제사를 지낼 때는 제청으로 사용한다.
-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좌측은 田자를 이룬 4칸통 대청이고 그 우측은 전후 2칸통 온돌방이다. 원래는 4칸통 田자 대청의 좌측 뒤편 1칸에 제청이 있었는데, 정면과 우측면은 창호가 나있고 배면에는 벽감이 있었다고 한다. 별동형 사랑채 대청의 한쪽 모서리에 제사와 상례를 위한 제청은 아주 귀한 예다.<sup>22)</sup> 온돌방 뒷벽에 있었던 벽장은 없어지고 그 흔적만 남아 있다. 대청의 정면은 개방하고 나머지는 판벽에 미단이 판재 창을 달았다. 대청의 창호는 대부분 여단이인데 반하여 미단은 이색적이다. 이웃 목계서원의 창호도 동일한 미단으로 그 이유는 잘 알 수 없지만 바람에 불리한 열림 정도를 용이하게 조절하기 위한 지혜로움이 낳은 것이 아닌가 싶다. 청방간 개구부는 맹장지 4분합불발기 들문을 달고 온돌방에는 바깥은 쌍여단이 안쪽은 완자살 미단으로 꾸민 이중문을 달았다. 불발기는 팔각형 교살 무늬다.
- 세별대 자연석 기단을 쌓고 방형 초석 위에 방주를 세운 소로 수장 집이다. 기둥 상부에 내·외를 각기 사·직절한 보아지를 끼워 주두를 얹고 주량작하였다. 대청 상부가구에는 5량가로 대량 위는 익·행공을 끼운 동자주가 종보를 받고 종보 위에는 첨차형부재를 끼운 제형판대공이 종도리를 지지하고 있다. 동자주·대공과 종보의 호형 곡재선이 어울려진 모양새와 안정감을 주는 삼분변작의 꾸밈새가 종보 위의 보꼭 솟음과 잘 어울리면서 우아한 멋스러움을 자아내고 있다. 좌측부에는 기둥 위에서 휘어 오른 충량을 대들보에 걸치고 그 위에 대접 없는 동자주를 세워 외기도리를 받치고 그 안은 우물반자로 꾸몄다. 외기왕지도리 사이로 뻗어 내린 추녀 양측으로는 선자연을 베풀어 천장에 미려함을 더해주고 있다. 온돌방의 천장은 단정한 고미반자이다. 옥개부는 홀처마 팔작지붕으로 경쾌하게 휘어 오른 조로 곡선이 미려하다. 정면의 가운데 처마 밑에는 김가진이 쓴 ‘寶白堂’ 편액이 걸려 있고 대청 내부 도리와 청방간 기둥에는 각종 기문 편액과 주련이 달려 있다. 당호 편액은 봉황과 인동초 문양으로 장식하여 건물의 위용을 더해주고 있다.
- 보백당의 화려하지 않은 소박한 분위기 속에 읽혀지는 높은 품격은 사랑채와 제청의 위상을 위하여 담은 예지와 공역에 기울인 깊은 정성을 느끼게 한다. 이는 류연즙(柳淵楫, 1853~1933)의 기문<sup>23)</sup>에서 알 수 있듯이 김계행은 집을 화려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조상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제사를 보다 정성스럽게 드리기 위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잘 구현한 것으로 여겨진다.

22) 구미 쌍암고택(1755년 건립, 중요민속문화재 105호)의 별동형 사랑채에 있는 제청과 유사함.

23) “난포 자손이 있어 항상 선조를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하더니 곧 새로 거처하는 곳에 새집(보백당)을 지었다. 이 어찌 태축(太祝) 봉례(奉禮)의 제청을 넓히려고 한 것이겠는가 잇따라 옛 호칭(寶白堂)으로 편액을 거니 진실로 후손들이 조상의 제사를 정성스럽게 지내기 위해서다.”

○ 사당

-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민도리형식 집이다. 정면의 정칸에는 두 짝, 좌·우 협칸에는 외쪽 굽널정자살 문을 달고, 나머지 면은 회벽으로 마감하였다. 정면의 창호를 키 높은 굽널로 하고 삼면을 벽체로 폐쇄한 감실형 평면구성이다. 내부에는 마루를 깔고 배면에 벽감 형태의 감실을 설치하고 좌로부터 불천위·고조위·중고조위·조고위·고위 순으로 신위를 모셨다.
- 자연석 외별대 기단 위에 막돌 초석을 놓고 방주를 세워 3량 가로 가구하고 홀처마에 풍관 달린 박공지붕을 얹었다.
- 사당 삼문은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의 솟을삼문으로 정칸 문은 협칸보다 넓게 하고 상방은 월방을 사용하여 위상을 높였다. 자연석 외별대 기단 위에 방형 초석을 놓고 방주를 세운 3량 가로 홀처마 박공지붕의 민도리 집이다.

○ 대문채, 헛간채

- 정면 5칸, 측면 1칸의 솟을대문으로 가운데 기둥 대문을 내고 좌측에는 창고·방, 우측에는 방·방을 두었다. 맨 우측 방 옆에 있는 정지는 근년에 새로 지었다.
- 자연석 기단 위에 방형 초석을 놓고 방주를 세운 민도리 집이다. 가구는 3량 가로 대량 위에 제형판대공을 세워 중도리를 받게 하고, 홀처마 박공지붕을 얹었다.
- 헛간채는 정면 3칸, 측면 1칸으로 좌로부터 헛간·창고·화장실이 차례로 놓여 있다. 모르타르로 마감한 기단 위에 막돌 초석을 놓고 방주를 세워 3량 가로 가구하고 홀처마 우진각 지붕을 얹은 민도리 집이다.

6. 지정 가치 및 종합의견

- 이 집은 충직과 청빈의 표상인 보백당 김계행의 종가이다. 18세기 후반 이웃 마을에서 이진한 후 한국전쟁 때 몸채가 소실되고 별당만 남은 것을 5년 뒤에 중건하였다. 현재 몸채 건물이 안동 지역 사대부가의 전형적인 배치 및 평면형식 등이 유사 한 것으로 보아 중건 당시에 소실 이전의 모습을 복원 하고자하는 의지로 옛 모습 그대로 살려 지은 것이라 생각된다.
- 주된 기능이 제청인 별당형 사랑채(보백당)는 소박하고 담백한 모습이지만 그 위상을 위하여 건물 전반에 담은 예지와 공역에 기울인 깊은 정성을 엿보게 하는 종가의 상징적 건물이다. 또한 명당 풍수형국의 입지환경이 대부분 그대로 남아 있고 신(新) 안동 김씨 일문이 이룬 역사문화환경이 살아 있는 특별한 장소성은 고유한 문화적 특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 이러한 종택은 비록 몸채가 특수한 시대적 배경으로 후대에 중건하였지만 앞선 시기의 이 지역 건물에 비추어 볼 때 크게 뒤떨어지지 않으며, 특히 별당형 사랑채는 김계행의 청백리가 녹아든 격조 있는 건물이다.
- 따라서 몸채가 건축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안동지역의 역사문화적 성격을 살펴 볼 수 있는 사대부의 주거건축 정채와 지역적 특성을 비교적 잘 보여주고 있으므로 중요민속문화재의 중요한 가치 기준인 민속적 의미가 크다면 지정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 안동 안동김씨 정헌공파 종택 조사 보고서

1. 조사자 : ○○○, 민속학, 대전보건대학교 교수

2. 문화재 종류 : 중요민속문화재

3. 문화재 명칭 : 안동 안동김씨 정헌공파 종택(安東 安東金氏 定獻公派宗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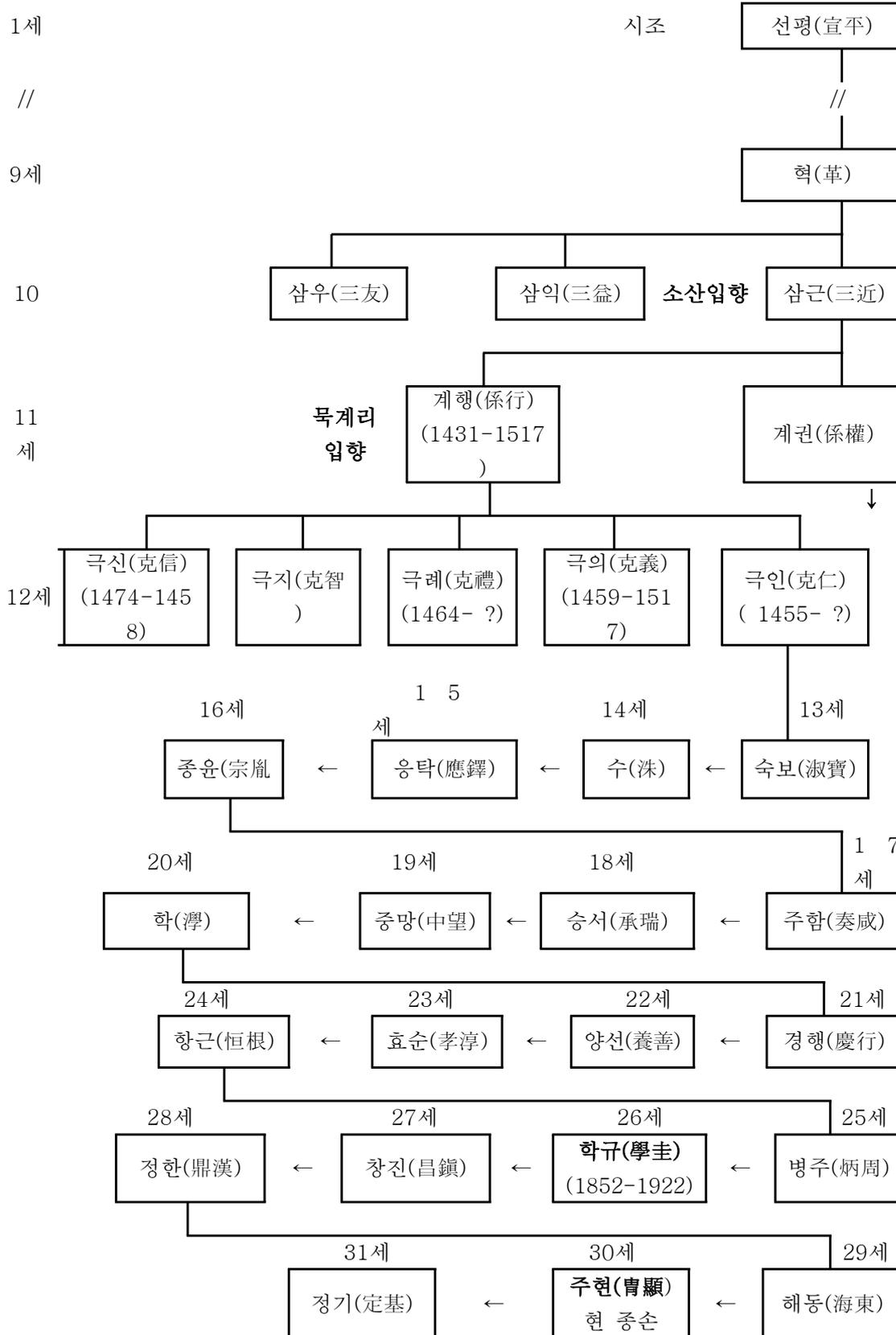
### 4. 안동김씨 정헌공파 김계행 가계와 종택 건립

#### 1) 목계리 입향과 종가의 계보

- 안동김씨 정헌공파(定獻公派)는 안동이란 지명을 있게 한 고려건국 공신 삼태사(三太師) 중 한 명인 김선평(金宣平)를 시조로 하고, 정헌공 김계행(金係行, 1431-1517)을 중시조로 하는 후손들을 말한다. 안동김씨는 선안동김씨(구안동김씨)와 후안동김씨(신안동김씨)로 나눈다. 선안동김씨는 충렬공 김방경(金方慶)의 후손이고, 후안동김씨는 김선평의 후손이다.
- 정헌공 김계행은 후안동김씨의 후손으로 그의 부친 삼근(三近)이 비안현감(현, 의성군 비안면)에서 물러나면서 풍산읍 소산마을에 정착하여 터를 잡았다고 한다. 삼근은 장자 계권(係權, ? - 1458)과 차자 계행(係行, 1431-1517) 두 아들을 두었다. 장남 계권의 종가 계통은 소산리에 세거하게 되고, 둘째인 김계행의 후손들은 길안면 목계리를 비롯하여 타 지역에 거주하게 된다.
- 김계행(金係行, 1431-1517)은 1431년(세종 13) 안동부 풍산현 불정촌 본가에서 태났다. 호는 보백당(寶白堂)이고 자는 취사(取斯)이다. 1447년(17세)에 회시(會試, 향시에 합격한 삶을 중앙에 모아 2차로 보는 시험)에서 생원에 합격하고, 1452년(22세)에 증광동당시(增廣東堂試,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임금이 직접 보는 시험)에서 2등으로 뽑혔다. 1461년(31세) 식년동당초시(式年東堂初試)에 합격하여 성균관에서 들어가 학문에 정진하였다. 이듬해 봄 성주향교 교수로 임명되었다. 1480년(성종 11) 늦은 나이인 50세에 식년시동당시(式年東堂試)에서 급제(及第)하여 6품직에 올랐다. 52세에 고령 현감으로 나아가 선정을 베풀었다, 내직으로는 홍문관, 사헌부, 사간원 등 삼사의 청직을 들 거치면서 청렴한 공직자로서 생활을 하였다. 통정대부(정 3품, 당상관)로 승정원 동부승지, 성균관 대사성, 사간원 대사간, 홍문관 부제학 등을 역임하였으나, 1489년(성종 20) 연산군 어머니 윤씨 폐비사건이 일어나자 관직을 사임하고 낙향하였다. 1498년(연산군 4, 68세)에 풍산 사저의 언덕에 작은 정자를 짓고, “寶白堂(보백당)”이라는 편액을 하고, 학문연구와 후학들을 양성하는데 전념 하였다.
- ‘보백당’은 그가 쓴 시 “우리 집에는 보물이 없나니, 있다면 오직 청백뿐이다(吾家無寶物 寶物惟清白)”이라는 구절에서 따온 것이라 한다. 1517년 81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면서 자손들에게 남긴 유언은 “ 청백을 가법(家法)으로 이어가고, 공근(恭謹)을 대대로 지키며,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기리 우애를 지키고 화목하라(家傳清白 世守恭謹 孝友敦睦), 교만이나 경박한 행동으로 가문의 명성을 떨어뜨리지 말라. 상제(喪制)는 정성과 경

건을 다하고 낭비나 허례를 하지 말라(喪制惟在誠敬 勿務爲豐侈)”라고 한 것이다.

- 1858년(철종 9년) 가선대부 이조참판으로 증직되었으며, 다시 이듬해 자헌대부 이조판서로 가증(加贈)되고, 1868년 정헌(定獻)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1909년(융희 3) 부조지전(不祧之典)의 칙명(勅命)을 받았다. 즉 국가에서 김계행의 제사를 세세토록 지내라는 ‘국불천위’ 교지를 받았다는 말이다.
- 김계행은 5명[극인(克仁), 극의(克義), 극례(克禮), 극지(克智), 극신(克信)]의 아들을 두었다. 정헌공 김계행의 종가는 장남 극인의 후손들로 이어진다. 극인(克仁, 1455- ?)은 영릉참봉을 지냈고, 종가를 잇는 16세 종윤(宗胤)은 군자감 봉사에 이르렀다. 그의 아들 주함은 동지중추부사를, 주함의 아들 승서는 호군이였다.
- 현재 목계리 정헌공과의 종가와 관련 깊은 인물은 안동김씨 26세손이고, 김계행의 15대손인 김학규(金學圭, 1852-1922)이다. 지금의 목계리 종가는 바로 김학규가 고란리에서 이거하면서 처음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1852년 길안면 고란리에서 태어났고, 호는 난포(蘭圃)이다. 그는 16세에 안동 천전리 의성김씨와 혼인 관계를 맺고, 그 인연으로 김홍락(金弘洛, 1817-1869)의 문하에서 학문을 연마하였다. 김학규는 한 때 과거에 염두에 두고 학문에 매진하였으나, 19세기 말 서구열강의 진출 등으로 국내정세가 어려워져가는 시기에 출사의 뜻을 접고 성리학 연구에 전념하였다고 한다.
- 그는 향리에서 처사(處士)로서 학문탐구와 후진양성에 몰두 하였다. 특히, 종손으로서 집안과 문중에 일에도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였는데, 보백당을 건립하여 향음주례(鄉飲酒禮)를 개최한 것, 문중의 제전(祭田)을 늘어서도 직접 관리하는 것 등의 일화들이 전해오고 있다.



## 2) 종택의 건립

- 안동김씨 정헌공파(定獻公派) 종택은 안동시 길안면 목계리 704번지(충효로 1736-3)에 자리하고 있다. 목계리는 동쪽에 계명산(鷄明山, 513m)이 솟아 있고 길안천(吉安川)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곳이다. 목계(默溪)라는 명칭은 보백당(寶白堂) 김계행(金係行, 1431-1517)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이 마을은 처음 거무역(居無驛), 거묵역촌(居無驛村), 거묵역(居墨驛) 등이라고 하였는데, 김계행이 송암폭포 위에 만휴정(晩休亭, 1497년 또는 1498년경 건립)을 세우고, 그 정자(亭子) 앞을 흐르는 앞에 흐르는 물을 보고 목계(默溪)라고 하다가 1706년(숙종 32)에 김계행을 배향한 서원의 명칭이 목계서원(默溪書院)으로 명명되고 난 이후에 목계가 마을 이름이 되었다고 한다.

- 김계행의 연보에 따르면, 목계에 터를 잡은 것은 그의 맏아들 극인(克仁, 1455-?)이 21세에 거묵촌(현재 목계)에 별도의 거처를 마련하여 살게 한 것이 시작이다. 하지만, 김계행이 목계에 거주한 것은 그 뒤의 일이다. 그는 관직생활을 접고 완전히 낙향하여 소산마을에 거주한 것이 1497년경이다. 풍산 소산마을에 살면서 목계의 별장을 왕래하다가 71세인 1501년부터 목계에 정착하였고, 1517년 이곳에서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김계행 후대에 종가가 목계에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 목계리에 종가를 건립한 인물은 김계행의 15대손인 김학규(金學圭, 1852-1922)이다. 그는 목계리와 이웃한 길안면 고란리에 거주하고 있었다. 류연즙(柳淵楫, 1853-1933)이 쓴 난포(蘭圃, 김학규의 호)의 행장을 보면, 어느날 목계서원 원장이 고란리를 지나다 난포가 사는 집에 들렀는데 종가의 협소함을 보고는 난포에게 종가를 목계로 옮길 것을 권유했다고 한다. 그 이유는 “그대는 명현의 종손으로 대를 이어왔는데 지금 종가의 위치는 매우 궁벽하니 목계서원 곁으로 옮기는 것이 더 좋겠네. 옮기면서 문호를 조금 넓히면 그 선사(先祠)를 추존하고 보위함과 빈객들을 응접하는 것 둘 다 편안할 수 있을 것 일세”라고 설명하였다. 이 후 김학규는 문중의 중론을 모아 종가를 목계로 옮길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겼다. 보백당은 1906년 건립하였고, 1916년 경 중수한 것이다. 하지만 안채는 한국전쟁에 모두 소실되어 다시 지은 것이다.

### 3) 종가의 제례

- 안동김씨 정현공파 종가에서는 기제사, 추석과 설 차례,, 묘제, 그리고 김계행의 불천위 제사가 있다. 기제사는 종손이 거주하고 있는 대구에서 지내고, 차례와 불천위 제사는 종가에서 지낸다. 묘제는 음력 10월 날을 받아 소산마을 입향조인 김삼근(김계행의 부)부터 그 아랫대 모든 조상들에게 올린다.
- 김계행의 묘소는 그의 부친과 함께 예천군 호명면 직산에 있다. 안동김씨 정현공파 종가에서는 음력 10월 12일 김계행의 묘소가 있는 직산재사에서 제물을 준비하여 제사를 올린다. 묘사에의 절차는 기록으로 전해오고 있는 홀기(笏記)에 따라 지낸다. 제물은 제주, 밤, 배, 대추, 포, 도적, 편, 편청, 탕 등이다. 탕은 3탕으로 육탕, 어탕, 소탕을 올린다. 제기는 과거 목기를 사용하였으나, 모두 도둑을 맞고, 그 뒤 유기로 바뀌었다. 시제의 참여자도 과거에는 300여명이 넘었으나, 이제 50여명 정도로 줄었다고 한다.
- 안동김씨 정현공파 종가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제사는 보백당(寶白堂) 김계행(金係行, 1431-1517)의 불천위이다. 김계행은 한양에서 관직에 나아가 정 3품 당상관까지 올랐으나, 1489년(성종 20) 연산군 어머니 윤씨 폐비사건이 일어나자 관직을 사임하고 낙향하였다. 그 뒤 목계리 별장을 왕래 하다가 71세인 1501년 목계에 정착하여 살았지만, 1571년 타계하였다. 그리고 사후 300여년이 지난 1868년(고종 3) 정헌(定獻)이라는 시

호(諡號)를 내렸다. 시호를 내리고 46년 뒤인 1909년(순종 3) ‘부조지전(不祧之典)’의 칙명(勅命)을 받았다. 즉 국가에서 김계행의 제사를 세세토록 지내라는 ‘국불천위’ 교지를 받았다고 그 뒤 지금까지 불천위 제사를 지내고 있다.

- 김계행의 불천위 제사는 기일인 음력 12월 17일에 종택내의 보백당에서 지낸다. 비위(妣位) 2위(이천서씨, 의령남씨)와 합설하여 지내며, 비위의 기일에는 따로 지내지 않는다고 한다. 제사는 종택에 참제(參祭)하러 온 후손들에게 각자 맞는 소임을 부여한 집사 분정으로부터 시작한다. 초헌관은 종손이, 아헌관은 종부가, 종헌관을 보통 향렬과 연령이 높은 후손이 맡는다. 제사 시간은 원래 기일 첫 새벽에 지냈으나, 2000년경부터 멀리 오시는 제관들의 편의를 위해 오후 8시에 지낸다고 한다.
- 불천위 제사 음식으로는 메국수가 다른 집안과 차이가 있다. 메국수는 국수를 삶아서 참기름, 간장, 깨소금과 무쳐 한 그릇 담는 것이다. 이 메국수는 음복 때 밥 위에 나물을 얹고 그 위에 고명처럼 메국수를 올려서 함께 비벼 먹는 것이다. 김계행의 18대손 종부(현 종손의 모)가 살았을 때는 국수를 집에서 직접 만들었으나, 지금은 면을 구입해서 사용한다.

#### 4) 고문서

- 안동김씨 정헌공파 종택의 고문서 및 전적 등 993점이 현재 안동 한국학진흥원에 기탁되어 있다. 이 종택의 고서는 구경연의(九經衍義, 이언적), 당시요선(唐詩要選, 필사본), 사문초(事文初) 이외에 문집류 등이 있다.
- 고문서는 교지(教旨)· 제문(祭文)· 행장(行狀) 및 비문류(碑文類)· 만사(輓詞)· 시문(詩文)· 간찰(簡札) 등이 있다.
- 교지는 김계행과 관련된 시호교지와 불천위 교지, 추증교지 2점과 관직 임명에 따른 교지 4점이 있다. 나머지는 아들 극인의 것 1점(1519년 효력부위 벼슬 임명), 김계행의 부인의 것 2점이다.
- 제문은 400여점 정도이고, 만사는 190여점 있다. 종손의 제사에 주위에서 보낸 제문과 종손들이 다른 이를 위해 쓴 제문들이다. 만사 역시 죽음과 관련 된 것이기 때문에 제문 비슷한 양상이 나타난다. 제문과 만사의 대부분이 난포 김학규(金學圭, 1852-1922)와 그의 아들 창진(昌鎭)과 관련 된 것이다.
- 김계행에 대한 기록은 『보백당선생실기(寶白堂先生實紀)』이다. 보백당 김계행은 저술을 거의 남지 않았다. 처음 이 『보백당선생실기』가 만들어진 것은 1733년 경으로 추정되고 재간된 것은 1829년이다. 현재 남아 있는 판본은 4권 2책은 1901년(고종 38)에 중간된 것이다. 『보백당선생실기』는 김계행의 사상과 인품을 엿 볼 수 있는 하나의 자료이다.
- 재산의 상속과 분배를 기록한 문서인 분재기(分財記)는 1523년 장자 김숙보(金淑寶) 분재기, 1802년 김양호(金養浩) 등 7남매 분금문기(分衿文記) 등이 있다.
- 종택에는 ‘寶白堂’이란 현판 등 여러 개의 현판들이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김계행이 남긴 유훈을 현판에 새겨 전하는 것이다. 김계행의 호가 보백당인 것도 그가 남긴 글귀의 뜻에서 취한 것이라고 한다. 그 내용은 “吾家無寶物 寶物惟清白(우리집에 보물이 없

으니 보물이 있다면 오직 청백뿐)”이라 적고 있다. 자손들은 가훈처럼 걸어두고 마음에 새기며 자신의 자식들에게 선조의 유훈을 계승하도록 하고 있다.

## 5. 종합의견

- 안동김씨 정헌공과 종택은 ‘목계서원 및 안동김씨목계종택’이라는 이름으로 경상북도 민속문화재 19호로 지정되어 있다. 1980년 지정 당시 회의자료를 보면 문화재신청은 목계서원이었고, 조사자가 현장조사에서 서원 이외에 종택이 함께 있어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목계서원은 1705년(숙종 31)에 완공하여 1706년 목계서원이라 명명한 것이지만, 종택은 건립연대 대한 언급이 없이 서원과 함께 종택을 일괄 지정하여 보존하자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에서는 종택이 목계서원과 함께 민속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 보인다.
- 하지만, 이번 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신청은 목계종택, 즉 안동김씨 정헌공과 종택만 별도로 하였다. 김계행(金係行, 1431-1517, 호 보백당, 시호 정헌공)과 인연을 맺은 것은 1460년 목계에 별장 마련하면서 이다. 1475년경 그의 맏아들 극인(克仁, 1455-?)이 목계에 별도의 거처를 마련하였다. 김계행은 71세인 1501년부터 목계에 정착하였고, 1517년 이곳에서 세상을 떠났다.
- 현재 터에 종택이 자리 잡은 것은 김계행의 15대손인 김학규(金學圭, 1852-1922)이다. 종손이 목계리와 이웃한 길안면 고란리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아마 김계행 이후 어느 시기에 종택이 고란리로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 종손 김학규가 고란리에서 다시 목계리로 옮기 시기는 정확하지 않으나, 그의 부친 김병주(1883-1880)가 목계에서 별세했다는 것으로 보아 김학규의 연령, 김병주의 사망 시기 등을 추정해 보면 대체로 1880년대 이후로 보인다. 그리고 보백당은 1906년 건립하였고, 1916년 경 중수한 것이다. 보백당은 제청(祭廳)으로도 사용되어 건립 당시에는 마루에 감실(龕室)이 있었다. 즉, 현재 사당은 1994년에 건립된 것이다. 안채는 한국전쟁(6. 25 전쟁)에 모두 소실되어 다시 지은 것이다.
- 종택을 비롯한 집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집의 건립 연대와 시대적인 특성 등이다. 이러한 것이 전제되면 그 집에서 전승되는 생활문화 자료들이 얼마나 역사성과 학술성을 갖추었는지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안동김씨 정헌공과 종택은 가장 오래된 보백당이 1906년이고, 안채는 한국전쟁으로 소실되어 새로 지은 것이다. 여기에는 한국전쟁 이후 새로 지은 건물이 어느 정도 전통성을 갖고 복원되었는지도 하나의 검토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안동김씨 정헌공과 종택에서 전승하는 민속학적인 자료나 의례로서 중요시 여기는 것은 김계행의 불천위 제사이다. 김계행(金係行, 1431-1517, 호 보백당, 시호 정헌공)은 사후 351년만인 1868(고종 3)년 정헌공이라는 시호를 받고, 392년만인 1909(순종 3)년에 불천위 교지를 받아 국불천위가 되었다. 현재 불천위 제사는 종택에서 문중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비교적 전통적이 방식으로 올리고 있다. 이외에 혼례나 상례와 관련 유물이나, 문헌, 문서 등이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다. 조상들이 사용한 생활문화 유품들도 확인되지 않았다.
- 전적을 비롯한 고문서는 993점이 안동 국학진흥원 기탁되어 있지만, 이 자료들에서도

종택의 전승 생활사를 볼 수 있는 자료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종택이나 문중에서는 대체적으로 김계행에 대한 기록인의 『보백당선생실기(寶白堂先生實紀)』를 통하여 그들의 정체성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김계행의 유훈 “吾家無寶物 寶物惟清白(우리집에 보물이 없으니 보물이 있다면 오직 청백뿐)”은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 안동김씨 정헌공파 종택의 국가민속문화재로서 가치는 일차적으로 집의 건립연대와 복원 과정에 대한 논의 있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필요한 역사성, 학술성의 조건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안동 안동김씨 정헌공파 종택 조사 보고서

1. 조사자 : ○○○, 한국건축사, 문화재청 상근전문위원
2. 문화재 종류 : 중요민속문화재
3. 문화재 명칭 : 안동 안동김씨 정헌공파 종택(安東 安東金氏 定獻公派宗宅)

### 4. 창건과 변천

- ‘안동김씨 정헌공파 종택’은 안동김씨 비안공(比安公) 김삼근(金三近)의 둘째 아들 보백당(寶白堂) 김계행(金係行)의 종택이다. 오늘날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소산리 일대는 안동김씨의 집성촌인데 소산리의 안동김씨는 ‘후안동김씨(신안동김씨)’와 ‘선안동김씨(구안동김씨)’로 갈라진다. 즉, 후안동김씨는 고려(高麗)의 삼태사(三太師) 중의 한 명인 김선평(金宣平), 선안동김씨는 충렬공(忠烈公) 김방경(金方慶)의 후손들이다. 이 중 후안동김씨는 시조인 김선평의 9세손 김삼근이 비한현감(현재의 의성)에서 물러나면서 소산마을에 입향한 것에서 연유하여 그 후손들을 ‘비안공파(比安公派)’라 하게 되었다고 한다. 김삼근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가 김계권(한성부 판관을 지냄)이고 둘째가 바로 ‘보백당 김계행’이다. 오늘날 소산리 일대에는 큰 종가인 비안공 구택(돈소당: 경상북도민속문화재 제148호)과 안동김씨 종택(양소당: 경상북도민속문화재 제25호) 등의 문화유산들이 현존하고 있으며, 안동시 길안면 목계리에는 보백당 김계행의 종택 및 목계서원(경상북도민속문화재 제19호)과 만휴정(경상북도민속문화재 제173호), 만휴정 원림(명승 제82호) 등이 위치하고 있다.
- 보백당 김계행의 종택 다시말해 ‘안동김씨 정헌공파 종택’은 크게 종택의 정침인 본채(경상북도민속문화재 제19-3호) 영역과 별동형 사랑채인 보백당(경상북도민속문화재 제19-4호) 영역으로 구분된다. 현존하는 종택 즉, 본채와 별당인 보백당의 창건(創建)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이들 건물이 창건된 이후 오랜 세월동안 수차례의 이건(移建)과 중건(重建)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의 위치에 현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중 내에 전해져 오는 문헌·기록인 『보백당실기(寶白堂實記)』, 『처사난포 김공 행장(處士 蘭圃 金公 行狀)』, 『보백당중건상량문(寶白堂重建上樑文)』, 『보백당중수기(寶白堂重修記)』와 문중 관계자들의 전언(傳言) 등을 토대로 종택의 연혁을 정리해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 연도<br>(기록)    | 주요내용                               | 비고  |
|---------------|------------------------------------|---|
| 1460년<br>(實記) | · 거목동(巨墨洞)에 별서를 마련하여 늘그막의 휴식처로 삼았음 | · 거목동은 이후 묵촌(墨村), 목계(墨溪)로 개칭<br>· 만휴정(晩休亭)의 뜻으로 보아 별서를 말하는 것으로 보임 |
| 1475년<br>(實記) | · 아들(克仁)로 하여금 먼저 목계에 살게 하였음        |   |

|                |  |                        |
|----------------|--|------------------------|
| 1476년<br>(實記)  | · 충주교수(忠州教授)의 임기를 마치고 거목동으로 갔다가 풍산(豊山) 사제(筭提)에 예전 거쳐하던 곳으로 다시 돌아옴            | · 사제는 오늘날 풍산 소산에 있던 지명 |
| 1493년<br>(實記)  | · 고향으로 돌아와 풍산과 거목동을 왕래하면서 나날을 보냄   |                        |
| 1497년<br>(實記)  | · 대사간(大司諫)을 사직하고 고향으로 내려옴  |                        |
| 1498년<br>(實記)  | · 풍산 사제에 있는 집에 별도로 작은 정자를 짓고 편액을 보백당(寶白堂)이라 하였음                              | · 보백당 건립               |
| 1500년<br>(實記)  | · 무호사화 이후 고향으로 돌아온 다음 목촌 전장으로 거쳐를 옮겼음<br>· 사제의 집과 보백당은 그대로 두고 이용함            |                        |
| 1501년<br>(實記)  | · 거목동의 별서에서 살기 시작함   |                        |
| ?              | · 후손의 어느 대에서 고란리로 이건(추정)   | · 사제의 종택 곡란리 이건(移建)    |
| ?              | · 종택을 김학규(金學圭, 1852~1929)가 고란리에서 목계리로 이건<br>· 땅 10여 무(畝)를 내어 보백당 짓는 자산으로 삼았음 | · 곡란리의 종택 목계리 이건(移建)   |
| 1906년<br>(行狀)  | · 병오년(丙午年)에 보백당 창건(創建)<br>- 『처사 난포 김공 행장(處士 蘭圃 金公 行狀)』                       | · 보백당 창건(創建)           |
| ?              | · 보백당 중수(重修)<br>(重修記)<br>- 이만규(李晩燾, 1845~1921)의 『보백당중수기(寶白堂重修記)』             | · 보백당 중수(重修)           |
| 1915년<br>(上梁文) | · 을묘년(乙卯年)에 보백당 중건(重建)<br>- 류연즙(柳淵楫, 1853~1933)의 『보백당중건상량문(寶白堂重建上樑文)』        | · 보백당 중건(重建)           |
| ?              | · 한국전쟁 당시 종택 내 보백당 및 사당을 제외한 본채 건물이 훼손. 그 이후 새로 건립                           |                        |

○ 먼저, 종택은 크게 네 번에 걸쳐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첫 번째는 16세기 초반까지 풍산 사제(筭提) 즉, 오늘날 풍산 소산리에 김계행이 거처하였던 집과 보백당이라 편액된 정자가 존재하였으며, 김계행은 이곳과 오늘날 목계에 위치한 별서(別墅) 즉, 만휴정(晩休亭)을 오가며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때, 1498년에 이르러 집 근처에 보백당을 세웠다는 기록으로 보아 김계행이 거쳐하였던 집은 보백당 보다 앞서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 두 번째는 김계행의 사후, 어느 대의 후손인지는 모르지만 풍산 사제에 있던 종택을 곡란리(오늘날의 고란리)로 옮겼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김계행의 15대손인 처사(處士) 김학규(金學圭, 1852~1929)의 행실을 기록한 『처사 난포 김공 행장(處士 蘭圃 金公 行狀)』 중 곡란리에 있는 김학규의 집이 너무 비좁아 새로 넓게 옮겨 짓게 되었다는 내용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다.

『處士 蘭圃 金公 行狀』

“…嘗以默院洞主,迤往谷蘭,見公居第,湫隘謂公曰,君以名賢世胄,占地深僻,不如移奠於院宇之傍,稍廣門戶,則其尊衛先祠,應接賓友,庶得兩便,因咨議於會中,劃出本所土地十餘畝,爲寶白堂,營建之資 … 何可吝節,丙午創建寶白堂重建講榭葺理休亭,公苦心專力者,於是乎次第就緒矣,先世邱壠之在遠近者,多至數十所,而無不營立齋幕,規畫祭田,霜露澆奠之備井,井有餘裕”

○ 세 번째는 상술한 바와 같이 김계행의 후손 김학규가 종택을 곡란리에서 목계서원 근처인 오늘날의 종택 위치로 옮겨오게 된 것으로 이를 위해 상당한 면적의 토지를 사전에 준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보백당 건립을 위해 10여 무(畝)의 토지를 준비했다(土地十

餘畝,爲寶白堂,營建之資)’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다만, 여기서 ‘보백당’이 별당만을 지칭하는 지 아니면 종택 전체를 의미하는 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통상 10무(畝)가 약 300평에 달하는 규모로 볼 때 보백당 건립을 위해 마련한 토지 10여 무(畝)는 대략 300평~600평의 규모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보백당을 포함한 종택 전체를 건립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겠으나, ‘…丙午創建寶白堂…’의 기록에 의하면 병오년(丙午年) 즉 1906년에 보백당이 건립되었고 또한 문중 관계자의 전언(傳言)에 따르면 김학규의 부친인 김병주(1833~1885)가 오늘날의 목계에서 별세하였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10여 무(畝)의 토지를 마련하여 먼저 종택(본채)을 고란리에서 옮겨와 새로 짓고 그 뒤 1906년에 별당인 보백당이 건립되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종택의 본채는 최소한 1885년 이전에 건립되었던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이는 김학규의 생애(1852~1929)로 보아 종손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던 시기로 볼 수 있어 그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다.

- 또한, 별당인 보백당의 연혁과 관련하여서는 상술한 기록이외에도 『보백당중수기(寶白堂重修記)』와 『보백당중건상량문(寶白堂重建上樑文)』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 상량문 말미에 ‘歲旆蒙單闕’로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시점이 을묘년(乙卯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보백당이 1906년에 건립되었음을 감안하면 여기서의 을묘년은 1915년을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건립된 지 9년 뒤에 한 번의 중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보백당중수기(寶白堂重修記)』에서는 작성 시기에 대해 기록하고 있지 않아 언제 중수가 이루어 졌는지 알 수 없다. 다만, 아래 중수기의 기록 중 “… 몇 백 년 동안 무너져 있다가 비로소 오늘날 우뚝하게 서게 된 것은(幾百年廢壞之餘。始得突兀於此日)…”이라는 내용에 의하면 김학규가 보백당을 고란리에서 옮겨와 새로 건립하면서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아마도 난포행장에 기록된 ‘…丙午創建寶白堂…’와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寶白堂重修記』

“堂即故大司成金先生燕居之所也。先生嘗有詩曰。吾家無寶物。寶物惟清白。其扁堂以自號者。蓋以此也。幾百年廢壞之餘。始得突兀於此日 金氏未艾之業。其又由是以兆者與…”

- 결국, 보백당 김계행의 15대손인 김학규가 최소한 1885년에 종택을 곡란리에서 오늘날의 위치로 옮겨오는 과정에서 본채가 먼저 건립된 후 1906년에 별당인 보백당이 세워지게 됨으로서 완전한 종택의 모습을 갖추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밖에, 사당은 김계행의 사후 392년이 되는 1909년(융희3)에 대한제국 궁내부에서 불천위를 인정한 이후에 건립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그 후 1994년에 한 번의 중수가 있었다. 네 번째는 한국전쟁으로 종택 일곽 중 보백당과 사당을 제외한 본채 등의 건물이 소실된 후 20세기 중반에 중건되어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종택은 500여년의 시간 동안 네 번에 걸쳐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 맥을 오늘날까지 그대로 이어오고 있으며, 근래에 들어서는 생활 편의시설 설치로 인해 다소의 변형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비교적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5. 건축구조와 양식

- 조선시대 상류주택들은 당시의 지배이념인 성리학적 규범들을 통해 일정한 격식을 갖춰 건축 된다. 그 중 남녀유별에 따른 내·외의 구분은 유교적 중법 질서체계를 구현하는 중

요한 내용이다. 내·외 구분은 주어진 조건에 따라 내외담, 내외문 등의 설치를 통한 시각적인 차단에서부터 안채와 사랑채 공간을 분리하는 가옥배치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반면, 이들 두 공간은 생활상의 필요 등으로 인해 서로 연결시키거나 인접시키게 되는데 이 경우 지역적인 특징과 경제적 조건 등에 따라 다소 상이한 배치 방법을 보이거나 ‘안동 정헌공파 종택’이 위치한 경북지역을 중심으로는 통상 안채(또는 안마당)를 중심으로 폐쇄적인 공간을 이루는 ‘口’자형의 배치형식을 취한다. 경북지방의 口자형 건물은 주로 북동부 지방인 봉화, 영풍, 예천, 안동, 영양, 청송 지방과 울진, 영덕 지방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고 인접된 강원도 삼척지방과 그 밖의 이름난 반촌에서 찾아볼 수 있다.

- ‘口’자형으로 구성된 소위, 본채의 서쪽편으로는 종택의 별당건축인 ‘보백당’이 자리 잡고 있으며 전면으로는 대문간채, 뒤편에는 사당이 본채와 나란히 위치하고 있다. 통상 口자형 주택에서 사당이 안채 배면쪽 또는 북쪽에 위치하는 것과 달리 좌측면에서 본채와 병렬되게 위치하고 있는 것이 이색적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주택에 설치하는 우물마루는 진입방향에서 볼 때 직각 방향으로 귀틀을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정헌공파 종택의 경우 본채 사랑채(대청과 마루방)는 평행하게 설치하고 안채는 평행 방향(대청)과 직각 방향(마루방)이 혼재되어 있는 특이한 구성을 보인다. 이러한 구성방식은 정헌공파 종택 이외에도 1779년에 건립된 ‘영주 괴헌고택(중요민속문화재 제262호)’의 안채와 사랑채에서도 볼 수 있다. 또한, 안채 부엌의 배면 쪽으로 일부 공간에 마루가 설치되어 있고 마루 좌·우측에 인접한 방으로 직접 진입할 수 있는 외여단이세살창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생활상의 편의를 고려한 것으로 아마도 중건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별동형 사랑채인 보백당이 본채와 달리 동향을 하고 있는 것이 이색적이다.

## 6. 지정가치

- ‘안동김씨 정헌공파 종택’은 보백당 김계행의 종택으로 본채와 별당건물인 보백당 모두 건축사적인 관점에서 역사성은 다소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500년 동안의 오랜 세월 속에서 이건과 중건을 반복하면서 그 맥을 이어왔던 측면에서 그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 특히, 보백당의 가치는 『보백당중건상량문(寶白堂重建上樑文)』 중 아래의 기록에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보백당 김계행의 유훈인 “吾家無寶物 寶物惟清白(우리집에 보물이 없으니 보물이 있다면 오직 청백 뿐)”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卽新居而營新屋, 豈欲寬太祝奉禮之廳. 仍舊號而揭舊扁, 實宜爲來昆追遠之所...”*  
 (“...새로운 거처에 나아가 새로운 집을 지으니, 어찌 제관(祭官)이 예를 받들 장소가 넓기를 바라겠는가? 예전 이름을 그대로 하여 예전 편액을 거니, 다만 후손들이 길이 추모하여 제사를 지낼 장소가 됨이 마땅하도다...”)
- 또한, 보백당 김계행의 불천위제사는 김계행의 사후 392년이 되는 1909년(융희3)에 대한 제국 궁내부에서 불천위를 인정한 마지막 국불천위로서 비록 시기적으로는 늦지만 그 의미는 종택의 민속학적 관점에서 중요한 사료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 29. 경주 양동마을 내 저잣거리 조성 기본계획 변경

### 가. 제안사항

경북 경주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89호 「경주 양동마을」 내 저잣거리 조성 기본계획 변경안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경주 양동마을 저잣거리 조성 기본계획은 2013년 문화재위원회 민속분과 4차회의 시('13.8.5.) 검토하여 “세부사항은 관계전문가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보완 후 시행”토록 조건부가결 되었고 관계전문가 자문을 거쳐 우리 청의 승인을 받았으나('15.7.21.), 이후 주민 의견 반영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경주시장
-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문화재 제189호 「경주 양동마을」
  - 사업대상지 :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49-1 일원
- (3) 신청내용 : 경주 양동마을 저잣거리 조성 기본계획 변경
  - 당초사업내용
    - 저잣거리(대지면적 13,086㎡) 내 전통음식(9동), 체험시설(8동), 부대시설(8동) 등 총 25동(연면적 1,108.26㎡) 건립 및 주변 정비
  - 주요변경내용
    - 당초 저잣거리에 없었던 교육기능(교육관, 숙박동) 추가
    - 건물 지붕형태 변경 : 25동(와가11동, 초가14동) → 32동(와가20동, 초가12동)
      - ※ 건축 연면적 1,108.26㎡ → 1,312.44㎡
    - 건물 벽체 구조 변경 : 전통한식벽체 → 신한옥벽체
    - 음식점 부대공간 확보 : 건물배면 반침공간 확보, 부속창고 설치
    - 기존 문화관과 연계되도록 동선 변경
  - 변경사유 : 마을주민 의견 반영

※ 건물 형태 및 동수 변경 상세내용(대지면적 변경없음)

| 당 초  |               |                 |             | 변 경 안        |               |                 |             |
|------|---------------|-----------------|-------------|--------------|---------------|-----------------|-------------|
| 구분   | 건물명           | 동수              | 지붕형태        | 구분           | 건물명           | 동수              | 지붕형태        |
| 전통음식 | 전통한식          | 7               | 와가4,<br>초가3 | 전통음식         | 전통한식          | 7               | 와가          |
|      | 국수집           | 2               | 초가          |              | 국수집           | 2               | 와가          |
| 체험시설 | 특산품           | 1               | 와가          | 체험시설         | 특산품           | 1               | 와가          |
|      | 한지,활          | 1               | 와가          |              | 한지,활          | 1               | 와가          |
|      | 짚풀공예          | 2               | 초가          |              | 짚풀공예          | 1               | 초가          |
|      | 연제작           | 1               | 초가          |              | 연제작           | 1               | 초가          |
|      | 전통찻집          | 2               | 와가1,<br>초가1 |              | 전통찻집          | 1               | 와가          |
|      | 전통문화체<br>험관   | 1               | 와가          |              |               |                 |             |
| 부대시설 | 수유실/<br>기사대기실 | 1               | 와가          | 부대시설         | 수유실/<br>기사대기실 | 1               | 와가          |
|      | 화장실(대)        | 1               | 와가          |              | 화장실(대)        | 2               | 와가          |
|      | 화장실(소)        | 5               | 초가          |              | 화장실(소)        | 5               | 와가4,<br>초가1 |
|      | 정자            | 1               | 와가          |              | 정자            | 1               | 와가          |
|      |               |                 |             |              | 부식창고          | 5               | 와가          |
|      |               |                 |             | 교육시설<br>(추가) | 교육관           | 1               | 와가          |
|      |               |                 |             |              | 숙박동           | 3               | 와가          |
| 계    |               | 25동<br>(1,108㎡) |             | 계            |               | 32동<br>(1,312㎡) |             |

라. 자문의견

(1) 민속분과 ○○○, ○○○, ○○○ 위원, 세계유산분과 ○○○, ○○○ 위원 ('13.7.24.)

- 양동마을 저잣거리 조성은 별도의 공간으로 조성하되, 외국인 관광객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함

- 기와집과 초가집은 적절히 배치하되, 향후 유지관리의 편의를 고려함
- 테마공원은 포켓공간으로 하지 말고 열린 공간으로 조성토록 함
- 공간조성 목적에 맞는 건물을 배치하고, 불필요한 건물은 제외토록 함
- 오늘 나온 이야기를 종합하고 검토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함
- 관람객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토록 함(숙박시설 등 조성)
- 체험 및 관람동선을 고려하여 기능에 맞는 건물을 배치토록 함
- 배치건물은 사용목적에 맞는 건물로 하되, 전국적인 모델을 조사하여 배치토록 함
- 관람편의시설의 개념으로 조성하고 유지관리를 위하여 상업성을 가미토록 함
- 적절한 규모로 조성하되 향후 지속적인 발전을 고려하여 조성토록 함
- 민속분과에서 지금 소위원회 형식으로 추후 진행토록 함

## (2) 제4차 민속분과 문화재위원회 / '13.8.5.

- 저잣거리 조성 세부사항은 관계전문가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보완 후 시행토록 함

## (3) 민속분과 ○○○, ○○○, ○○○, ○○○ 위원('13.9.13.)

- 문화재청 제정 세계문화유산 관리지침을 참조하여 계획토록 함
- 세계문화유산 관리지침의 핵심은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그에 따른 운영 계획을 세우는 것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함
- 경영분석(관광수요 예측, 관광객 수, 규모 적정성, 콘텐츠 등)은 건축사 사무소에서 하기 어려운 과제이므로 경주시청에서 별도로 연구토록 함
- 양동마을 고유의 특성있는 음식과 체험문화를 반영한 계획이 필요함
- 숙박은 저잣거리 보다는 마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적당할 것이므로 저잣거리에 숙박개념은 제외토록 함
- 조경은 민속마을에 어울리는 수종으로 식재하고 건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함
- 배치계획 시 공간이 자연스런 분위기가 이루어지도록 함
- 유지관리를 위해 초가보다는 기와집으로 계획하는 것이 좋을 것임
- 건축 평면은 다양함이 필요하니 '口'자 집도 고려토록 함
- 소방 등을 고려하여 주출입구와 부출입구의 폭은 8m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임

- 공연 등을 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을 마련하고 휴식공간에 정자 설치를 고려함이 좋을 것임
- 공용화장실은 주차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필로티는 좀 더 개방토록 함
- 건물벽에 설치한 실외기 시설 등은 가능하면 건물 내부에서 처리토록 함
- 그 외 구체적인 내용은 실시설계 시 자문회의를 통해 반영토록 함

#### (4) 민속분과 ○○○ 위원 자문('16.7.25.)

- 당초 기본계획을 주민의견 수렴 등에 따라 조정한 변경(안)을 다음과 같이 보완함이 바람직하다고 봄
  - 화장실(공중)은 관람동선과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기사대기실 쪽으로 위치를 조정함
  - 이에 따라 주출입구는 교육시설 담장 쪽으로 함
  - 교육시설의 건물 내에 위생시설을 기본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부족공간은 공동세면적 위치에 추가 숙박동을 배치함
  - 부식창고와 부속화장실은 추가로 함

#### 마. 검토의견

- 주민의견에 따라 관계전문가 검토를 거쳐 보완 제출한 변경안 대로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사.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소위원회에서 보완 시행토록 함

# 보 고 사 항

### 30. 문화재위원회 민속분과 소위원회 운영계획 보고

#### 가. 제안사항

문화재위원회 민속분과 소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 구성과 운영계획을 보고합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위원회 민속분과 소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법을 보고하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1) 소위원회 운영계획

| 구 분     | 운영계획                                   | 비 고    |
|---------|--|--------|
| 위원 구성   | ○○○(위원장), ○○○, ○○○, ○○○, ○○○, ○○○ 등 6명 | 과반수 출석 |
| 임기      | 2016.8.9.~2017.4.30.                   |        |
| 심의안건    | 현상변경 허용기준, 현상변경                        |        |
| 의결방식    | 민속분과위원회와 동일                            |        |
| 개최시기/장소 | 필요시 홀수달 2번째 화요일 14시<br>정부대전청사 회의실      |        |

#### 라. 의결사항

- 접수
  - 김○○위원 추가, 국고보조사업 관련 사항 추가